발 간 등 록 번 호
12-B552524-000036-01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성과

2018.05. ~ 2020.04.

대 통 령 소 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성과

2018.05. ~ 2020.04.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마치며

저는 지난 2년간 저에게 부과된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엄정한 직책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역량이 여러가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 건축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하나씩 들추며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무거운 직무를 맡은 것을 기억합니다.

세계 속에서 여러 분야가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선진대열의 위치를 지키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건축의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5기 국건위가 국가적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이나 자문을 행하기도 했지만, 더욱 중점을 둔 것은 건축의 발주제도나 설계과정 그리고 실행방법을 고치는 일이었으며 그로써 우리의 전반적 건축 생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 주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에 중점을 두는 주택정책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목표하는 주거정책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3기 신도시에도 적극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짧다고만 할 수 없는 기간에 이 과제들은 여전히 많은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제 그 짐과 멍에를 고스란히 차기 위원회에게 넘기고 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기 보다는 위원장으로서 능력의 모자람이 더 큰 까닭일 겁니다.

사실 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그 앞서의 서울시 총괄건축가 기간을 포함하여 이곳저곳의 공공직무를 10년이 넘도록 수행해온 셈입니다. 돌아보면 고비마다 역경이요 실수투성이였지만 선배 동료 후배 건축인들의 선의와 도움으로 그나마 그 오랜 공공직무를 이렇게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인간성은 밀실에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향하는 모험 속에 자신의 삶과 존재를 던지는 자에게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글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오랜 공공직무의 기간 동안 제가 봉사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공공의 광장을 떠나 온전히 제 개인의 건축가 고유 직무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배운 공공성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 한 구석의 밀실에서 제 개인의 건축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15일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승효상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년간의 기록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좋은 건축 행복한 삶, 좋은 도시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승효상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9인과 기획재정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11명으로 2018년 4월 출범하였다. “제5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년간의 기록”은 지난 2년간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해당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와 소통을 진행하여 왔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본 자료가 일련의 과정을 나열하는 단순한 활동보고서의 형식이 아니라 보다 현장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건축계의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고자 하였다. 또한 그간의 성과만을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계 또한 가감 없이 포함함으로써 차기 위원회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제1부에서는 제5기 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다루고 있다. 지난 2년간 추진된 주요 정책은 크게 4가지 분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공공건축] 좋은 공공건축이 선도하는 건축의 품격”이다. 국건위는 전문가 중심의 공공건축사업 정착을 위하여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고, 좋은 설계자 선정을 통해 좋은 공공건축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건축디자인의 수준이 낮은 지역개발사업에서 건축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공공부문 건축설계 대가기준 또한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공공건축 정책과 일관된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공공건축특별법」제정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는 “[건축시스템]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건축 프로세스”이다. 국건위는 건축 인허가 및 심의제도 등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혁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건축사의 책임과 전문성에 기반한 직능 구현을 위한 건축사 자격제도 합리화,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계의도 구현제도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제도나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시장의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였다.

세 번째는 “[도시공간]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이다.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통합적인 공간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선 입체적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주택지구 계획을 위한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하여 도시설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학·협회와 함께 강구하였다.

네 번째는 “[건축문화]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로서의 건축”이다. 건축·도시공간의 보전을 위하여 근현대 주요 건축·도시공간 자산관리 체계화를 고민하고, 시민의 건축·도시 공감 확대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로서의 건축 진흥과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좋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건축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2부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그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과 어떠한 논의와 소통을 진행하여 왔는지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정책기반] 국가 주요 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의 비중과 파급 확대"이다.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대회,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범부처 공공건축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건축정책을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대규모 공공건축을 발주하는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좋은 공공건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건축정책의 선도 및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연구기관 승격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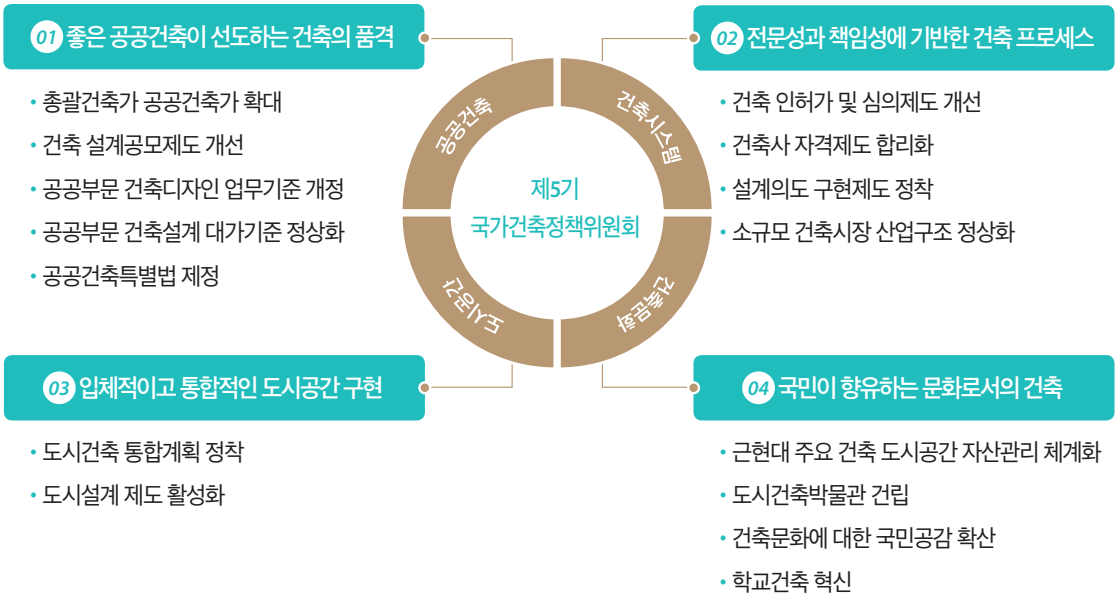

두 번째는 “[정책공감] 건축정책 공감 확대”이다. 국건위는 건축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총 18회의 정부부처 기관장 및 지자체장 면담, 총괄건축가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국민 건축토론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간담회 및 포럼, SNS 및 언론과의 대화 등을 통해 건축계, 나아가 국민과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원회 사람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지난 2년간 국건위와 치열한 고민을 함께한 국건위 민간위원, 기획단, 자문단, 범정부협의체에 참여한 분들을 소개한다.

본 “제5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년간의 기록”이 승효상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5기 국건위 위원과 기획단을 포함한 지난 2년간 국건위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애정과 노력, 그리고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CONTENTS

1부_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정책

1 [공공건축]
좋은 공공건축이 선도하는 건축의 품격

1-1. 전문가 중심의 공공건축사업 기획·관리체계 정착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확대 16

1-2. 좋은 설계자 선정
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 28

1-3. 지역개발사업의 건축디자인 개선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34

1-4. 공공발주 사업 건축설계비 합리화
공공부문 건축설계 대가기준 정상화 39

1-5. 공공건축에 특화된 제도적 근거 마련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42

2 [건축시스템]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건축 프로세스

2-1.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건축규제 혁신
건축 인허가 및 심의제도 개선 52

2-2. 책임과 전문성에 기반한 건축사 직능 구현
건축사 자격제도 합리화 64

2-3.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활성화
설계의도 구현제도 정착 70

2-4. 비정상적인 소규모 건축시장의 개선
소규모 건축시장 산업구조 정상화 77

3 [도시공간]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

3-1. 입체적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주택지구 계획
도시·건축 통합계획 정착 84

3-2.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
도시설계 제도 활성화 91

4 [건축문화]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로서의 건축

4-1. 건축·공간자산의 보전
근현대 주요 건축·도시공간 자산관리 체계화 96

4-2. 시민의 건축·도시 공감 확대와 아카이브 구축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99

4-3. 문화로서의 건축 진흥과 지원 확대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공감 확산 102

4-4. 학교에서 경험하는 좋은 공간
학교건축 혁신 105

2부_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소통과 협력

5 [정책기반] 국가 주요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 비중과 파급 확대

5-1. 공공건축 9대 핵심과제
대통령 보고대회 118

5-2. 범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22

5-3. 위원회의 정책 총괄·조정 역량 강화
범정부 공공건축협의체 구성·운영 127

5-4. 공공건축사업 실행과정 개선
공공건축 조성시스템 개편 134

5-5. 주요 공공건축 사업의 방향 설정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위원회 자문 137

5-6.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역량 제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독립연구기관 승격 140

6 [정책공감] 건축정책 공감 확대

6-1. 국가와 함께하는 건축정책
정부부처 기관장 면담 & 정책포럼 144

6-2. 지역과 함께하는 건축정책
지자체장 면담 &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151

6-3.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정책
대국민 건축토론회 & 공공건축 컨퍼런스 160

6-4.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정책
건축 단체장 간담회 & 총괄건축가 간담회 165

6-5. 세계와 함께하는 건축정책
세계 총괄건축가 포럼 167

6-6. 언론과 함께하는 건축정책
토크쇼, 기자단 팸투어, 언론기사 등 170

6-7. 모두가 함께하는 건축정책
기획단 뉴스레터, SNS 등 174

7 [위원회 사람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한 사람들

7-1.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178

7-2.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184

7-3.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185

7-4.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186

부록

제5기 국건위 지난 2년간의 발자취 190

국가건축정책위원회(1~5기)가 추진한 주요 건축정책 192

건축정책연표 194

1부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정책

1 [공공건축]
좋은 공공건축이 선도하는 건축의 품격

2 [건축시스템]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건축 프로세스

3 [도시공간]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

4 [건축문화]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로서의 건축

1

[공공건축]

좋은 공공건축이 선도하는 건축의 품격

1-1. 전문가 중심의 공공건축사업 기획·관리체계 정착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확대

1-2. 좋은 설계자 선정

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

1-3. 지역개발사업의 건축디자인 개선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1-4. 공공발주 사업 건축설계비 합리화

공공부문 건축설계 대가기준 정상화

1-5. 공공건축에 특화된 제도적 근거 마련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1-1.

전문가 중심의 공공건축사업 기획·관리체계 정착

총괄·공공건축가 확대

총괄·공공건축가, 왜 필요한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의 통합적 관리체계 미흡

그동안의 공공건축 사업은 면밀한 기획과 사업관리체계 없이 행정처리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디자인 품질이 저하되었고,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시설 간의 연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전문성과 통합관리체계 부재의 지역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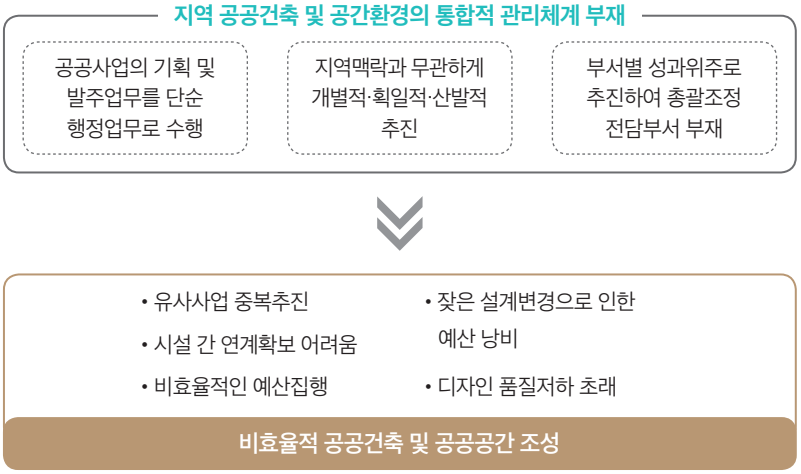

출처 : 심경미(2019.11.1.),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발표자료
그림 재구성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기획단계를 포함한 공공건축사업 전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소 중심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관련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참여-행정 지원의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영주시는 2010년 국내 최초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서울시도 2012년부터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두 지자체의 민간전문가 활용 성과는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13년부터 민간전문가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총괄계획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참여-행정지원의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



출처 : 심경미(2019.11.1.),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발표자료 그림 재구성

영주시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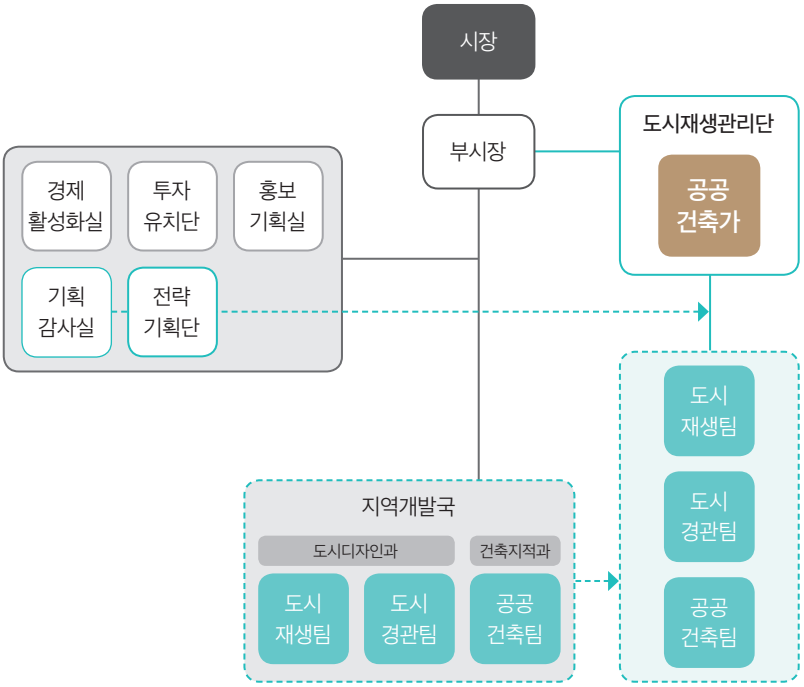

출처 : 조준배(2019.11.1.), "총괄 건축가(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사례", 국가건축위원회 총괄건축가제도 권역별 설명회 발표자료 그림 재구성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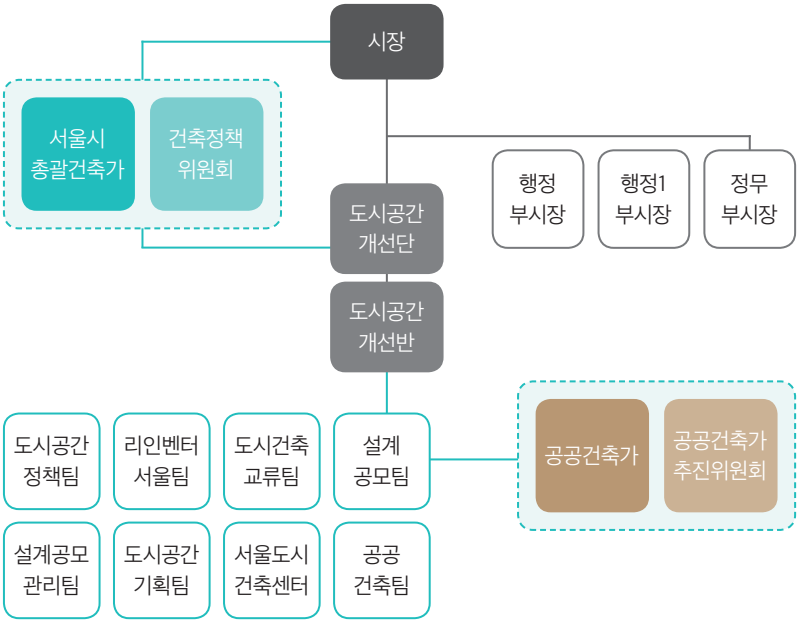

출처 : 심경미(2019.11.1.)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발표자료
그림 재구성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역할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도시·조경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방향 제시, 주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 및 조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기관 등의 개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전과정에 대해 조정하고 자문하는 전문가로서,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관련 사업의 기획 참여, 소규모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설계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주 실내수영장
©신경섭



부천 아트벙커
©김용관



행촌 공(共)터 3호점
©김용순



불암골 행복발전소
©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

총괄·공공건축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도적 기반 미흡

총괄 및 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과 공간환경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 담당자와 지자체장, 그리고 건축·도시 관련 전문가들은 총괄 및 공공건축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총괄·공공건축가를 단순한 자문위원이나 직접 설계를 해주는 전문가로 오해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조가 부족해 공공건축 실행 부서 간의 의견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축기본법」에 민간전문가의 활용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 등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운용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5기 국건위의 활동

광역지자체장과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2018.08.~2019.04.
총괄·공공건축가제도 도입 권고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2018.10.04.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추진"

「공공건축특별법」 발의
2019.10.30.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자격, 지원 등 구체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04.18.
"민간전문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2019.05.24.
5대 시범사업별 민간전문가 참여 지원체계 구축 등

전·현직 총괄건축가 간담회
2019.05.29.
민간전문가 제도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체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2019.07.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제시

총괄·공공건축가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19.11.~2019.12.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제주권 등 5차례 개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2018.08 ~ 2019.04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전주시장 면담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제주, 울산, 인천, 경상남도, 광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등 공공건축 혁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 확산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2018.10.04.

대통령의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확산'을 중점과제로 제시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건축의 공공성 증진	①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전국 확산 ②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및 기능 확대 ③ 중요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한 국건위 자문
설계방식 개선	④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 축소 ⑤ 건축설계공모 절차 개선 ⑥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설계관리 시스템 구축	⑦ 공공건축만의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 마련 ⑧ 우수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제도 마련 ⑨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 정상화

출처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4153, 검색일 2020.5.11.), (내용)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10.4.),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동네건축부터 확 바꾼다"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관계부처 합동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1차 : 2019.01.24. 2차 : 2019.04.18.

총괄·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총괄·공공건축가 확산을 위한 전문가 풀 구축, 도시재생뉴딜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 의무화 등을 논의하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전략	목표	세부과제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도시전체 통합적 관점에서 공공건축물 디자인개선 추진체계 구축	총괄·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발주기관 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사업 절차 개선	좋은 설계자 선정으로 설계의도 변질없이 높은 설계품질 확보시스템 구축	사업단계별 디자인 절차 혁신 (신축 및 기존 노후건축물)
		소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개선 정책 확대
현장 실행력 제고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내실있게 추진	공공건축 협업·지원체계 마련
		3기 신도시 계획체계 개편 및 5개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성공사례화 추진

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9.4.18.),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을 입혀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붙임1 자료 재구성

시·도 국장 간담회 및 전·현직 총괄건축가 간담회 개최

국장간담회 : 2019.01.29.
총괄건축가간담회 : 2019.05.29.

우리 위원회는 2019년 초부터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무적 차원에서 전국 시·도 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현직 총괄건축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2019.05.2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12개 중앙정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에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검토 및 배포

2019.07.31.

2019년 7월, 제25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총괄·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을 논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그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전문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

세계 총괄건축가 포럼 개최 2019.09.06.~09.07.

위원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에 국내외 도시 총괄건축가들이 모이는 '세계총괄건축가포럼(City Architect Forum)'을 개최하여 세계 여러 도시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총괄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





6개 광역총괄건축가 간담회 개최 2019.09.27.

서울·부산·광주·충남·경북·경남 등 6개 광역시도의 총괄건축가가 참석하여 지자체별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

「공공건축특별법」 발의안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포함 2019.10.30.

종합적인 공공건축 혁신방안을 법제화 한 「공공건축특별법」(안)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 수립과 주요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위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총괄건축가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19.11.~12.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 공무원 및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알리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5개 권역(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제주권 순)으로 나누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한 총괄·공공건축가제도

제5차 합동연석회의 2018.09.14.	• 국건위-중앙부처 장관·광역시장·공공기관장 간담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점검 •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국토교통부 공동) 간담회 추진 검토
제12차 합동연석회의 2018.12.28.	• 총괄건축가 제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시·도 국장 간담회 추진 • 총괄건축가 제도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를 위한 워크숍 기획 논의
제15차 합동연석회의 2019.02.08.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추천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풀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
제24차 합동연석회의 2019.06.21.	• 지방자치단체의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한 표준안 제공의 필요성 제기
제25차 합동연석회의 2019.07.12.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작성 중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검토 논의 • 주요논의 내용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 /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필요 / 총괄·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윤리준수 의무 등 포함 / 참여가능 사업 대상 및 목적 명확화 / 적극적인 유도 효과를 위해 가이드라인의 표현방식 수정 등
제28차 합동연석회의 2019.08.30.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건축 혁신방안" 에 대해 내실 있는 건축기획 및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건축가 참여 의무화, 공모를 통한 공공건축가 풀 구성,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심의, 사업별 공공건축가 임명, 총괄건축가의 사업 총괄조정·자문 등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및 구축 방안 논의

총괄·공공건축가 확대의 성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확대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분야와 역할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9개의 광역지자체, 37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제도를 운영 중

- 2020년 6월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포함)는 총 34명, 공공건축가는 총 770명이며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1명(총괄기획가, 총괄자문단, 공공건축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118명(교육공간자문관, 꿈담건축가), 한국철도공사 100명(공공건축가) 등 관련 민간전문가가 활동 중

-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부 타 법령이나 내부 방침 등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현황(2020년 6월말 기준)

구분	총괄건축가(명)		공공건축가(명)	
	광역	기초(기타)	광역	기초
서울특별시	1	2	265	23
부산광역시	1	-	42	-
대구광역시	-	1	-	4
인천광역시	-	1	50	-
광주광역시	1	-	24	-
대전광역시	1	-	49	-
울산광역시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경기도	-	4	-	42
강원도	-	2	-	16
충청북도	-	1	-	-
충청남도	1	4	63	11
전라북도	1	2	-	18
전라남도	-	-	-	8
경상북도	1	4	-	8
경상남도	1	4	24	89
제주특별자치도	1	-	34	-
계	9	25	551	219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주요 공공기관(2020년 7월 기준)

구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명칭	인원	명칭	인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기획가	1	총괄자문단	38
	선임자문위원	2	공공건축가	30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교육공간자문관	1	꿈담건축가	117
경상북도 교육청	학교공간혁신 총괄기획가	1	학교공간혁신촉진자	41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공간혁신 총괄기획가	1	학교공간혁신촉진자	66
한국철도공사	-	-	공공건축가	100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60호) 개정

- 총괄·공공건축가의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개정하여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개념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 전담조직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
-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어촌뉴딜300(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건축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여 공공건축가의 참여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대

총괄·공공건축가의 정의 및 역할

구분	정의	역할	근거
총괄 건축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문·조정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 5. 공공건축가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자문 6.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및 교육의 기획 및 지원 7. 관계 법령이나 기준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의 지원 8.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여 협의한 사항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2조 및 제6조
공공 건축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참여 3. 소규모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설계 참여 4. 그밖에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2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
		<공공건축가 위촉 의무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등 •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에 이어 공공기관이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
- 이 가이드라인은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절차 및 운영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정책 및 사업 실무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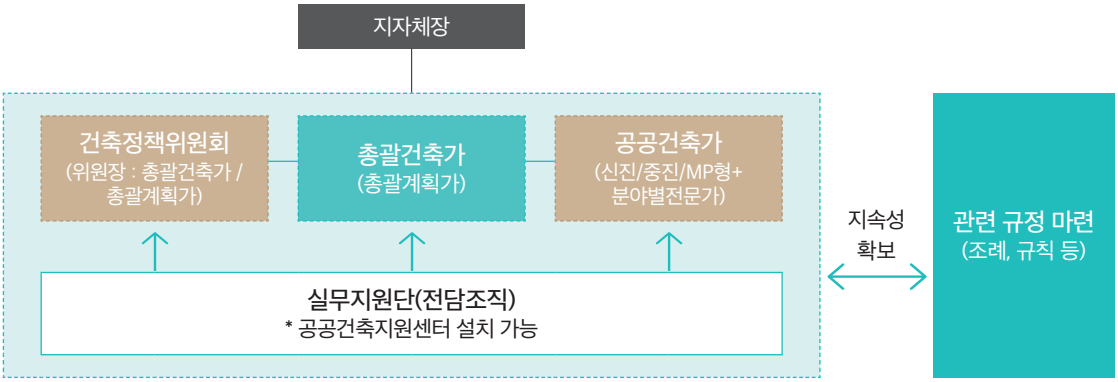

출처 : 심경미(2019.11.1.),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발표자료 그림 재구성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가 총괄·공공건축가 등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추진
- 2020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여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2배('19, 5개소 200백 → '20, 10개소 400백)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제도와 연계 추진
- 민간전문가 지원 :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자체의 공간환경전략계획(경관 종합계획)과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발주방식 등) 및 디자인을 조정·자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건축·경관 사업의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 향상 유도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여 지역 전반에 대한 디자인 개념, 장기적 발전방향, 중점 관리지역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내 사업간 연계와 양질의 공간환경 디자인 창출 도모
- 2019년 총 8개소를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확대하여 14개 지자체(연속 지원 4곳 포함) 선정 지원

공간환경 전략계획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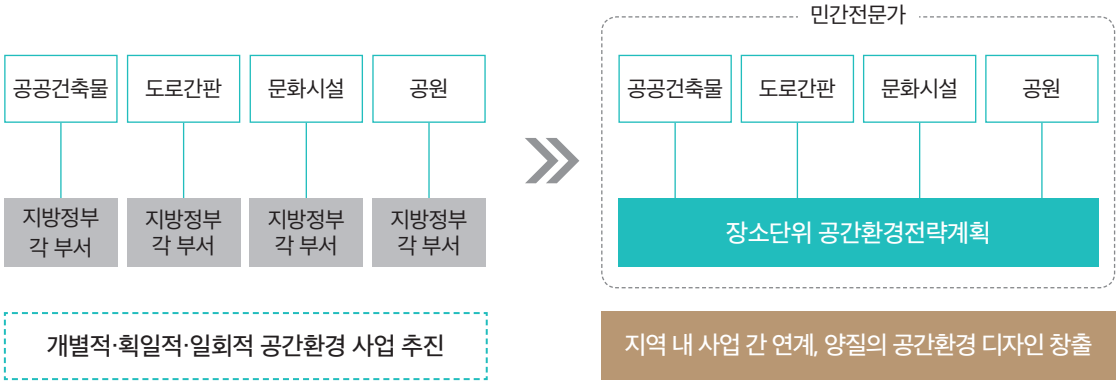

출처 : 국토교통부(2019.11.1.),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발표자료 그림 재구성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축 관련 업무 및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총괄계획가·총괄건축가' 근거를 마련하고, 총괄건축가의 위상 확보와 일관성 있는 공공건축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괄건축가를 지역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공건축 사업담당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로서 '공공건축가' 근거 마련
-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자격요건과 위촉 절차, 대가, 용역 수행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책임 명확화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1-2.

좋은 설계자 선정
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

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 필요성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자 선정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좋은 설계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설계 산업은 오랫동안 건설 산업의 하위분야로 인식되어오면서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은 소홀하게 다루어졌고, 그 결과 좋은 설계자를 뽑는 풍토가 만들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공공건축 설계 발주방식 중 하나인 설계공모는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공공부문 사업의 입찰 방식은 가격의 저렴함으로 수행 업체를 결정하는 가격입찰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측면과 디자인 전략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공공건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건축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서 설계공모 방식의 긍정적인 도입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하여 2015 인천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청라국제도시 제1공공도서관

자료제공 : 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designgroupoz.com)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설계공모 대상 확대

「건축기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도 공공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고, 특히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건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이나 각종 지역개발사업 내 공공건축 사업에는 여전히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가격입찰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계공모 제도 정상화를 위한 불공정 계약관행(수의시담) 개선 필요

그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공모는 기관과 당선자의 계약 체결 시 이른바 '수의시담'(수의계약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가격협상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간주되는데,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모 공고 시 제시한 예정 설계비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감액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공모 당선자를 '낙찰자'로 인정하여 수의시담 과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비를 감액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은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공모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당선자에게 불이익이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공건축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필요

설계공모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모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설계지침과 전문성이 부족한 심사위원 선정으로 공모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기관에 따라서는 여전히 심사위원 사전공개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는 임기 내내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설계공모 심사 절차 및 기준 내실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5기 국건위의 활동

설계공모 당선작 설계비 감액 (수의시담) 폐지
2018.12.3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2019.04.18.
설계공모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 강화 포함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2018.10.04.
"공공건축의 설계발주 방식 개선"

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적용대상 확대
2019.01.1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1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2019.07.04.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설계공모방식 적용 확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2019.04.30.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심사의 전문성 강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기준 강화
2019.12.1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2차)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2019.05.24.
5대 시범사업에 설계공모방식
적용 확대 및 강화 추진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2018.10.04.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에 공공건축 설계발주 방식 개선을 위한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축소", "건축설계공모 절차 정상화"를 포함

설계공모를 통한 계약 시 수의시담 철폐 추진 2018.12.31.

공공건축사업 설계공모 이후 당선자와의 계약 단계에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공고된 설계비를 낮추어 계약하는 관행을 개선 (2018.12.31.)

설계공모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 강화 2019.01.15.

공공건축사업의 설계공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계공모 의무적용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인 건축물은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가격입찰 등으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강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2019.04.18.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 결과인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설계공모 대상을 설계비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1억 원 미만은 간이공모 등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하는 내용 포함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설계공모방식에서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토록 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격을 강화 및 구체화하였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설계공모 운영을 의뢰하거나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불공정 행위 심사위원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내부 심사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
LH, 조달청 등 공공기관 설계공모 추진 시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국토교통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내에 설계공모 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도록 하여 모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설계공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

주요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공모방식 자문 2019.08.~2020.04.

주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 시 발주기관에게 설계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적합한 설계공모 방식과 심사위원 구성방식 등에 대해 자문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및 '(가칭)한전공대 캠퍼스', 해양수산부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T2 지역 업무시설' 등에 대해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자문.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주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건축 최초로 국제지명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추진하도록 함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한 설계공모 제도

제2차 합동연석회의 2018.05.25.	• 대통령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조달청 설계용역 수의계약제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제9차 합동연석회의 2018.11.16.	• 정부세종신청사 국제설계공모(행복청) 추진경과 검토 시 발주기관 내부 심사위원 비율, 심사위원 선정 절차 등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필요성 제기
제12차 합동연석회의 2018.12.28.	• 수의시담 폐지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 공유 및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제15차 합동연석회의 2019.02.08.	•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안에 대하여 심사위원 개인 평가사유서 공개 명시, 심사위원 풀 구성, 각 지방 여건에 따른 자체적 발전 기회 제공방안 마련 등 추가 주문
제21차 합동연석회의 2019.05.10.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 논의 시 지역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설계용역 별도 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의견 제시
제29차 합동연석회의 2019.09.27.	•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한국자산관리공사) 계획 자문 시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맞게 심사체계 개편 요구
제30차 합동연석회의 2019.10.25.	•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위원 결정, 심사위원 제척, 심사위원 공지 후 응모제한 등 검토, 국건위 내 심사 운영위원회 조직운영 방법 등의 의견 제시
제36차 합동연석회의 2020.03.13.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세움터 내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스템 구축에 관해 시범운영 후 전면 시행하고 관계기관 대상 홍보 및 정착 단계를 거쳐 설계공모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의견 제시

설계공모 제도 개선 성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 가격 경쟁보다는 설계안의 창의성 등 설계 품질을 중심으로 설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대상 확대, 설계공모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발주제도 혁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용역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2억 원 이상에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1차 개정 : 2019.1.15. 개정, 2020.1.16. 시행)
- 2차 개정에서는 건축 설계공모 대상 건축물의 경우 토목·조경 등 타 공종에 포함하여 가격입찰 방식 등으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하여 설계공모 제도의 실효성 강화(2차 개정 : 2019.12.17.)
- 이와 더불어 설계공모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의뢰하거나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상자에게 공모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여 설계공모의 활성화 도모(2차 개정 : 2019.12.17.)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의무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 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 국토교통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운영 중('14.6~)으로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미흡한 부분의 개정 추진
- 수차례 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사위원 자격 강화 및 구체화', '불공정행위 시 심사위원 자격 영구 박탈', '기관별 세부기준 마련 인정범위 명확화', '심사과정 내실화', '소규모 공모 활성화 및 공모일정 개선', '제한·지명공모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
- 또한 위원회는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설계공모 시 국토교통부 지침을 준용하도록 촉구하여 조달청 및 LH 건축설계공모 운영 기준 및 절차 개선에 반영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설계공모 당선작 설계비 감액 금지)

- 설계공모를 통한 용역 발주 시 공모 당시 공고한 설계 용역비를 낙찰가액으로 규정하여, 수의계약 시 계약대가를 감액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도록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1-3.

지역개발사업의 건축디자인 개선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지역개발사업의 건축디자인 개선 필요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역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이나 거점지역 등에서 지역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농림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사업부터 산업단지·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 밀착형 생활SOC 사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포함되며 매년 약 10조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공간환경 개선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간의 낮은 디자인 수준 문제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수요맞춤형 지역개발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서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초기에 제출한 예비계획 성격의 사업구상서를 기본계획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계획 승인 후 디자인 발전단계가 생략된 상황에서 개별 건축물의 실시설계 및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 기획과 디자인이 부실한 후진적 공공건축 디자인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시행계획 승인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업계획 승인에서 토목, 조경, 건축 등 다분야와 통합하여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공공건축의 설계업무 또한 기술용역으로 통합하여 발주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은 전체 사업계획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기본구상 수준의 도서만 작성한 다음, 바로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건축과 토목, 조경 등의 설계도서를 통합하여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공공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설계의도구현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관련 절차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축설계 업무가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의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법령에서 공용건축물은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를 의제 처리하여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나 시공도서가 부실한 상태로 공사 발주가 진행되고, 디자인 품질인 낮은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	지역개발사업 관련 법률 및 계획	건축물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조건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해수부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어촌·어항법」 제8조)
행안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14조)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출처 : 염철호 외(2019), 「공공건축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40 [표 2-4] 내용 발췌 재구성

5기 국건위의 활동

총리공관 만찬시 제도개선 건의
2018.12.10.
지역개발사업에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 업무기준' 적용

지역개발사업 관련 경기, 충남 현장방문
2019.02.12..~02.14.
경기 동두천시·양주시 / 충남 천안시·아산시·태안군·당진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2018.10.04.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 정상화 추진" 포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 안건 상정
2019.01.24.
지역개발사업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적용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2019.05.24.
지역개발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관리

부처 워크숍 개최 (국무조정실 공동주관)
2019.02.21.~02.22.
지역개발사업 공공건축가 의무화, 설계 별도발주 등 논의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면개정
2019.07.04.
지역개발사업 내 공공건축사업에 의무 적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차) 안건 상정
2019.04.18.
지역개발사업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적용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2018.10.04.

- 9대 핵심과제에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 정상화 추진' 포함
- 지역개발사업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업계획 확정 후 개발계획 용역이 일괄적으로 발주되어 건축물 등 설계단계가 생략되거나 건축설계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의 완성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점을 방지

공공건축 디자인개선방안 발표 2019.04.18.

-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도록 추진
- 각 부처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 발주하도록 하며, 설계비 1억 미만도 설계공모 등 설계 능력을 고려한 발주방식을 적용토록 사업별 시행지침에 반영 추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2019.05.24.

-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시범사업 및 부처별 개선방안 이행·관리를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발족되어 지역개발분과위원회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건축디자인 개선방안 논의 및 실행 추진
- 지역개발분과위원회는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문체부 생활문화기반시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8대 선도사업)등 각 부처의 5개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논의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한 지역개발사업의 건축디자인 개선

제4차 합동연석회의 2018.8.24.	• '지역개발사업 계획·설계 업무의 절차기준 확립' 과제 담당위원 결정
제8차 합동연석회의 2018.10.26.	• '지역개발사업 계획·설계 업무의 절차기준 확립' 과제를 중요 과제로 추진
제15차 합동연석회의 2019.02.08.	•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미흡, 사업 내 생활 SOC 사업의 설계 하도급 시행 문제 등에 대한 위원회의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 제안에 관해 논의
제16차 합동연석회의 2019.02.28.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관련 현장방문 및 부처 워크숍 결과를 논의하여 지역개발사업에서 기본설계 절차가 생략되는 등 문제점에 대해 건축물 별도 발주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건축가 의무화, 공공건축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개선방안 논의

제20차 합동연석회의 2019.4.26.	• 국토교통부의 국정현안조정회의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후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할 사항으로 지역개발 사업에서 공공건축가 활용 의무화, 개별 건축물 설계 별도 발주,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의도 구현 권장 등에 관한 논의
제21차 합동연석회의 2019.05.10.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 검토

지역개발사업의 건축디자인 개선 성과

부처별 지역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

-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에 총괄기획가, 학교공간혁신 촉진자 등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제도화('19.4)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내 공공건축가 의무화, 사업계획 사전검토 명시('19.4)
- (문체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에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도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적용('19.6)
-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건축디자인 개선 반영('19.12)

시범사업 추진

- (교육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공주대 특성화고는 국제설계공모, 부산대 문화예술체육학교는 일반공모 시행
- (문체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충남도 총괄건축가가 참여하여 디자인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설계의도 구현을 의무화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참여형, 건축자산 및 경관특화형, 생활SOC 디자인 개선형, 주민참여프로그램 활용형 등 유형별 우수사례 제시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19년 4개소, '20년 16개소)
- (해수부 어촌뉴딜300) 8개 선도사업 선정 및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총괄/공공건축가 의무화, 설계공모 확대, 설계의도 구현 현실화, 지역개발사업 내 공공건축사업 분리발주 의무화 등



출처 : 남해군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을 위해 출범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면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60호)
- 기존에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국한하여 적용되던 것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업무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
- 이번 개정을 통해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역개발사업(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300 등)은 반드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도록 규정
- 설계공모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도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반드시 별도로 발주토록 명시

1-4.

공공발주 사업 건축설계비 합리화

공공부문 건축설계 대가기준 정상화

건축설계 대가기준 정상화의 필요성

공공건축 설계대가 기준의 문제점

최근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에너지·BF(Barrier Free; 무장애 환경설계) 등 각종 인증제도 강화, 공공건축물 품질 제고를 위한 각종 절차 도입, 건축자재의 구체적 표기 등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설계업무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설계 대가기준은 지난 20여 년간의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왔습니다.

건축설계 대가기준은 1966년 7월 대한건축사협회가 작성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을 당시 건설부장관이 인가함으로써 최초로 제정되었고, 1993년에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공사비 요율방식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인·월수에 의한 실비보상가산식(인건비승수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건축사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2-152호)'이 다시 제정되고, 2008년에는 건축설계 대가기준을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설계대가 요율은 1993년 이래로 28년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간의 공사비 상승으로 건축설계 대가요율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건축사사무소 운영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률이 공사비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각종 인증이나 복잡해진 심의 등 절차 이행에 대한 업무량 증가도 대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작더라도 건축사의 업무량은 유사한 반면, 구조·기계·전기·소방·토목 등 협력업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므로 설계 대가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특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건축서비스 대가기준 현실화" 과제 마련

위와 같이 물가상승 반영 등이 미흡한 현행 공사비 요율방식의 한계와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이 부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과제 중 하나로 "건축서비스 대가기준 현실화"를 선정하였습니다. 건축서비스 대가기준 현실화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재편함으로써 설계업무 및 추가업무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발주처의 불공정한 추가업무 요구를 근절하고, 대가요율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건축서비스 대가기준 재편" 내용

항목	내용
설계업무 재편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제5조(업무의 범위)의 제1호 "설계업무"를 '기본업무'와 '기본 외 업무'로 재편
종별구분 세분화	현행 3단계의 종별구분을 건축물 유형별 난이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
물가상승률 반영	생산자 물가지수 및 인건비 상승 비율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인 대가요율의 인상·보정
단계별 업무비율 조정	현행기준에서 계획설계 10% 증가, 중간설계 유지, 실시설계 10% 감소로 각 단계별 업무 비율 조정
과업내용 변경 대가 근거 마련	각 단계 종료 후 이를 역행하는 변경 요구는 모두 과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며, 추가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

출처 : 국토교통부(2018.12.),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 p.32

5기 국건위의 활동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검토

2019.01. ~ 2019.04.
(문체부) (가칭)예술건축물 제도 도입 추진
(지역 랜드마크 건축물 설계비 상향)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심의)

2018.12.
"건축서비스 대가기준 현실화"
추진과제 포함

「공공건축특별법」 발의

2019.10.30.
공공건축사업의 설계 등
용역대가 규정 마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2020.05.27.
공공건축 설계대가 요율 등 개선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

2020.05.
공공건축사업 계획 설계비
추가반영 등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

공공부문 건축설계 대가기준 개선 성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선 2020.05.06.

- 기획재정부는 2020년 5월, 2021년도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지침과 함께 각 부처 예산담당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확정·통보
-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본 지침에는 공공건축의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설계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설계 대가기준(요율)도 일부 상향하여 반영
- **(공공건축사업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 근거 마련)**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국가·도시의 상징성,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 상향)** 지식서비스인 건축설계에 대한 대가 합리화를 위해 199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었던 대가 요율을 28년 만에 평균 약 3.3% 상향 반영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예정)

-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20.5.27)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요율을 보정하고 건축계획 설계비 추가지급 근거 내용을 담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고시) 개정 예정('20.12)

1-5.

공공건축에 특화된 제도적 근거 마련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마련

개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

공공건축의 중요성과 비중 확대

대규모 공공청사뿐 아니라 동네 안에서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각종 복지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은 도시미관에 밀접한 영향은 물론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2018년 12월 현재 210,441동으로 전국 건축물의 2.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건축물 대비 공공건축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가 공공건축 예산도 연간 6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건축물 조성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만큼 공공건축이 동네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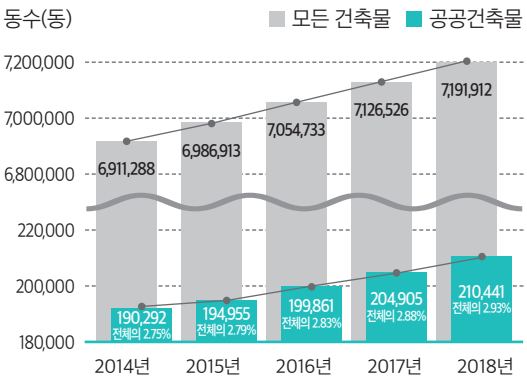

전국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동수(2018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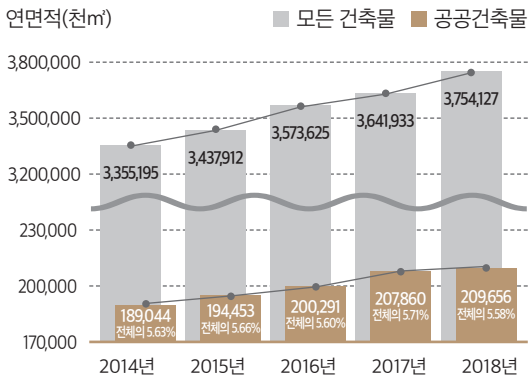

전국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연면적(2018년말 기준)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9),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8」, p.7 그림 재구성

공공건축의 품격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추진

이와 같은 공공건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사업기획이 부실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은 부족한 한편 유사한 시설이 중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해 획일적인 디자인이 양산되고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시설이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은 우리나라 건축 정책에 관한 최상위법으로서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규정하여 건축의 공공성과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은 이 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디자인기준, 민간전문가 제도 등을 추진하는 핵심 대상이며, 이 법에 근거하여 200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범부처 차원에서 공공건축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2013년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설계공모 활성화, 설계의도 구현, 공공건축 건축기획,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비해 공공건축의 수준이 나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널리 확산할만한 우수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업별, 정책별로 분산된 법령과 절차의 한계

하지만 여전히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사업절차가 각각 법령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건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공공건축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 담보를 위한 수단 및 절차가 생략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관련 법·제도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범부처 차원의 정책추진, 발주기관의 전문성 확보, 공공건축사업 시행과정의 체계화, 공공건축 복합화 등 최근 요구되는 정책적·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별 소관 공공건축물 관련 법령

관련부처	시설명	세부시설	관련법령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앙관서 청·관사	청사시설, 지방행정연수원, 기록문보전시설 등	국유재산법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지침 정부청사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공연장,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도서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복합시설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 도서관법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교육시설	교육원, 연수원, 학교, 인력개발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국립과학관 기타 공립·사립과학관 등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출처 : 염철호 외(2019), 「공공건축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27 [표 2-2]

특별법의 필요성

공공건축 정책은 단순히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공공건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건축을 추진하는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업무는 분산되어 있더라도 범부처 차원에서 공공건축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법을 통해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기획-설계-시공-운영관리까지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등에 전문적인 지원 및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공공건축이 연계·복합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5기 국건위의 활동

공공건축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추진
2019.05. ~ 2019.12.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제반사항 연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2019.04.18.
(기칭)「공공건축특별법」 제정 추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2019.05.24.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추진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2019.10.30.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공공건축특별법 토론회 개최
2019.11.29.
공공건축특별법 홍보 및 발전방향 논의

건설 관련 협회 간담회
2019.09.17.
법안 관련 의견 청취 및 반영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2019.04.18.

-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결과를 정리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강화하여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반영·준수토록 하되, 지속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가칭)「공공건축특별법」 제정 추진 발표

공공건축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추진 2019.05.03.~2019.12.26.

- 우리 위원회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용역 발주(연구 수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건축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 정부부처 및 실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개발, 건축, 법제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 발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범정부협의체 발족 2019.05.24.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법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제도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공공건축특별법」에 담을 세부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논의함으로써 법률 제정안 마련 뿐 아니라 법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협의도 동시에 진행

건설 관련 협회 간담회 2019.09.17.

- 「공공건축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자의 입장을 대표하는 각 협회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법률안 문구 등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2019.10.30.

- 함진규(대표발의)·박순자·박덕흠·윤종필·곽대훈·장석춘·김성원·이종배·김승희·윤영석 의원 10인이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공공건축특별법 토론회 개최 2019.11.29.

- 우리 위원회는 2019년 11월 29일(금)부터 12월 6일(금)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019 공공건축 컨퍼런스_공공건축이 말하다」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제도 및 우수사례 소개 전시, 공공건축 범정부협의체 회의, 공공건축특별법 토론회 등 진행
- "공공건축특별법 토론회"는 컨퍼런스의 세부행사로 건축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건축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음. 이 토론회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 제정의 취지와 중요성을 알리고, 제정안에 대한 건축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광환 위원의 「공공건축특별법」(안) 화두 제시를 시작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염철호 공공건축지원센터장이 이 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함.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강인호 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김태경 건축문화경관과장, 중앙대학교 전영훈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유준호 법제위원장이 함께 토론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





공공건축특별법(안)

전체 법령체계

- 「공공건축특별법(안)」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분산된 공공건축 사업 절차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공건축 발주자의 범위에 모든 공공건축 조성 주체가 포함되도록 하고, 개별 공공건축 사업만이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서의 공공건축 사업도 포함되도록 규정
- 타 법과의 관계 : 「건축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따르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축 지원센터(제24조 및 제24조의2),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제22조의2), 건축기획의 수행(제22조의3), 사전검토(제23조), 설계공모 활성화(제21조) 등 공공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관. 또한 국·공유재산 및 개별 공공건축 유형별 소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

「공공건축특별법(안)」 법령체계

장	조항	주요내용
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절차 등에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공공기관 및 공공건축사업의 범위와 용어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시행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2장 공공건축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내용
	(제6조) 공공건축 정책 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공공건축 정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10년 단위로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등
	(제8조)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장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	(제9조)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	공공기관등의 발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전담조직 설치 등
	(제10조) 총괄건축가 등	공공기관등의 총괄건축가 위촉에 관한 사항
	(제11조) 공공건축가	공공기관등의 공공건축가 위촉에 관한 사항
	(제12조)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및 업무 범위, 정부의 지원 근거 등
	(제13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업무 범위 등
	(제14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등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절차 등
	(제15조) 설계기준 등	공공건축이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적용 등
4장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제16조)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	공공기관등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건축사업 시행과정
	(제17조) 건축기획	공공기관등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내용 및 절차 등
	(제18조)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사업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 의무 및 절차 등
	(제19조) 설계발주	적합한 발주방식의 선정 및 설계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 설계의도 구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설계자의 업무 및 절차 등
	(제21조) 성과평가	공공건축사업 완료 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의한 성과 평가
	(제22조) 공공건축사업의 용역대가	공공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고시
5장 공공건축의 품격향상 및 복합화	(제23조) 공공건축 선도사업의 실시	우수한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 지정 및 지원
	(제24조) 우수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선정	공공건축사업의 우수 설계자 및 우수 시공자 선정, 우대사항 등
	(제25조) 우수 공공건축의 선정	우수 공공건축의 선정 및 시상
	(제26조) 관계자 의견수렴	공공건축사업 시행 시 지역 주민 및 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
	(제27조) 공공건축 복합화사업의 시행	공공건축사업 추진시 공공건축 복합화 조성 노력 및 시행절차 등
	(제28조) 복합화건축의 운영 및 관리	복합화건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협의회 설치 등
	(제29조) 복합화사업에 대한 특례	복합화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건축 관련 법령의 특례 등

출처 : 「공공건축특별법안」(의안번호 23226, 2019.10.30. 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주요내용[1]

(1) 공공건축 사업절차 체계화

-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두 동일한 사업절차를 따라야 함.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을 비롯하여 국회, 법원 등도 포함
- 또한 개별 공공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일부로 포함된 공공건축물도 예외 없이 「공공건축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됨
- 기존 공공건축 사업은 '설계발주 → 설계 → 시공 → 준공'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 초기부터 공공건축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건축기획 → 사업계획 사전검토 → 설계공모' 절차를 도입. 또한, 건축기획 및 설계에 맞춰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의도 구현 절차를 명시
- 「공공건축특별법」 이전에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해당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는 했으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특별법으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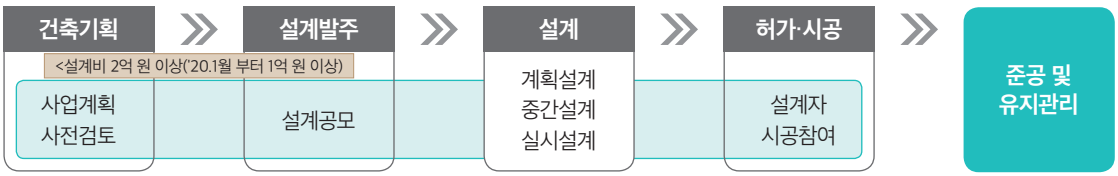

-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디자인 방향, 주민 요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검토. 「공공건축특별법」을 통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될 경우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기획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설계공모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 법령에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이 아닌 「공공건축특별법」에 세부절차를 상향 규정. 다만 설계공모가 확대될 경우, 경험이 부족한 신진건축사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진건축가만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
- 설계의도 구현은 시공자가 설계 도서를 잘못 이해하거나, 비용 절감 또는 시공 편의성을 위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그동안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설계자에게 몇 차례 자문을 요청하거나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음.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제약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2019.11.15.),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발췌 재구성.

되면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건축특별법」에서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대한 계약체결을 의무화

(2) 총괄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도 이번 「공공건축특별법」에 명시함. 총괄건축가는 지자체 단위에서 공공건축 정책 자문과 중요사업에 대한 관리 등을 담당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 단위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좋은 건축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발주 자문을 담당
- 서울특별시와 영주시가 이 제도를 도입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 마련된 법적 근거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3) 복합화사업 추진 촉진을 위한 절차 및 특례 규정

- 정부에서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19.4.15)하면서 사업별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 이러한 생활 SOC 복합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례가 필요하므로 「공공건축특별법」에 관련 절차와 특례를 규정

(4)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공공건축이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건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추진실적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절차 마련
- 또한, 공공건축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고 관리하는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해당 계획에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및 복합화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담아 추진

2

[건축시스템]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건축 프로세스

2-1.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건축규제 혁신
건축 인허가 및 심의제도 개선

2-2. 책임과 전문성에 기반한 건축사 직능 구현
건축사 자격제도 합리화

2-3.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활성화
설계의도 구현제도 정착

2-4. 비정상적인 소규모 건축시장의 개선
소규모 건축시장 산업구조 정상화

2-1.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건축규제 혁신

건축 인허가 및 심의제도 혁신

건축행정의 선진화 필요성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

국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의 안전에 가장 밀접한 건축행위는 인·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물의 기본성능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건축 인허가는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과 지방자치단체 도시 관리 수단의 일환으로 심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건축물이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성능을 확인하고 설계안의 적법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설계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지역 간 심의기준과 심사대상을 단일화하기 어렵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심의제출 설계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2]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및 심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포함하고 있어 심의위원 간 의견이 상이하거나, 지역 및 지구에 따라 심의결과가 달라지는 등 비효율적인 건축행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 뿐만 아니라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 등 타 법령에 의한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간 심의목적과 절차가 중복되거나 상이한 심의의견이 제시되는 등 행정적 소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 관계법령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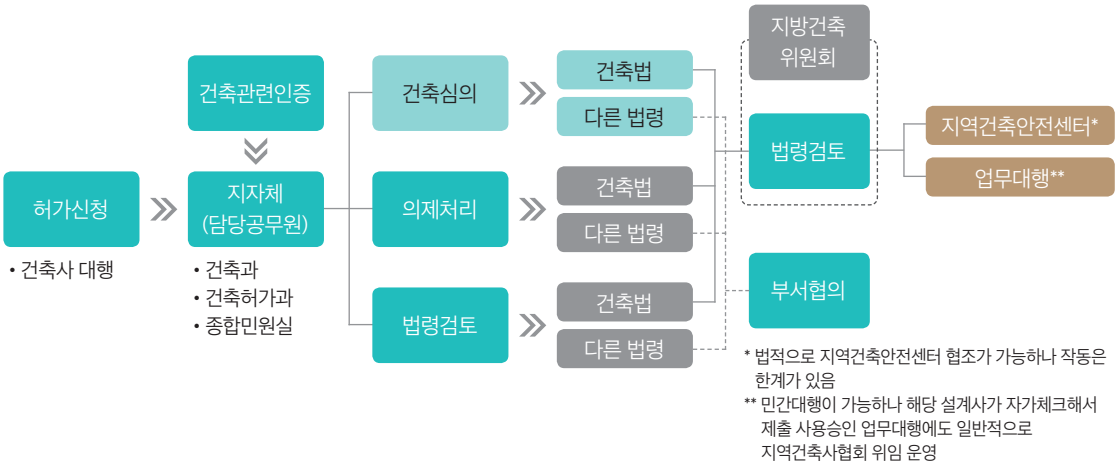

출처 : 황은경 외(2019),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169 [그림 4-3]

2) 2014년 9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발표, 2015년 5월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우수건축물 양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효율적 건축행정

2019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주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에서는 건축프로젝트별로 허가 절차상 필요한 심의와 인증의 개수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 및 인증을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종합 36건, 관공서와 같은 공공건축의 경우에도 종합 32건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건축물의 설계기간이나 시공기간이 아닌, 인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적인 부담은 우수건축물을 양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건축행정은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건축물 인증의 경우 규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적용, 녹색건축인증, BF인증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각종 인증평가 및 심의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도서가 달라 인증비용의 지출이 가중되고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영국 및 프랑스 등에서 건축인허가 절차는 신용기반으로 간소화하고 건축성능허가를 착공, 공사중, 준공 시에 정량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거치는 반면, 국내 인증제도는 일반적으로 인허가 이전에 시행하여 인허가를 위한 인증평가로 그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실제로 건축성능에 도달하였는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인증평가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재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사 인증을 통합하여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단기적으로는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줄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별 건축허가절차상 심의 및 인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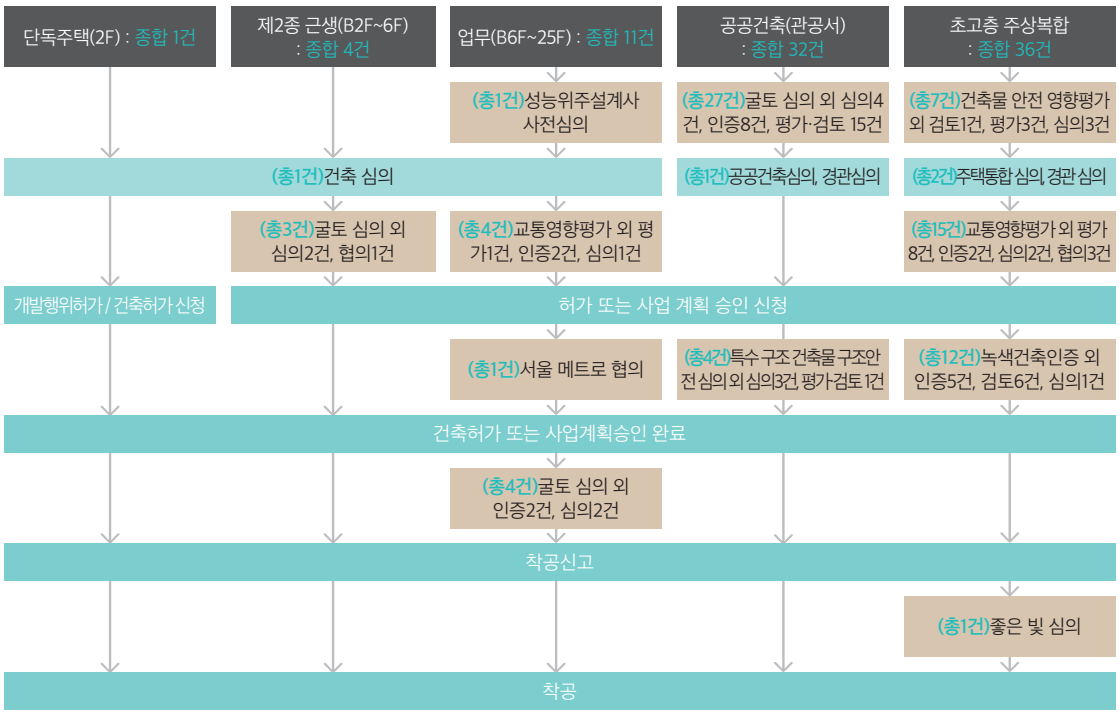

출처 : 황은경 외(2019),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57 [그림 2-8]

건축물 품질확인 절차 도입으로 건축 인허가 및 심의제도 선진화 필요

건축 인허가 절차에 따르는 각종 심의와 인증제도는 전문인력과 업무 수행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행정체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이 디자인 향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디자인 품질제고와 건축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의 인허가 제도에서 벗어나 성능검사 기반의 건축물 품질확인 절차 도입을 통한 건축허가 및 심의제도 개선으로 건축 행정절차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심의제도 개선방안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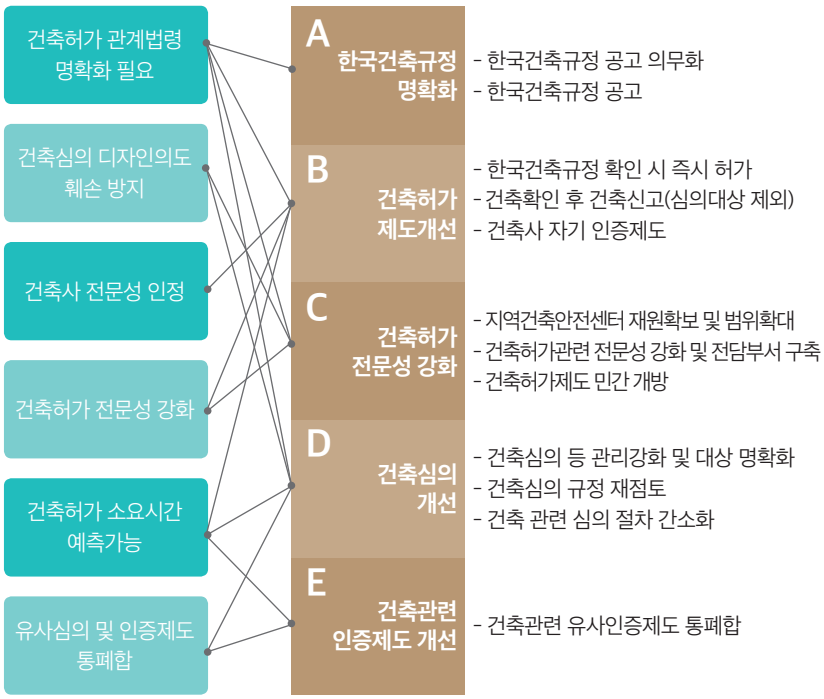

출처 : 황은경 외(2019),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164 [그림 4-1]

5기 국건위의 활동

건축혁신방안 대정부 건의
2019.03.13.
건축혁신 방안 "건축 허가·감리 시스템의 선진화" 건의

지자체 허가담당부서 간담회
2019.04.16.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관련 지자체 허가담당부서 의견수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2018.12.04.
허가제도 개편 요청

건축 사전 허가제도의 건축계획 등록제 전환 논의
2019.03.22.
한국건축규정의 준수여부를 지역 건축안전센터로부터 확인 받은 후 등록하는 방식 논의

「건축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의결
2020.03.06.
2019.09.20. 윤관석 의원「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건축단체 간담회
2019.04.19.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관련 건축 8단체 의견 수렴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 구축
2014~2020.04.(공고예정)
각종 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색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

심의·인증제도 통합화 방안 논의
2019.06.21.
건축허가 및 심의, 인증절차의 문제점 검토 및 선진화 방안 논의

건축혁신방안 대정부 건의 2019.03.13.

-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건축혁신 관련 총리 면담을 요청하여 3월 13일 광화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건축 허가 시스템 선진화,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 조달체계 개편, 3기 신도시 계획체계 개편 등 건축혁신 방안을 건의하고, 각 부처 추진사업에 대해 총리실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

총리 면담 결과

구분	내용
일시	2019.03.13.(수) 15:30~15:50 / 광화문청사 총리 집무실
참석	국무총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께서 건축혁신 관련 총리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 조달체계 개편 등 건축도시 혁신을 위한 4개 안건 논의

구분	내용
안건	①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 조달체계 개편(지역개발사업으로부터 건축설계 분리발주 등) ② 건축 허가·감리 시스템의 선진화 ③ 3기 신도시 계획체계 개편(3차원 도시건축통합설계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41개 지구에 적용) ④ 통일대비 지속가능한 개발(DMZ, 접경지역, 북한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제도 개선' 관련 보고 2019.04.18.

• 국정현안점검회의 1차보고(1.24) 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을 보완하여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유사 심의 통합 등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심의제도 혁신" 보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제75회) 결과

구분	내용	
일시	2019.04.18.(목) 08:30~09:30 / 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 ↔ 세종청사(1동 3층 영상회의실)	
참석	국무총리(주재),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조달청·통계청·소방청 청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내용	①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 총괄·공공건축가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확산 • 전문성이 낮은 발주기관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검토 등 지원정책 내실화
	②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	• 건축기획 강화 • 가격입찰 축소 및 설계공모 전면개편 • 유사심의 통합 등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심의제도 혁신 • 시공 단계에서 설계자 역할 명확화 등
	③ 부처 지역개발 및 생활 SOC 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	•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 3기 신도시 입체적 마스터플랜 수립 적용 • 도시재생 등 5개 부처 시범사업 선정 및 성공사례 확산 추진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관련 관련주체 간담회 개최

지자체 허가담당부서 간담회 : 2019.04.16.
8개 단체 간담회 : 2019.04.19.

• 지자체 허가 담당부서, 건축관련 5단체 포함 8개 단체 간담회를 통한 한국건축규정 운영·관리방안, 건축관련 심의·인증 제도 통합화 방안 등 의견 수렴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관련 관련주체 간담회 결과

구분		[지자체 허가 담당부서 간담회]	[8개 단체 간담회]
일시		2019.04.16.(화) 14:00~16:30 / 위원회 회의실	2019.04.19.(금) 14:00~16:30 / 위원회 회의실
참석		위원회 및 국토부, 지자체, 건기연·건축사협회 등 25명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이광환 위원, 지원팀장 등 - 국토부 : 건축정책과장, 사무관 - 지자체(7)* : 건축 인·허가 및 심의부서 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 * 서울(강남구), 인천(서구), 경기(화성, 평택), 충남(천안), 충북(청주), 강원(원주)	위원회 및 국토부, 자문단체, 건기연·건축사협회 등 20명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박인석 위원, 이광환 위원, 강미선 위원, 기획단장, 지원팀장 등 - 국토부 : 건축정책과장, 사무관 - 단체(6)*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 협회, (사)새건축사협의회, 대형설계사협의회, 서울건축포럼
지자체 의견	한국건축규정 운영 • 관리 강화	• 한국건축규정의 의제처리, 확인법령에 대한 명확한 설정 근거 필요 •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재의 제도로서 해결 가능한 부분 등을 비교검토 하여 제도개선이 진행되어야 함	• 건축허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과 한국건축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타법규정의 책임구분은 명확히 하여야 함 • 예측 가능한 건축허가 결과를 위해 인허가와 관련된 법체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 강화 및 확대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의 전문가 및 운영재원 확보 어려움 예상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인허가부서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는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장치 필요 • 정량적, 성능적인부분은 건축사의 체크리스트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조·안전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제3의 전문가가 확인하는 제도마련
	건축 신고 및 허가를 확인검사로 전환	• 건축 확인제도로 건축인허가를 전환할 경우 제출서류 증가와 현행제도 보다 강화된 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민원 우려 • 현행 건축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건축 인허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분		[지자체 허가 담당부서 간담회]	[8개 단체 간담회]
지자체 의견	건축 관련 심의 • 인증제도 통합관리	• 인증제도 통합은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며,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심의는 통합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경관 및 건축심의는 유사내용의 중복심의로 운영시스템 개선 필요	• 지자체별 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조건이 다르므로 예측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필요 • 건축디자인 및 굴토심의를 우선 없애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완화규정만 심의 • 공동주택 건설시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 관련 재량권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심의제도의 순기능을 보호하고 심의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건축허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제도 신설	•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재량행위 모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는 적음 •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제도 등도 고려할 필요 • 전문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허가제도의 민간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부족으로 역작용이 발생하므로 담당의 전문화 필요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 선진화를 위한 심의·인증 제도 통합화 방안 논의

2019.06.21.

•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의 문제점 검토 및 선진화 방안 논의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논의 내용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건축허가	• 건축 관계법령 파악 한계, 건축허가 행정 업무 인력 및 조직체계 미흡 등	• 한국건축규정 공고 및 목록확인을 통한 건축허가
건축심의	• 심의사항 임의 강화·완화, 과도한 추가 제출 도서 요구,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사의견, 허가 소요시간 예측 어려움 등	• 다양한 심의는 사안별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심의를 폐지하고, 새로운 건축관련 심의 개설 시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절차 필요
인증	• 과도한 비용 지출, 인증 과정 중 디자인 훼손 등	• 관련 유사 인증 통폐합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며, 심의 및 허가와 분리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증운영 방법 마련 필요 • 인증 수수료 개선 필요 • 선진 해외사례의 경우는 사용승인 단계 시 인증 확인을 요구하고 감리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기준 관련부분에 대해 현장 검사 및 확인

미국, 유럽 등 해외 건축 인허가제도 시사점 공유 2019.07.26.

• 한국건축설계학회에서 수행한 “건축인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외 건축인허가 제도 사례에 관한 시사점 공유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관련 해외 건축인허가제도 시사점 요약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미국	• 전국 통일된 기준과 절차로 운영하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존중 • 인허가 대상을 도시계획영역과 건축물안전영역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 • 인허가 제도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인허가 관련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부담하고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심의기간 단축 가능	프랑스	• 도시 건축의 통합을 전제로 진행하는 인허가 제도 • 허가 시 도시계획적 규제들이 조건이 되며, 건설기술의 규정은 준공 심사 단계에서 정량적으로 규제 •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합화, 투명화 • 서류제출창구 단일화 • 정부공인도시건축사제도를 이용한 전문성 확보
영국	• 불문법 기반의 유연한 법적용 및 국제적 통용 • 도시-건축 통합 인허가 • 도시-건축허가 대상여부 및 인허가의 판단은 허가권자의 정성적 판단에 의함 • 허가권자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여 신용기반의 인허가 절차간소화 • 반면, 건축성능허가는 착공, 공사 중, 준공 시 철저한 검사를 거치며, 인테리어도 건축성능허가 받음 • 건축인허가 조건에 따른 높은 비용과 기간 소요 문제	독일	• 도시, 건축, 경제,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시민의 합의(B-plan)을 바탕으로 건축행위 기준 제시 •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사, 구조, 방재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각 분야별 별도 계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 명시 • B-plan 외 허가과정은 간소화 및 정량화(매뉴얼)
		이탈리아	• 도시 건축 통합적 시각에서 체계적인 관리체계 •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허가창구 단일화 및 시간단축) • 인허가업무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업무의 명료화

출처 : 전영훈 외(2019), 「건축인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형설계사협의회, p.69, pp.87~88, p.107, p.124, pp.140~141 참고하여 요약작성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논의 2019.08.30.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8.22.) 발표 후속조치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논의

개정내용

•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건축 허가·신고에 관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 확대, 허가 등 신속 이행

• (성능기준 인정 통한 신기술·신제품 현장 활용 확대) 건축설비 관련 신기술·신제품 성능 확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해 설치기준 인정

• (민간참여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및 창의적 건축 유도)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

• (결합건축 기준 완화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 활성화) 공공건축물 결합, 빈 건축물 공원 등 변경 경우 결합건축 대상 대지 수 확대

체계적인 인허가 지원을 위한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구축 자문 2019.03.08. 2020.03.13.

• 한국건축규정은 각종 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색과 비교 용이하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은 건축법령체계 검색서비스 및 개별 건물에 대한 정보검색기능을 지원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을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사안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e-KBC) 구축과정에 대한 자문 수행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검토

제4차 합동연석회의 2018.08.24.	용역추진계획 논의(연구용역 추진 시 건축 관련 인증제도 현황 파악 필요)
제7차 합동연석회의 2018.10.12.	용역범위 논의(연구용역 과업의 범위 넓으므로 과업지시서 상 과업의 범위를 명확화·구체화 필요)
제12차 합동연석회의 2018.12.28.	연구용역 착수보고결과 논의(건축허가 및 심의제도에 대하여 국내 상황 종합적 파악, 국외 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 심층 분석 필요)
제13차 합동연석회의 2019.01.11.	연구용역 관련 소위원회 개최결과 논의(연구진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속적 협의 통한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 예정)
제14차 합동연석회의 2019.01.28.	연구용역 경과 보고(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 허가·심의절차 선진화 연구 함께 진행 중이며, 국내 현황 조사 및 건축사 자문 종합하여 건축허가 개선 위한 주요 문제점 연구 진행 중)
제17차 합동연석회의 2019.03.08.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e-KBC)소개 및 시연
제18차 합동연석회의 2019.03.22.	건축 및 사전 허가제도의 건축계획 등록제 전환 논의
제20차 합동연석회의 2019.04.26.	연구용역 진행상황 공유(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신설·개정 등)
제24차 합동연석회의 2019.06.21.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 선진화 방안 검토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의 문제점 검토 및 선진화 방안 논의
제26차 합동연석회의 2019.07.26.	「건축인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국내 인허가 제도 및 사례·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 해외 선진국 건축인허가 제도 사례 공유, 국내 건축인허가 제도 개선방안 발표)
제28차 합동연석회의 2019.08.30.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논의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관련 건축 허가·신고에 관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 확대, 허가 등 신속 이행 필요
제36차 합동연석회의 2020.03.13.	한국건축규정 체계화 및 e-시스템 구축 시연 지자체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시스템 등록 기한 의무화, 키워드 검색 시 오류 개선(건축법 누락 등) 등 필요
제37차 합동연석회의 2020.04.10.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발표(AURI) 개정 건축법에 따른 세부 운영지침 등 마련 필요

건축 인·허가 및 심의제도 개선 성과

「건축법」 일부개정을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3]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
- 또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건축법 일부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적극 추진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인허가절차 개선

	허가검토	심의		건축인증
현행	건축 인허가 부서	디자인심의		녹색건축,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30일(부처협의 등)	44일		4개 인증
개선	허가검토	심의	건축허가	건축인증
	건축 인허가 부서 (지역건축센터 검토)	생략가능 (지구단위·경관계획 수립 시)	»	스마트건축인증
	센터확인 후 신속 허가 (협의·심의기간 제외)			통합운영 검토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2019.10.15.),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서비스 혁신 - 「건축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한 지방건축심의 대상 한정 [시행 2020. 10. 22.]
[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일부개정]

-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의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
- 그 심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

3)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확인업무 수행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 유지관리, 감리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검토 등의 기술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센터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구역에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음
- 현재 서울, 세종, 강원, 전주, 시흥, 안양, 화성 등 32개소 설치('20.05.기준)되어 있으나, 32개소 중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 내 기초지자체가 26개소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에 6개소만이 설치되어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그동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이 부진했던 원인은 인력 및 예산 부족이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유관부처의 노력으로 센터 운영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일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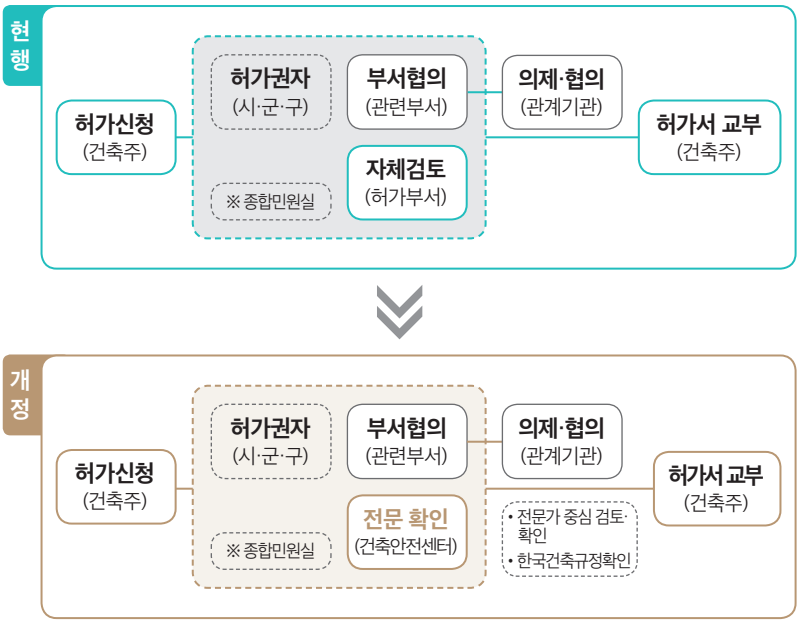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2020.5.15.),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과 전망"

2-2.

책임과 전문성에 기반한 건축사 직능 구현

건축사 자격제도 합리화

우수건축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선진화 필요성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 건축사 역량강화 필요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건축사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4]에 맞는 5년제 인증 건축학교육제도를 마련하였고, 2012년에는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실무수련제도를 도입하는 등 응시자격을 강화하여 건축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개정에 의하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5]으로부터 건축학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5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을 졸업해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학위 취득자들의 고충과 이들을 수용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건축사자격제도 개선 기초 연구설문 조사(2018),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문기간 : 2018.11.08.~11.21.(2주)

조사대상 : 총 3,395명(건축사, 교수, 실무수련자, 건축사보, 학생 대상)

- '자격시험 준비에서 어려운 점'으로 모든 집단이 '시험준비 할 시간 부족'과 '실무수련 내용과 시험 내용의 연계부족' 순으로 지적
- 현업에 종사하면서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은 응시기회를 갖기 어렵고 실무수련 또는 실무내용과 시험이 연계되지 않아 별도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실무수련자의 경우는 학원수강 등 비정규 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24.5%로 건축사보와 건축사 응답비율인 18.9%와 11.3%보다 높아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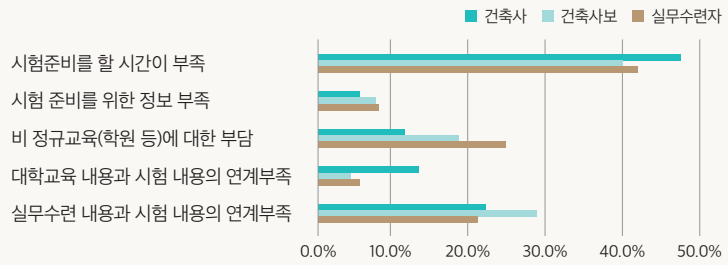

출처: 신범식·이종정(2019), 「건축사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p.211 참고하여 재작성

4) 건축사 자격의 질과 내용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인정을 위해 ① 건축교육의 최소연한을 5년 이상 전일제 교육 ② 최소 3년 이상의 실무수련기간 조건과 건축교육 기준에 부합함을 검증하기 위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권고

5)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관리 감독 하에 인증업무 수행

연 1회 시행되었던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은 직장인의 경우 일과 시험준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험 이전 6월에서 8월경에 퇴직이나 휴직하고 시험준비에 집중하는 예비건축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방식으로 인해 시간 내 완도 연습을 목적으로 사설 학원 교육을 수강해야 했고,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8일(시행: '20.1), 건축사 자격시험 횟수를 연 1회 시행에서 2회 시행으로 확대하였고,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유형 혹은 등급에 따라 시험기간을 연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격시험 횟수와 응시자 맞춤형 시험시간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험제도는 정규 건축교육과정과 연계가 미흡하여 사설 학원교육을 수강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선진화 이전의 과목과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건축계 의견 반영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수건축전문가 양성을 위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및 기존 건축사 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

우수한 건축은 좋은 건축가가 만들어 내고 창의적인 건축가는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냅니다. 세계적으로 역량 있는 건축가를 찾기 위해 국제공모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젊은 건축가에 주목하는 것도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건축물을 만들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영국 터너상을 수상한 어셈블, 일본의 R부동산, 우리나라의 랜드북 컨텐츠를 개발한 스페이스워크 그룹 등은 건축설계영역 뿐 아니라 IoT기반의 공간운영 기획과 부동산 컨설팅 등 다양한 산업과 건축이 융복합된 새로운 건축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건축사 자격시험제도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건축전문가를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제적으로 우수한 건축가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학 교육인증-실무수련-건축사자격시험으로 이어지는 건축사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5] 기존 건축사들의 역량증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6) 출처 : 신범식·이종정(2019), 「건축사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p.4

5기 국건위의 활동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관련 간담회
2018.11.16.
자격제도 개선 연구에 대한 실무 건축가들 참여 독려 필요

건축사자격제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
2018.11.08.~11.21.(2주)
건축사, 교수, 실무수련자, 건축사보, 학생 대상

건축사 직능윤리 확립 필요성 공유
2018.12.2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자문회의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관련 워크숍
2018.12.27.
자격시험 - 건축학교육 - 실무수련 연계 공감대 형성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관련 공청회
2019.01.08.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건축사법 일부개정
[시행 2020.02.21.]
[법률 제16486호, 2019.08.20., 일부개정]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2019.05.08.
연 1회 → 2회 시행,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업무대행 등 지역건축사회 관리 개선방안 논의
2020.04.10.
위원회 자문단 회의

건축사 자격제도 및 시험제도에 관한 개선 필요성 공론화
2018.11.16. 간담회
2018.12.27. 워크숍
2019.01.08. 공청회

- 건축사 자격제도 및 시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에 실무 건축가들의 참여를 고취시키고자 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개최
- 현행 자격시험을 건축학 교육 및 실무수련과 연계하고 전문자격인으로서의 역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건축사 자격제도 및 시험제도 관련 의견수렴 현황

구분	간담회	워크숍
일시	2018.11.16.	2018.12.27.
개요	•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의견수렴 방안 논의	• 현행 자격시험을 건축학 교육, 실무수련과 연계 • 전문 자격의 역량 테스트로 변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내용	• 전문학원에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자격시험제도 개선 • 인증교육(5년)과 실무수련 프로그램(3년) 중 인증교육 보강 필요 • 장기적으로 4년제/전문대학 출신 등 접근 가능한 제도로 개선 필요 • 정량적 평가 아닌 정성적 평가 부분에 대한 개선책 논의 ① 현 연구에 실무 건축가들 참여 부족 ② 인증원은 5년제 건축가 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방법에 집중하고 있어 건축사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 ③ 연구용역 중간보고 또는 전체 공청회 때 건축가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도모하여 제도개선 기본방향 결정 ④ 건축사 자격제도 및 인허가제도 개선은 분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기 연구용역으로 발주된 건축 인·허가제도 용역과 연계하여 개선안 논의	• 비 인증제 건축학과 졸업생들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3가지 (안)으로 논의 ① 2019년 예비시험 추가, 총2회 실시 ② 개인인증능력평가제도 활용 ③ 4년제 비인증 건축학과 졸업생 • 기존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임기가 '19년1월9일 만료 예정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10인 구성) 추천 요청

건축사 자격제도 운영 개선 노력

• 건축 선진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연구용역 등 건축계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제도와 연계한 건축사 자격제도와 시험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논의

구분	내용	비고
시험 횟수 확대	• 건축사 예비시험 폐지에 따른 시험시행기관의 기존 인력 활용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추진	5.8. 확정 발표
시험과목 보완	• 현재 3과목 5과제 시험과목에 건축법규, 프로젝트 관리 등 추가 필요성 검토	
시험방식 개선	• 인증교육정착에 따라 건축설계 이해력, 응용력, 해법력 등 종합 평가하는 CBT방식도입 가능성 검토	
시험 운용	• 시험 및 건축사등록 등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필요성 검토	
실무 수련	• 사무소개설 요건으로 변경 필요성 검토 • 감독건축사의 확인권한을 악용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수련 항목 등 조정 필요성 검토	

건축사 윤리강화 노력

• 건축관련 8단체 소속 자문단 운영을 통해 건축사 윤리기준 확립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건축사 책임강화를 위한 벌칙 규정 개정

건축사법 개정이유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인한 부실·불법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증이나 등록증 명의 대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칙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운영과정에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제7차 합동연석회의 2018.10.12.	• 자격시험 제도개선 용역 추진 • 신규 건축사 배출 제도, 교육, 기존 건축사 재교육 등 필요성 인식 및 추가 진행 필요
제9차 합동연석회의 2018.11.16.	• 자격제도 연구용역 중간보고 사전간담회 • 정량적 평가 아닌 정성적 평가 부분에 대한 개선책 논의
제12차 합동연석회의 2018.12.28.	• 자격제도 연구용역 진행사항 보고 • 미국 사례와 같이 법규 및 관리, 구조설비 등을 평가할 필요
제20차 합동연석회의 2019.04.26.	• 건축주의 책임 또는 전문가로서, 설계자로서 건축사의 책임 강화 필요 논의
제21차 합동연석회의 2019.05.10.	• 자격제도 연구용역 과제점검 • 과제명에서 '건축교육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부제 삭제
제24차 합동연석회의 2019.06.21.	• 자격제도 연구용역 추진현황 보고 • 건축 선진화 제도를 본격시행하기 전에 공청회·연구용역 등 건축계 의견을 반영하여 자격제도·시험방식을 교육제도와 연계하여 보완 • 제도개선과 동시에 기존 건축사들에 대한 책임강화 및 벌칙 조항 신설 필요 • 현행 건축사 책임 권한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강력한 책임부여와 벌칙조항 마련 위해서는 건축사법 전면개정 필요
제33차 합동연석회의 2020.01.10.	• 한국건축교육학인증원의 건축학교육 인증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 독립기관에서 시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건축사 자격에 대해 국제사회 상호 교류 방안 마련 필요
제35차 합동연석회의 2020.02.28.	• 자격시험 연구용역 중간보고 •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실무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시험제도 개선 필요

건축사 자격제도 및 시험 개선 성과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

-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 확대(연 1회에서 연 2회 시행으로 개선)
-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

  ※ 현행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며,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 인정
- 장애인 응시자는 19년 하반기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 1.2배~1.5배 연장

  ※ 시각장애 : 1~2급 1.5배(90분↑), 3~5급 1.2배(36분↑) / 지체장애·뇌병변장애 : 1~3급 1.3배(54분↑), 4~6급 1.2배(36분↑)

건축사법 일부개정을 통한 건축사 책임 강화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6호, 2019. 8. 20., 일부개정]

-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인한 부실·불법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고 건축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증이나 등록증 명의 대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2-3.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활성화
설계의도 구현제도 정착

건축디자인 품질 개선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필요성

공사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설계의도 훼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사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공사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세시공도서가 부재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가 설계도서에 대해 세부적인 이해를 동반하지 못할 경우, 설계안이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시공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본래 설계의도와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개정 이전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4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경우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감리하는 과정에 설계자는 부재했으며, 공사 감리자와 시공자에 의해 설계변경이 진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보장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하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나 실행수단 미흡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공공건축공사 발주 시 건축과정에 건축설계자 참여가 의무화되었고,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시행 2019.02.15.),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신기술 적용 건축물, 우수건축사 설계건축물, 설계공모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의 시공단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공사감리자와 설계자 간 역할 정립 미흡,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대가기준 부재, 설계의도구현 미준수 발주자에 대한 제재 조치 미흡 등 실행수단의 미비로 '설계의도 구현'은 현장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가기준, 공사감리와 역할 분담 등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따라서, 공사과정에서 기존 설계의도를 구현하면서도 공사 감리의 본래 목적인 성능, 법규, 안전 측면에서 공사과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범위를 세분화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감리는 시공과정에서 성능 및 법규, 안전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사와 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설계구현 업무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의도에 부합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하여 협업한다면 우수한 건축디자인 그리고 건축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기 국건위의 활동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2018.10.04.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과제 포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논의
2019.05.10.
법정 의무대상 외 경우도 설계공모·사전검토·설계의도 구현을 시행권장

건축법 일부개정
2018.08.14. 일부개정
(시행 2019.02.15.)
건축법 일부개정을 통한 건축과정 설계자 참여조항 신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2019.01. / 2019.05.
"설계자 시공과정 참여 (설계의도 구현)" 등

범정부협의체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요청
2019.07.26.
설계의도 구현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요청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신설
2019.04.
공사단계의 디자인감리, 준공단계의 준공검사 시 설계의도 구현 관련 내용 포함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가이드라인" 개정
2019.12.
활성화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내 설계의도 구현 문구 추가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자문
2018~2019
공공분야 소규모 건축사업 정상화 전략 내 "사전검토 및 설계의도 구현 강화" 과제 포함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 대통령의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 후속 조치로 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를 공동 발표하였으며,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과제 포함

'설계의도 구현' 관련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설계의도 구현'을 포함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와 관련하여 의무적용(설계비 1억 이상) 대상 이외에도 실시하도록 권장
- 공공건축 사업은 설계의도대로 공사가 구현되도록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자문·조언할 수 있도록 역할·자문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적정 설계대가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공공건축물 품격향상을 위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각 단계의 특화 절차를 체계화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추진

공공건축특별법(안)

구분	내용
제17조 (건축기획)	공공기관 등이 공공건축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함
제18조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기관 등이 공공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기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제14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제19조 (설계발주)	공공기관 등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공건축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정하여야 함
제20조 (설계의도 구현)	공공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제21조 (성과평가)	공공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제공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출처 : 「공공건축특별법안」 의안번호 23226(2019.10.31. 발의) 내용 발췌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자문을 통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권장 문구 추가

- '설계의도 구현'관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개정(안) 자문을 통해 법정 의무대상 외 경우도 설계공모·사전검토·설계의도 구현을 시행권장하고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문구 추가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자문을 통한 '설계의도 구현' 관련 과제 도출

- 공공분야 소규모 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전검토 및 설계의도 구현 강화" 실천과제 도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

- (설계의도구현 업무 범위) 품격과 품질을 기준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공사감리와 설계의도구현 업무 구분
- (설계의도구현 참여절차) 시공 단계에서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설계자의 설계업무와 시공단계 참여를 건축사의 기본적인 업무로 규정
- (설계의도구현 업무 대가) 설계대가에 대한 대비 비율, 실비정액가산 방식 두 가지로 제안
- 산재된 용어(설계의도구현, 사후설계관리업무, 디자인감리) 정리 및 일원화 필요

'설계의도 구현' 관련 용어 비교

구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용어	설계의도 구현	사후설계관리업무
관련 법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업무 **제6조(설계업무)** ④ 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3조(설계의도 구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 설계자는 건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등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019. 7. 4., 전부개정 이전에는 '설계의도 구현'이 아닌 '디자인감리' 용어 사용 [제19조(디자인감리의 도입 및 설계변경)]	*** 건축법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정부협의체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요청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재논의 요청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한 설계의도 구현

제9차 합동연석회의 2018.11.16.	• 사후설계관리제도에 대한 의제화 필요성 제기
제14차 합동연석회의 2019.01.28.	•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
제17차 합동연석회의 2019.03.08.	• 실태조사 연구용역 점검
제19차 합동연석회의 2019.04.12.	• 설계의도 구현 제안 및 방향 관련 강연 • 설계의도 구현의 업무범위, 참여절차, 업무대가 관련 논의
제21차 합동연석회의 2019.05.10.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개정(안) 논의 • 법정 의무대상 외 경우도 설계공모, 사전검토, 설계의도 구현 시행권장 • 설계의도 구현 위해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문구 추가
제28차 합동연석회의 2019.08.30.	• '공공건축특별법' 입법 추진현황 보고 • 설계의도 구현 위한 국가 재정 부담 및 후유증 해결위해 감리제도 개선 논의
제35차 합동연석회의 2020.02.28.	• 실비정액가산방식 연구용역 착수보고 • 자문위원에 관련 공공 업무 전문가 포함 필요 / 공공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업무로 한정해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소요예산 산출표 등 작성 필요

설계의도구현 제도 정착 성과

건축법 일부개정을 통한 건축과정 설계자 참여조항 신설

[시행 2019. 2. 15.] [2018. 8. 14., 일부개정]
[시행 2020. 10. 8.] [2020. 4. 7., 일부개정]

-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안 제25조제12항)시키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한정·축소 (제25조제2항)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 설계자 참여방안 강구 문구 추가

• 2019.07.04.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3조(설계의도 구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 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제17조(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설계자는 건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등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중앙부처 지침별 설계의도 구현 명확히 규정

• (교육부) 교육청별 총괄기획가, 학교별 학교공간혁신촉진자 협업방식의 "학교공간혁신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신설 ('19.4.)

• (국토부) 공공건축가 위촉,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계획수립절차를 규정하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정 ('19.12.)

• (해수부) 조경 및 공공공간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유도하는 「어촌뉴딜300」 선도사업 디자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설계의도 관련 세부과제 포함

1.1 공공분야 소규모 건축사업 정상화 [사전검토 및 설계의도 구현 강화]

ㅇ 사전검토 및 설계의도 구현 의무대상 확대

-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의도 구현 의무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건축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

※ (현행) 설계비 2.1억 원 이상 사업→('21) 설계비 1억 원 이상 사업→('23)모든 사업으로 확대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서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유도 및 이를 위한 사전 검토기준 마련

ㅇ 설계의도 구현 업무대가 구체화

- 설계의도구현 업무대가 기준 마련 및 예산편성 기준 마련(기획업무 예산 수립 기준 등, '20)

2-4.

비정상적인 소규모 건축시장의 개선
소규모 건축시장 산업구조 정상화

동네건축 품질 제고를 위한 소규모 건축시장 개선 필요성

건축조성 관련 법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규모 건축물

현행법 상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건축행위에 따른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층수와 연면적 등의 기준을 근거로 건축행위 기준을 구분하고 있어 통일된 규정은 부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8년에 진행한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연구에서 건축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 규모와 '설계-감리 분리 대상' 중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인 661㎡ 이하 건축물을 소규모 건축물로 규정[7]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661㎡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약 90%를 차지하며, 건축허가 건수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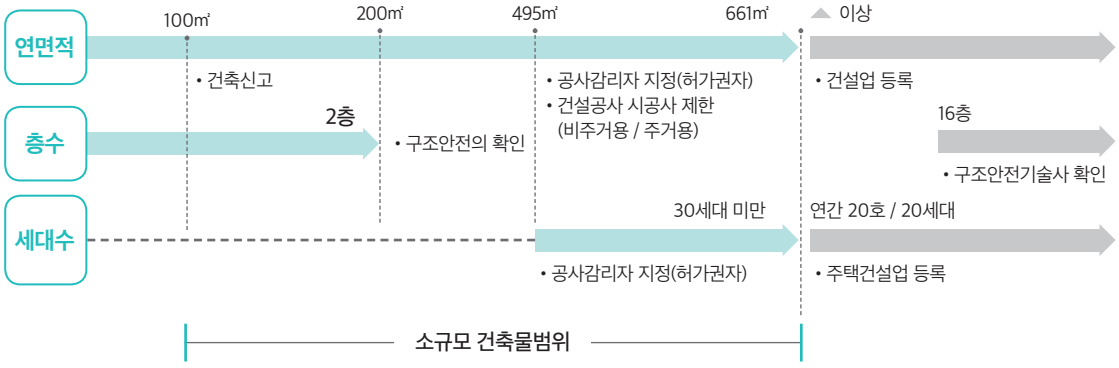

출처 : 서수정 외(2018),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5

7) 서수정 외(2018)는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 규모가 200㎡ 이하로 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가장 많은 건축허가 물량과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조성과정의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661㎡ 이하 건축물을 소규모 건축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2017년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

구분	전체합계		소규모 건축물(661㎡ 이하) 합계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체	7,126,523	4,313,862,105	6,389,971	1,041,055,071
비율 (%)	100%	100%	89.66%	24.13%

출처 : 서수정 외(2018),「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2 [표 2-2]

그러나 소규모 건축시장이 건축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축조성 관련 법제도는 중대형 규모의 건설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소규모 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취약한 상황입니다[8]. 공공발주 사업이거나 공사 규모가 클 경우에는 설계업무 이외의 절차에 대해「건설기술 진흥법」과「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은「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건축사법」의 설계업무에는 기획업무와 설계의도 구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문제양상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기획업무 부실, 설계의도구현 적용 미흡, 발주자의 전문성 부재 등이, 민간건축물은 건축주 직접시공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시공, 품질 보증을 위한 성능기준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기획 부실로 인한 수준 낮은 소규모 공공건축물 양산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전체 공공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낙후된 디자인 수준 등 품질이 미흡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관 수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9] 사업계획사전검토 등 건축기획 관련 업무 수행 대상이 공사비 약 5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에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기획 단계가 미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업무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설계비 2.1억 이상 공공발주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기획의 부실, 저가입찰에 의한 부적격 설계자 선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10]
현재 공공이 발주하는 건축사업의 80% 이상이 설계비 5천만 원 미만(공사비 약 12억)의 소규모 건축물로 파악되는데[11], '기획업무발주, 설계발주, 공사관리, 공사 사후관리' 절차가 법적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대규모 공사와 달리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행정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전문인력의 확충 혹은 별도 기구 신설을 통한 기획·관리업무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8) 염철호 외(2019),「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p.92
9) 염철호 외(2019),「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p.91
10) 전게서, p.114
11) 전게서, p.91

공공건축물 설계금액대별 발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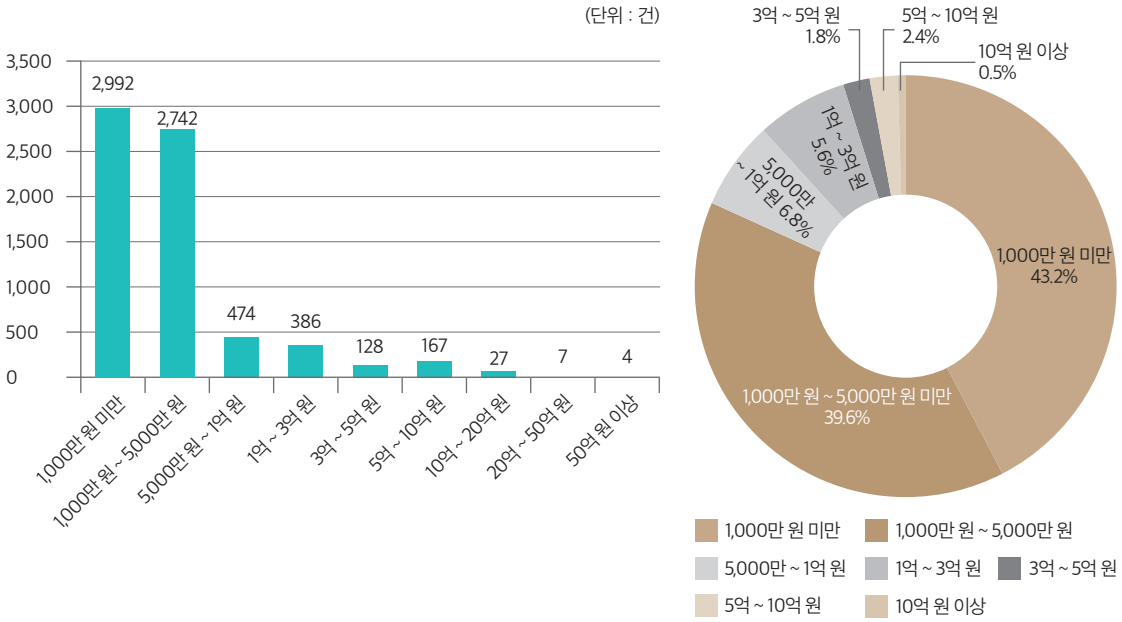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5),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5

소규모 민간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취약 및 품질관리 미흡

종합건설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건설업 1천5백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에 대한 별도의 세부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 품질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규모 건축설계시장은 소위 허가방이라는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지역 기반의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건축설계 대부분이 상세도면 없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작성하고 있어 설계품질이 낮고 부실한 설계는 시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절약을 위해 건축주가 직영공사로 착공신고를 한 후 무자격업자(체) 및 개인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 등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역량 있는 소규모 시공업체 육성 필요

건축주 직영공사와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공사 차단 및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자로부터 설계와 감리를 분리한 결과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이 축소되어 설계가 시공과정까지 책임지고 연계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할 뿐

아니라 사업성 문제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영세업체가 소규모 건축공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역량 있는 시공업체 육성과 함께 소규모 건축물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5기 국건위의 활동

2018 대국민 건축토론회 주최
2018.11.27.
"동네건축 혁신, 소규모 공공건축과 소규모 민간건축" 주제토론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2019.04.18.
(기칭)「공공건축특별법」제정 추진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안) 자문
2018~2019
"우수 소규모 건축물 설계시공업체 육성 및 지원", "소규모 건축물 건설업 면허 도입" 과제 포함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우수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제도 마련" 추진

-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한 우수 업체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제도 마련"과제 발표

"동네건축 혁신, 소규모 공공건축과 소규모 민간건축" 대국민 건축토론 2018.11.27.

- "동네 건축 혁신, 소규모 공공건축과 소규모 민간건축"을 주제로 한 박인석 위원의 발제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네건축"을 "좋은 동네건축"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대안 모색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자문을 통한 소규모 건축시장 관련 과제 도출

- 민간분야 소규모 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우수 소규모 건축물 설계·시공 업체 육성 및 지원", "소규모 건축물 건설업 면허 도입" 실천과제 도출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한 소규모 건축시장 산업구조

제8차 합동연석회의 2018.10.26.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사전보고 1차
제10차 합동연석회의 2018.11.30.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사전보고 2차
제22차 합동연석회의 2019.05.24.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추진보고

소규모 건축시장 산업구조 개선 성과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추진

대통령의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공동발표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한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 발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건축의 공공성 증진	①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 전국 확산 ②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및 기능 확대 ③ 중요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한 국건위 자문
	설계방식 개선	④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 축소 ⑤ 건축설계공모 절차 개선 ⑥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⑦ 공공건축만의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 마련 **⑧ 우수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제도 마련** ⑨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 정상화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에 소규모 건축물 관련 과제 포함

1.2 민간분야 소규모 건축사업 정상화

[우수 소규모 건축물 설계·시공 업체 육성 및 지원]

- 소규모 건축물 성능 품질 제고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 및 보증 등 지원제도 마련 ('19~'20)
-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우수 설계자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20~'23)
- 역량 있는 건축사 대상 확대 및 역량 있는 건축사 시공참여 기회 확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 우수 건축공사업체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를 통한 등록제 도입
- 소규모 우수 건축공사업체에 대한 공공발주 소규모 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가점 부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예규 개정 협의 추진

  ※ ('20)등록제 도입 → ('21)우수업체 선정사업 → ('22)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23~)우수업체 선정사업 지속

[소규모 건축물 건설업 면허 도입]

- 소규모 건축공사의 시공품질 확 보를 위해 제도권 내에서 소형건설업 면허 도입 추진 ('21~'22)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2억 기준으로 소형건설업 신설 등

3

[도시공간]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

3-1. 입체적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주택지구 계획

도시·건축 통합계획 정착

3-2.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

도시설계 제도 활성화

3-1.

입체적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주택지구 계획
도시·건축 통합계획 정착

도시·건축 통합 구현의 필요성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통합적인 공간환경 조성 미흡

그동안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은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라는 인식에 따라 토지이용을 다루는 2차원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계획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입체적 공간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후속 디자인을 진행하였고, 개별 업무단위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관리체계로 인해 도시계획, 건축설계, 토목설계, 조경설계 등 직종별로 설계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도로, 가로시설물, 조경시설 등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전체 도시공간의 구조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도시와 건축은 서로 유리되어 최적의 도시 공간을 조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같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이 단계적으로 구분된 개발방식은 우리의 주거문화와 생활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토지용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계획에 주목하면서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 경관 등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주택계획 역시 질보다는 양적 공급이 우선시되면서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양산하였고 단지를 폐쇄적으로 만들어 가로공간에서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와 건축을 통합하여 구현하는 '도시건축 통합계획' 필요

도시개발 측면에서 당연시 여겨져 왔던 '선 개발계획 후 건축계획' 방식이 낳은 제1기와 제2기 신도시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친절한 도시였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도시, 조경, 토목 등 분야별로 분화된 계획체계로는 도시공간과 생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우며[12], 사람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분화된 계획체계가 낳은 사회적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통합적 계획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통합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선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설계기법입니다. 기획단계부터 3차원 마스터플랜을

12) 서수정 외(2008), 「신도시 공간환경디자인 업무매뉴얼 작성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 한국토지공사, pp.5~6

수립하면, 이에 맞춘 아름답고 효율적인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의 모습과 경관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역경관을 존중하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 통합계획' 시범사업 추진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주택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앞으로 개발되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택지개발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도입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3차 발표(2019.5)'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5기 국건위의 활동

LH 사장 면담
2018.07.12.
도시공간과 건축의 통합적 계획
- 설계 절차 마련 필요

LH 사장 회의
2018.11.30.
도시건축통합계획 공모
3개 지구
시범사업 시행 결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 개편
2019.01.01.
6차 합동연석회의 (18.09.28.)에서
논의되었던 'AURI 도시설계연구팀
신설'요청 관련

LH 담당자회의
2019.01.11.
국가건축정책위원회-LH 간
공급일정 논의 및 사업추진체계
구축방안 검토

LH 워크숍
2019.02.26.
도시건축 통합계획 추진 관련
발제 및 토론

총리 면담
2019.03.13.
3기 신도시 계획체계 개편 논의

범정부협의체 도시건축통합설계관련 의견공유
2019.09.11.
입체적 계획 필요, LH에 '도시건축
통합설계 마스터플랜 공통지침서'
참조 요청

도시건축 통합계획 설계공모 발주
2019.11.12.~2020.02.28.
3개 시범지구 중 과천 과천지구
공모 발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도시건축통합계획 도입 노력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부, LH의 통합건축계획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획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눠 총괄협의회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방향 설정, 공모 전략, 지구계획 및 블록별 계획지침 수립
- 총괄자문조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내에 도시건축통합계획 총괄협의회를 구성하고 실행조직으로 '도시건축 통합계획단' 구성
- 도시건축 통합계획 마스터플랜의 공통지침은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를 개발목표로 ① 가로 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②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 도시 ③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④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의 개발방향 설정

도시건축 통합계획 마스터플랜 공통지침

개발 목표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			
개발 방향	가로 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 도시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추진 과제	① 슈퍼블록 지양, 중소규모 중심의 다양한 규모 블록계획 ② 중·저층 연도형 건축물로 위요된 휴먼스케일의 도시가로공간 ③ 건축물과 도시가로공간이 직접 접속-소통하는 생활공간구조 ④ 가로 중심 생활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시설	⑤ 거주·업무·여가의 용도복합 ⑥ 다양한 계층·세대가 융합하는 Social-Mix ⑦ 자족용지와 주거용지의 도시공간구조 연계 ⑧ 소규모 필지 도시조직의 적극 배려	⑨ 일상생활에서의 풍부한 녹지공간 접근체계 향상 및 향유도 증대	⑩ 새로운 도시 환경에 적합한 교통계획 (대중교통 중심, 첨단 신교통수단 활용, 친환경 이동수단 적용) ⑪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도시 관리시스템 (범죄·재해·교통에 안전하고, 육아·고령자 친화 도시 구현)

도시건축통합계획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 도시건축 통합계획·설계의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도시건축 통합마스터플랜 시범사업을 통한 개발계획 절차 개편방안 논의
- 도시건축 통합계획 도입 시 우려되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로 인한 행정절차 처리기간 지연 및 협의불가 등의 문제점은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필요
- 법적인 사항보다는 협의 과정 상 문제점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부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

LH 워크숍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구분	내용
일시	2019.2.26.(화). 14:00~16:00 / LH 회의실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3) : 박인석 위원, 이미영 사무관, 김지만 차장 / LH(24) : 공공주택본부 및 스마트도시본부 소속 관련 직원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한 도시·건축 통합계획

제6차 합동연석회의 2018.09.28.	• AURI 건축산업연구팀, 도시설계연구팀 신설 요청 예정
제8차 합동연석회의 2018.10.26.	• 도시·건축 통합설계절차 마련은 도시·건축의 통합적인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개선 위한 것
제9차 합동연석회의 2018.11.16.	•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담당부서 의견 수렴 / 통합마스터플랜의 법적절차 마련 방안 강구
제10차 합동연석회의 2018.11.30.	•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안 관련 보고 • 건축도시 통합설계 방식 계획절차 변경 방안에 대해 신규택지개발사업 약 3개소 대상 시범사업 실시
제12차 합동연석회의 2018.12.28.	• 연내 LH의 3개 신규 택지지구에 3차원 설계 시범사업 추진 결정
제13차 합동연석회의 2019.01.11.	• 국가적 차원에서 3기 신도시를 기존 관습을 탈피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국토부 조직과 브레인스토밍 필요
제16차 합동연석회의 2019.02.28.	•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방안 보고 • '19.3.까지 통합협의체 발족 및 시범지구 선정, 5월경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 및 조사설계용역 발주, 8월 도시건축통합계획 지구계획 추진
제18차 합동연석회의 2019.03.22.	• UCP역량 발휘 위해 새로운 방식의 참여 절차 도입 필요 / UCP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UCP, 신도시 포럼 등에서 통합설계에 대한 인식고유 및 공론화 필요
제30차 합동연석회의 2019.10.25.	• 도시건축 통합계획 추진 보고 • 전담조직 구성 및 도시건축 통합계획 유형별 개요 보고

도시·건축 통합계획 정착 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을 통한 '도시건축통합계획단' 신설 2020.01.01.

- 도시·건축 분리발주형은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先발주·공모하고, 당선된 마스터플랜 기반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지구계획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총괄협의회-도시건축통합계획단 간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본부의 하위조직으로 도시·건축 분리 발주형 시범사업지구 공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조직 '도시건축통합계획단' 신설

LH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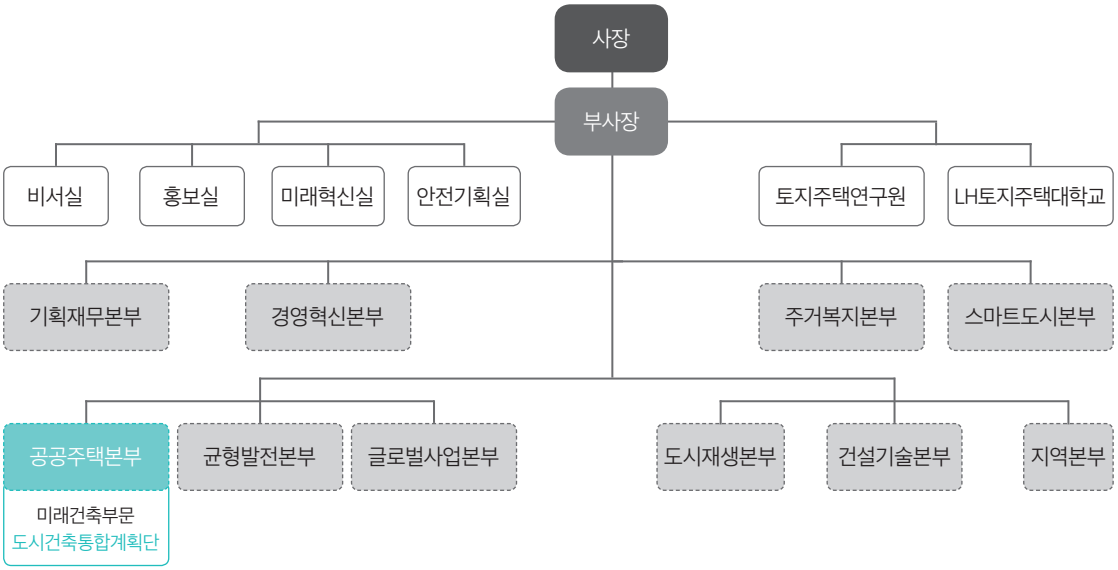

출처 : LH 홈페이지(https://www.lh.or.kr/contents/cont.do, 검색일 2020.6.22.)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행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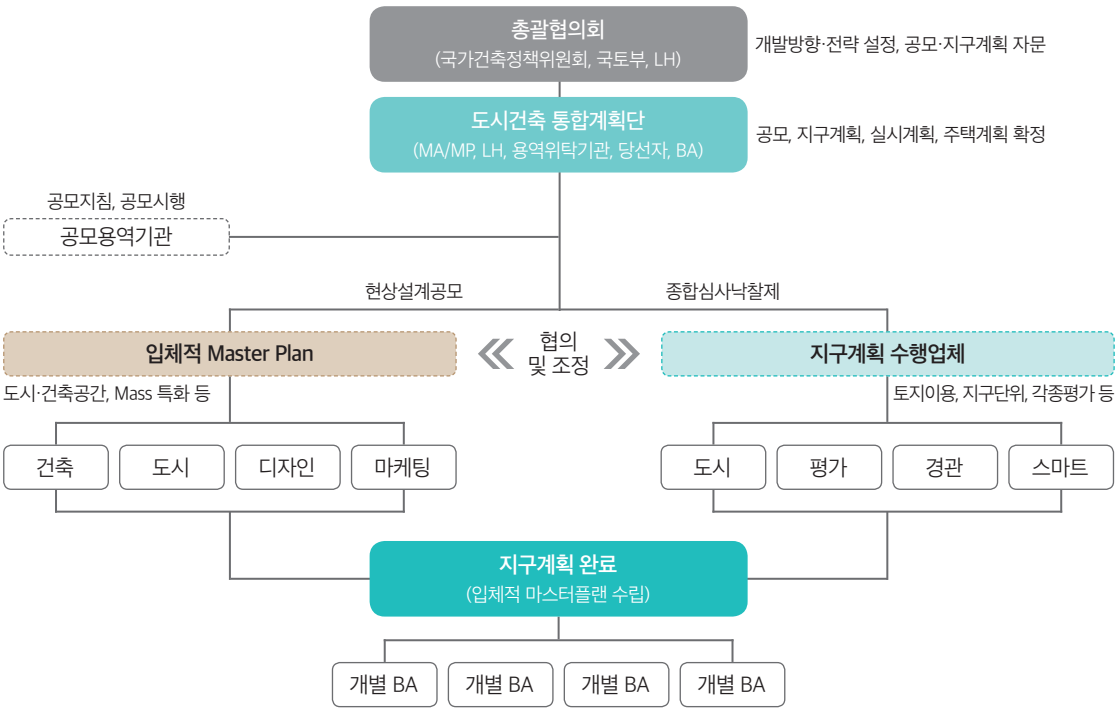

출처: LH(2019), "도시건축 통합계획 개요" 수행조직 그림 재구성

과천 과천지구 '도시건축 통합계획 설계공모' 2019.11. 공모 2020.03. 발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LH는 도시건축통합계획 공모 지구 중 도시·건축 분리 발주형으로 3개 시범지구(과천과천, 수원당수, 안산신갈)를 선정
- 과천 과천지구는 2019년 11월 공모하여 2020년 3월 발표하였으며, 추후 수원 당수, 안산 신갈구역 공모 예정

과천 과천지구 도시건축 통합계획 당선작(㈜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이랑과 고랑 컨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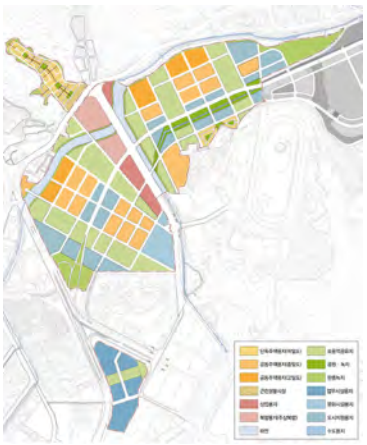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가로계획

주) 당선작은 도시에서의 이랑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삶과 일터 등 시설의 밀도가 채워지는 공간이며, 고랑은 도시 내부에서 자연과 자연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흐름과 머무름이 이어나는 공간으로서 교류와 커뮤니티의 장소를 제시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2020.03.10.), "LH,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수상작 선정"

‘도시건축 통합계획 설계공모’ 과천 과천 지구 개요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대상지 범위	
대지 면적	1,555,496㎡(47만 평) ※ 공모면적은 1,686,643㎡(도로, 하천 일부 포함)		
주택 호수	7,100호		
공모 내용	전체 공모 추진계획과 도시 컨셉 특화방향을 고려하여 경마공원대로 및 과천·봉담 고속화도로로 나누어진 중앙의 4개 대지를 묶어 A구역, 중앙로 북축을 B구역, 과천과학관 남측을 C구역 등 크게 대상지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진행		
비고	2019.11. 공모 / 2020.03. 발표		

출처 : LH 공모전 공식홈페이지(http://lhcompe.org/sub03/sub01.php, 검색일 2020.6.27.)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 개편 2019.01.01.

- 합동연석 6차(2018.09.28.)에서 논의되었던 ‘AURI 도시설계연구팀 신설’요청
- 2019년 1월 1일 개편 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

저출산·고령화, 범죄 증가 등 국가·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공간정책 분야의 해법을 모색하며 보행, 범죄예방 등 도시에서의 질적 문제에 대한 연구,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디자인 연구, 보행 관련 정책 및 평가체계 연구, 도시 내 인간적 척도공간의 구현방안 연구 등 도시·설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주요 연구분야]

-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사업
-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연구 및 사업
- 연령통합 및 취약계층친화 도시조성 방안 연구 및 사업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 [부서소개] (https://www.auri.re.kr/organization/research06.asp, 검색일 2020.5.24)

3-2.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
도시설계 제도 활성화

도시설계 제도 활성화 필요성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중재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13)]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의 도시설계 제도를 도시계획 체계로 흡수하고 통합한 것으로, 2차원적이고 거시적인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입체적으로 개별 건축물을 규율하는 건축계획을 매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타 도시계획이 해당 구역에 대한 건축행위를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도시단위방식, 분리규제방식의 일반계획인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규제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제에도 개입하며 건축행위 제한과 도시 기반시설의 확보 등 도시의 물리적 공간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세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14)]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2차원적 도시설계

현행 도시설계제도는 신도시 개발 시 수립되는 지구계획과 기성시가지의 관리를 위해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제도적 기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도서를 작성하여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2차원적인 도시계획으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위상과 관련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정비 기준, 건축규모의 완화적용, 결정 관련 세부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시하고 있지만, 장소성 구현이나 공간환경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이 미비하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14) 박태원 외(2020), 「지역특성 강화 및 입체적 공간환경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5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상 문제점 진단

구분	수립절차	현상 및 문제점
발주	예산 수립 및 공고	• 과업의 질적 수준이 아닌 단순 구연면적으로 용역비용 산정
	발주	• 가격 입찰 또는 PQ 제도로 제안서의 창의성 등 평가 부족 • 엔지니어링(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업체 위주 발주 • 건축사 참여 부족
	낙찰 및 계약	• 행정절차 이행을 중심으로 과업내용서 및 계약 체결
계획 수립	기초조사	• 토지, 건축물, 소유자 등 대장 중심의 물리적 조사 • 지역의 인문사회적 특성 조사 부재
	계획안 수립	• 공간구조 구상, 마스터플랜 등 입체적 계획 부족 • 수립 지침에 따라 형식적이고 획일적 지침 수립 • 담당 공무원과 계획수립자의 전문성 부족
	주민공람	• 주민들은 지역 환경의 질보다, 사업성 위주의 민원 제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현황이해도 부족 •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등 도시계획 중심의 심의
	결정 고시	• 고시문의 지나친 형식화로 수립내용 구체화의 한계
운영	건축계획 수립 및 허가신청	• 주민참여 부재,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건축계획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목적 고려 부족 • 건축과 도시를 함께 심의하는 전문가의 참여 부족 • 지침 준수 중심의 심의로, 형태 및 입면 등 입체계획에 대한 제한적 의견 반영
	건축허가 및 공사	• 용도, 간판, 입면 등 경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 부재

출처 : 박태원 외(2020), 「지역특성 강화 및 입체적 공간환경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45

도시설계제도 개선을 통한 입체적·통합적 공간계획 구현 필요

따라서 당초 도시설계가 목표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품질을 향상하고 입체적·통합적 공간계획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운용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공간환경 조성 및 공공공간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도시설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입체적·통합적 공간계획을 위한 개선 모델(안) 및 가이드라인(안) 마련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기 국건위의 활동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노력

- 도시설계활성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담당부서 의견 수렴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해외사례 고찰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내 도시재생 및 생활SOC 등 연계된 입체적 도시계획 도입 필요성 논의

[논의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부터 운영지침까지 전면적 개편 필요
- 현행 규정상 입체적 계획(건축물 형태, 배치 등) 수립을 제한하지 않으나, 운영 상 한계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차별 적용 검토
- 도시계획수립 시 건축사 참여 등 통해 지역적 특색, 입체적 계획 등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 제도 개선
- 신 개발지(LH사업) 및 기성시가지(생활형SOC사업 등) 개발 사업을 3D 도시설계 시범사업으로 추진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한 도시설계 제도

제7차 합동연석회의 2018.10.12.	• 국건위 정책과제(45개) 내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성화' 관련 추진사항 점검
제8차 합동연석회의 2018.10.26.	•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해외사례고찰 및 현황 검토 필요, 입체적 도시계획 도입 필요
제9차 합동연석회의 2018.11.16.	•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담당부서 의견 수렴 및 통합마스터플랜의 법적절차 마련 방안 강구
제17차 합동연석회의 2019.03.08.	•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통합 연계, 3차원적 입체적 공간설계 목표 구현 위해 건축·공공공간 디자인 품질 향상 위한 입체적, 통합적 공간계획 필요에 따라 과제 추진
제22차 합동연석회의 2019.05.24.	•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도시설계제도 활성화 사례 공유 및 '도시설계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추진계획 보고
제35차 합동연석회의 2020.2.28.	• 연구용역 추진현황 보고 • 총괄계획가(MP), 공모 방식 모두 도시설계 주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 부여가 중요 • 설계 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등 사용자 위주의 설계 필요 • 보편적인 해법보다는 중·소규모 지역도시 샘플 제시 필요

4

[건축문화]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로서의 건축

4-1. 건축·공간자산의 보전

근현대 주요 건축·도시공간 자산관리 체계화

4-2. 시민의 건축·도시 공감 확대와 아카이브 구축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4-3. 문화로서의 건축 진흥과 지원 확대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공감 확산

4-4. 학교에서 경험하는 좋은 공간

학교건축 혁신

4-1.

건축·공간자산의 보전

근현대 주요 건축·도시공간 자산관리 체계화

건축·도시공간의 현재적 가치 보전 필요성

미래 자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 대신, 부동산 수익 등이 우선되면서 파괴적 개발이 빈번

그간 역사문화자산 보존·관리 정책의 범위가 문화재에 한정되어 있어 근·현대 건축·도시 공간을 역사문화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최근에는 근·현대 유산 보전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나아졌으나 고도의 성장기를 지낸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역사문화 자산의 가치보다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와 시대의 정체성이 담긴 건축물 등에 대한 가치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자산이 될 만한 근·현대 건축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한 지 100여년 된 가우디(스페인), 르꼬르뷔지에(스위스, 프랑스), 루이스 바라간(멕시코) 등 근대건축가의 작품들을 잘 보존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경우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전 제주대 본관(김중업作,1995년 철거)



대전 구 연정국악원(2004년 철거)



카사 델 아구아(리고레타作, 2013년 철거)

출처 : (左) 제주신보(2013.10.3.), "사라져가는 근대 건축물들...당국 안일한 대응 문제" / (中) 연합뉴스(2011.10.10.), "대전 근대건축물 7년새 27채 사라져" / (右) 연합뉴스(2013.3.6.), "세계적 건축가 유작 '카사델아구아' 결국 철거"

근현대 역사문화자산의 현재적 가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4.6 제정)에서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건축자산은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문화재에 비해 적극적인 보전·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산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이며 이는 역사문화자산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 보전해야 할 사회적 산물이면서도 활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지역을 특색 있고 매력적인 경관을 가진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산입니다.



역사적 가치(정부서울청사)



사회문화적 가치(서소문아파트)



경관적 가치(감천문화마을)

출처 : 국토교통부(2016.3),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p.4

5기 국건위의 활동

근현대 건축·도시공간 자산관리 체계화 추진

우리 위원회는 '근현대 주요 건축·도시공간 자산관리 체계화'를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건축자산 및 도시설계 소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여 진행. 건축자산 소위원회는 먼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건축자산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 및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논의하였음

우리 위원회 초기에 설정한 '근현대 주요 건축·도시 공간 자산관리 체계화' 세부과제로는 '건축자산 관련 법체계 정비', '목록화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서 자산조사의무화', '전국 건축·도시공간 자산 체험 포털 구축', '우수건축물 지정 - 지원제도 시행' 등이 포함되었음. 그러나 이 중 '건축자산 관련 법체계 정비'는 장기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의한 건축자산 간의 통합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나머지 세부과제들은 합동연석회의 추진과제 점검 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폐지하거나 후속과제로 미루게 되었음

위원회 세부 추진과제와는 별개로 문경시가 우리 위원회에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한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산업유산인 쌍용양회 문경공장 도시재생에 대해 승효상 위원장과 안창모 위원이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쌍용양회 문경공장 전경



UNKRA산업유산의 국가산업유산 지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출처 : (左) 경북도청 / (右) 데일리대구경북뉴스(2018.11.5.), "문경시, UNKRA산업유산 국가산업유산 지정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합동연석회의에서 논한 건축·공간자산의 보전

제8차 합동연석회의 2018.10.26.	• 국토교통부 건축자산 관련 업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 추진현황(소위원회 결과) 공유 및 향후계획 논의
제10차/제11차 합동연석회의 2018.11.30. / 2018.12.14.	• 쌍용양회 문경공장 산업유산 도시재생 관련 보고 및 논의
제22차 합동연석회의 2019.05.10.	• 추진과제 중 '우수건축물 지정-지원제도 시행'은 지역개발사업 자산조사 의무화의 후속과제로 운영 • '전국 건축·도시공간 자산 체험 포털 구축'은 추진과제에서 제외

4-2.

시민의 건축·도시 공감 확대와 아카이브 구축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도시건축박물관의 필요성과 의미

도시건축 아카이브 건립 및 도시건축 전시의 구심점

도시건축 관련 자료는 그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도시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도시건축 수준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그간 양적 성장 및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근·현대 도시건축자산이 급속도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으며, 건축가 및 도시설계자의 기록 자료도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시건축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보관, 전시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 도시건축박물관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아카이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건축 관련 기록과 역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건축 전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카이브 자료가 여러 관리 주체에 의해 산발적으로 보관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도시건축 관련 전시·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도시건축의 정체성 확립과 질적 향상 기여

도시건축박물관은 기록 보존 및 전시 기능뿐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와 대중이 소통하는 공론의 장으로서도 역할도 담당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시건축 관련 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축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질적 성장은 충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세계 여러 나라는 국가 주도로 자국의 도시건축 문화와 기술을 홍보하고 국제교류 및 관광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건축박물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도시건축 담론을 형성하여 우리나라 도시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대한민국 도시건축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건축 만들기의 주체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도시와 건축은 일부 건축가, 도시설계가 등 전문가에 의해서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건축은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시건축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시민의 생각과 역량에 의해 만들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도시공간 및 건축에 대해 보통 이하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도시건축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공감하며 박물관이 도시건축 관련 체험과 소통 공간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시건축 박물관은 지역과 일상의 도시건축 문화를 기록·연구·전시하여 국민과 공유하는 소통 채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참여하여 좋은 도시건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강의실이자 실험실로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5기 국건위의 활동

도시건축박물관 건립현황 점검

- 제26차 합동연석회의('19.7.26.)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화박물관센터장으로부터 도시건축박물관 건립현황을 보고받고, 박물관의 비전,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시
- 제34차 합동연석회의('20.2.14.)에서는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 프로그램 구체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용역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음. 우리 위원회는 도시건축박물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상설전시 여부, 유물 부재 문제, 발주 방식 등을 논의할 것과 사업 초기부터 총괄건축가(행복청) 및 도시건축박물관 공공건축가(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

2020년도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예산안 편성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건축박물관 설계착수를 위한 기본 설계비의 50%인 8.5억 원 예산을 확보

도시건축박물관 공공건축가 위촉 2019.12.22

-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전숙희 위원을 중앙정부 최초 공공건축가로 위촉

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추진

- 2020년 2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관리용역을 발주하여 국제설계공모부터 최종 당선작 선정 과정까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추진 중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개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요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S-1 생활권 문화시설용지(S-1블록) 국립박물관단지 내
- 사업기간 : 2016년~2025년
- 규모(1구역) : 부지 17,174㎡, 연면적 17,050㎡(국립세종도서관의 80% 규모)
- 사업비 : 1,418억 원(설계·공사비(행복청) 1,202억 원, 전시·소장품 확보비(국토부) 216억 원)
- 주요기능 : 전시(상설·기획·야외), 자료 수집·관리, 연구·교육 등
- 향후계획 : ('20~'22) 기본·실시설계 → ('22~'24) 건립공사 → ('25/국토부) 박물관 개관(예정)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도시건축박물관

박물관단지 조감도



박물관단지 시설 개요

어린이박물관	통합시설(수장고, 운영센터)	도시건축박물관
• 건립목적 : 창의와 융합적인 사고배양을 통한 미래세대 인재 육성 • 총사업비 / 규모 : 330억 연면적 4,891㎡ • 담당부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건립목적 : 박물관단지 운영 및 관리 효율화 • 총사업비 / 규모 : 1,001억 연면적 24,913㎡ • 담당부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건립목적 : 국가건축산업 역량강화 • 총사업비 / 규모 : 949억 연면적 17,050㎡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naacc.go.kr/sub.do, 검색일 2020.5.24)

4-3.

문화로서의 건축 진흥과 지원 확대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공감 확산

문화로서의 건축 진흥의 필요성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의 중요성

건축·도시공간 환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공간이자 공공재로서 모든 시민을 위해 조성·이용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축·도시공간 환경을 우리 스스로 가꿀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일상 속 건축·도시공간 환경을 주도적으로 가꿀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좋은 건축과 도시를 가진 선진국일수록 일반 국민들이 건축·도시 관련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며, 일부 해외 선진국에서는 건축 교육 프로그램이 공공 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관의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고, 건축·도시 관련 전시 등 문화 행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건축문화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정책에서 소외된 건축

건축이 갖는 문화적 속성에 주목할 때 건축물과 건축가는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예술적 측면에서도 진흥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건축을 문화예술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육성하여 일류 관광 국이자 세계 건축 트렌드를 이끄는 국가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건축 분야는 각종 문화예술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고, 문화적 관점에서 홍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미흡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된 법률로는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은 국가 건축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진흥하려는 주된 대상과 정책수단은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건축문화'를 본격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구체적인 지원체계는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별도의 진흥법 제정 필요성이 건축계 내외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칭)「건축문화진흥법」 제정 추진은 건축문화를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진흥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로서의 건축 진흥을 위한 노력 필요

건축 정책은 이제까지 주로 산업이나 기술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총체적으로는 건축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이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가와 좋은 건축물을 발굴·양성·홍보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일반 국민들이 건축과 도시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할 문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5기 국건위의 활동

(가칭)「건축문화진흥법」 제정 검토

- 위원회가 출범한 2018년 5월 두 차례 합동연석회의에서 대통령 보고 안건 논의 중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칭)「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논의하였으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지는 않음

(가칭)대한민국 올해의 건축가상 신설 검토

- 한국건축을 이끌어나갈 대표적인 건축가 육성을 위해 최고 권위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신설을 기획하고 수차례 합동연석회의를 통해 상금 및 재원 마련, 운영방식 및 홍보 등 세부추진 방안 등을 검토
- 우리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우수 건축가 발굴·시상,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홍보 등에 관해 협의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부처협의체 추진과제(문체부)로 제시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않음

문화산업에 건축설계 산업 포함 추진

- 우리 위원회 추진과제 중 하나로 '문화예술정책의 건축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선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지원정책에서 건축분야 비중을 키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
- 이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에 건축설계 산업을 포함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건축가가 참여토록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영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칭)예술건축물 제도 추진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부처협의체 발족 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활 SOC 디자인 개선과 더불어 부처 과제 중 하나로 '(가칭)예술건축물' 제도 도입을 추진과제로 선정
- '(가칭)예술건축물'은 공공 문화시설 중 건축 디자인의 예술성을 높이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정하여,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설계비 법정요율(공사비의 4~5%)의 예외 인정 및 선진국 수준(공사비의 8% 내외)까지 적용을 법제화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않음

4-4.

학교에서 경험하는 좋은 공간
학교건축 혁신

학교공간, 왜 중요한가?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의 생활공간이자 지역의 중요한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학교시설의 중요성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활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 학생들의 인지사고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날 학생들을 위해 학교건축은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과 감성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밝고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대개 지역 중심에 위치하여 랜드마크로도 인식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공공건축 중 하나입니다. 좋은 학교건축은 도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생 외에도 많은 지역 사람들이 만나고 이용하게 되는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학교는 지역의 중요한 생활 SOC로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낮은 품질의 학교공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전체 초·중등학교 중 약 60%에 해당하는 약 40,000여동이 표준설계도에 의해 조성되는 등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다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학교건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건축은 공급자 중심의 설계로 획일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건축은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적정한 사업기간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조달청이 발표한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단위면적 당 공사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1,750천 원/㎡, 중고등학교는 1,783천 원/㎡으로 청사(2,171천 원/㎡)나 대학교(2,116천 원/㎡)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도소(교정시설) 공사비(1,946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제도와 사업추진 방식으로 인해 공간적 요구 변화와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교건축을 깊게 고민하고 이해하는 건축가가 참여할 틈이 없었습니다. 학교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공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좋은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유형별 면적당(㎡) 공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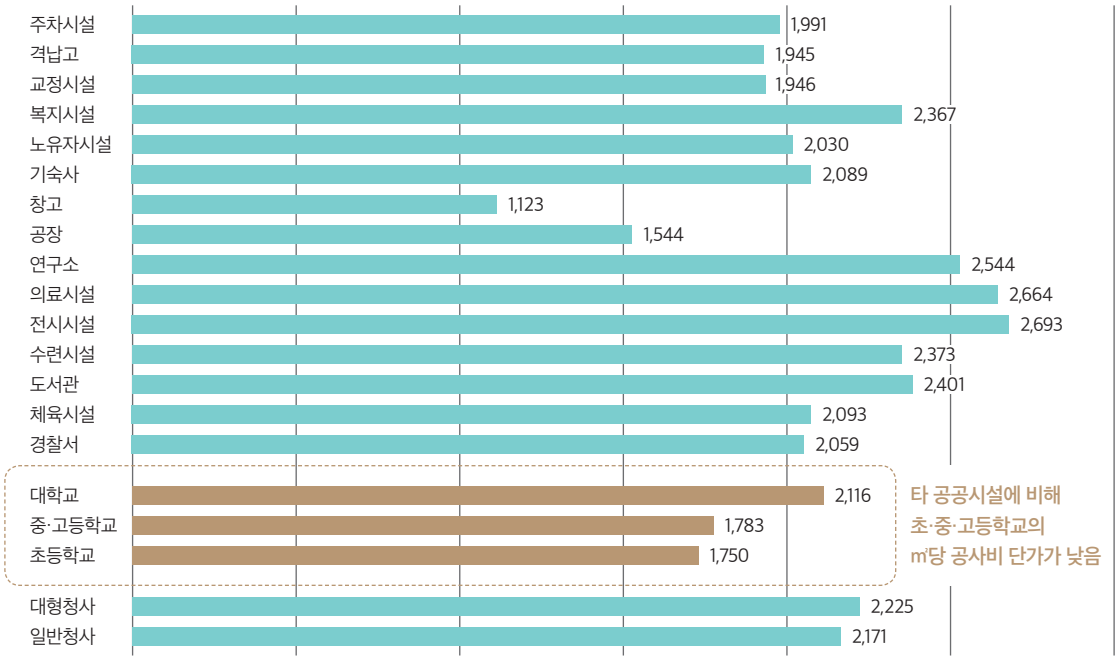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 조달청(2018),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결과 재구성

학교공간 개선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증대

최근 과거의 암기·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융합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공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모난 건물과 교실, 칠판을 바라보도록 가지런히 놓인 책상 배치, 일자형 복도와 텅빈 운동장에서 학생은 교육과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건축가가 "학교는 교도소"라고 할 정도로 현재의 학교 공간은 미래 교육의 지향점과 반대 방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공간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어진 학교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개축 및 리모델링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년 신·증축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 학교공간 디자인 개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19.1.9.)하고 우리 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하여 학교공간 혁신사업 등 학교건축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서 학교공간을 학생 성장 중심으로 디자인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꿈을 담은 교실만들기(꿈담교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학교건축 혁신방향과 맥을 같이 하여 올해 처음으로 민간전문가, 일명 '꿈담건축가'와 '학교건축가'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꿈담건축가'는 학교공간

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개별학교와 1:1 매칭하여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참여 설계와 디자인감리 등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건축가'는 증축으로 인한 교실 재배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유휴공간 활용 등 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시에도 교육공간 디자인 혁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학교에 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15)]

서울시 꿈담교실 사례



열린교실 공간의 재해석 - 면동초등학교 사례



재미를 위한 다양한 코너 - 용암초등학교 사례



집중 조명의 적용 - 이수초등학교의 예



재미를 위한 다양한 코너 - 금호초등학교 사례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가이드북」 p.13, p.33, p.39, p.40

15)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020.1.10.), "학교공간 디자인혁신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공개모집"

5기 국건위의 활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01.24. / 2019.04.18.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디자인 개선 논의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 자문**
2019.04.12. / 2019.05.01.
영역/학교단위 사업유형별
건축가 참여 프로세스 자문

서울시 교육청 회의
2018.11.28.
학교건축 혁신방안 관련 서울시
교육청 추진사례 공유 및 개선 논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2019.04.18.
"학교공간혁신사업"
디자인 개선 선도사업 선정

경기도 교육감 면담
2019.08.05.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제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2019.05.24.
학교공간혁신사업을
5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

**교육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및 자문**
2019.08.~2019.09.
신설예정인 2개 특수학교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및 자문

교육부장관 면담
2019.06.10.
3기 신도시 학교 입지계획 및
학교건축혁신방안 논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2019.04.18.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5개 부처 선도사업 중 하나로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선정하고 총괄기획가 도입 등 건축기획 의무화, 학교공간혁신촉진자에 의한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설계 촉진 계획 발표

교육부장관 및 지자체 교육감 면담

교육부장관 면담 : 2019.06.10.
경기도 교육감 면담 : 2019.08.05.

- 위원장-교육부장관 면담(2019.06.10.) : 학교공간혁신사업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지자체 협의 등 사업절차 선진화,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국건위 의견 전달 및 협력방안 논의

• 경기도 교육청 간담회(2019.08.05.) : 승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획단은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총괄기획가 제도 내실화, 설계 관리절차 개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가 발족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따른 선도사업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및 추진과정에서의 개선방안 논의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한 학교공간 혁신방안

제8차 합동연석회의 2018.10.26.	• 학교건축혁신 과제 추진을 위한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등 협조 필요성 논의
제9차 합동연석회의 2018.11.16.	• 학교건축설계 혁신을 위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학교건축을 타 공공건축물과 동등하게 지자체와 사전 협의토록 개선 / 현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를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 대체 / 교육청에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제시 / 노후화 교육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학교시설 업그레이드 정책을 생활SOC 차원의 국가정책 프로젝트로 추진 제안
제10차 합동연석회의 2018.11.30.	• 소위원회(서울시교육청 회의) 개최결과 공유 및 교육부 학교건축 혁신방안 논의 : 학교건축 시 잦은 설계(자재 등) 변경 문제, 학교건축에서 좋은 설계자 선정 절차 및 설계의도 구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개선을 위해 교육부장관 등 면담 추진 논의
제26차 합동연석회의 2019.07.26.	• 교육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건위가 시범사업을 선정하나 사업관리 절차에 국건위 참여방안이 부재한 사항에 대해 총괄건축가 및 국건위와의 협의 방안 논의
제27차 합동연석회의 2019.08.09.	• 범정부협의체 실무분과회의 개최 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경기도교육청 면담과 관련하여 기존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사업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학교공간 혁신 추진 / 예산, 교육부 기준 등의 한계로 인한 발주체계 혁신 어려움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

- 학교건축 등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을 위해 새로 제정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4.)에 디자인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하위법령 마련 시 총괄기획가 및 학교공간혁신촉진자의 활동,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용자 참여설계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예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디자인 관련 조항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준비한 학교공간혁신사업 디자인 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 가이드라인에는 총괄기획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 참여설계를 비롯한 공간혁신 추진 시 총괄 및 운영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시공자의 연결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교육과정이 공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 과정을 조정 및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 또한 교육부는 재정지원 체계도 개편하여 기존의 표준단가에 근거한 예산교부 → 설계 → 공사 방식에서, 사전기획 → 사업규모 확정 → 예산교부(실수요) → 설계 → 공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기획을 통한 적격성과 타당성을 확보

국립 부설 특수학교 2교,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우리 위원회는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립 부설 특수학교 2개교(공주대, 부산대) 건립사업을 「건축기본법」에 따른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장애인 교육환경의 선도적인 디자인 실현을 위해 설계공모방식 등에 관한 자문을 시행
-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2개소는 각각 공모방식을 차별화하여 공주대는 국제지명설계공모로, 부산대는 일반공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관리자(PA) 선정을 주문. 또한 당선작의 일관된 설계구현을 위해 시범사업 건축

디자인에 관한 조정·심의 등을 담당하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설치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도록 설계의도 구현 관련 용역 발주계획 수립을 권고

- 특히 공주대 특수학교에 적용되는 국제지명 설계공모는 학교건축에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2020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그래프턴 아키텍츠(grafton architects), 스티븐 홀(Steven Holl) 등 국외 저명한 건축가들과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팀을 이룬 5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6월 3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7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
- 부산대의 문화예술·체육 특수학교는 해당 부지(금정산)의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뒤늦게 합의점을 찾아 숲과 어우러진 학교건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학교공간혁신사업 사업추진 절차

단계	추진내용 (디자인 개선 관련사항)	추진주체 및 세부내용
사업선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 설계비 2.3억 이상 • 학교단위 사업 시 해당
참여설계 준비	학교공간혁신촉진자 지정	(교육청) • 학교단위 : 전문가(유경험자) / 영역단위 : 전문가, 교사, 건축사 등(유경험자) • 기술용역 형태의 계약체결
	참여설계 준비	(단위학교) •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사, 담당공무원 지원기관 교육 및 연수 • 공간교육 및 참여설계 기획(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 • 설계용역 지침 및 설계자 선정 방법 협의
	설계자 선정 발주	(교육청) • 사업특성에 따라 설계발주 방식 선택 • 학교단위 : 설계공모보다는 기술제안공모 / 영역단위 : 사업규모에 따라 번들링(bundling)
사용자 참여 설계	사용자참여설계 팀 구축	(단위학교) •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사, 설계자, 담당공무원 / 학교 공간혁신추진협의회
	사용자 참여 설계	• 사용자 참여설계(해당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 학생, 교육과정 내 실시 -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사 간 교육과정 적용 계획 실행 - 사용자 디자인 워크숍(학교공간혁신촉진자, 교사, 설계자, 담당 공무원, 학생, 공간게임 등 다양한 참여기법 적용) • 수업 및 워크숍 분석 및 종합-교사,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 사용자참여 과정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 사용 참여 공간요구분석 및 구체화 작업 • 기본계획 설계(설계자) • 지원기관 컨설팅 등 참여설계 지원

단계	추진내용 (디자인 개선 관련사항)	추진주체 및 세부내용
사용자 참여 설계	중간보고회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 디자인 방향 및 기본계획 보고 및 공유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학교단위) 등 대상
	기본 및 실시 설계	(설계자) • 설계도면, 재료, 견적
	최종보고회 설계도서 제출	(설계자 ⇒ 교육청)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학교단위) 등 대상 최종보고회 •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	업체 선정	• 교육청
	공사 시행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설계자 참여) • 디자인감리
	준공 검사	(담당 공무원, 학교공간혁신촉진자, 설계자 참여) • 시공 적정여부 및 설계의도 구현 여부 확인
사후관리	사후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참여) • 준공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용자 평가(참여수업 및 워크숍실시) • 참여설계 결과보고서(사용자 요구분석, 교육과정 운영, 공간모형, 사후 평가 등) 제출
	평가 및 홍보	• 교육청단위에서 평가실시 • 전국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례집 발간 • 교육부 공간혁신 경험 나눔의 장 마련, 우수 공무원 표창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9.3.26.), "학교공간혁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전문가 그룹 협력의 첫발걸음 내딛다", 절차 예시도 재구성

2부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소통과 협력

5 [정책기반]
국가 주요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 비중과 파급 확대

6 [정책공감]
건축정책 공감 확대

7 [위원회 사람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한 사람들

5

[정책기반]

국가 주요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 비중과 파급 확대

5-1. 공공건축 9대 핵심과제
대통령 보고대회

5-2. 범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5-3. 위원회의 정책 총괄·조정 역량 강화
범정부 공공건축협의체 구성·운영

5-4. 공공건축사업 실행과정 개선
공공건축 조성시스템 개편

5-5. 주요 공공건축 사업의 방향 설정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위원회 자문

5-6.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역량 제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독립연구기관 승격

5-1.

공공건축 9대 핵심과제
대통령 보고대회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구산동 도서관마을 방문

2018년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생활 SOC 현장인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우리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연설에서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만들어 낸 주민의 소중한 공공건축인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 SOC의 모범으로 주목하였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규모 토목 SOC에서 사람 중심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로 공공투자를 전환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

승효상 위원장은 이 행사에서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우리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이 지역 주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활 SOC 부국(富國)으로 가는 길'로 서울시와 영주시의 선도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좋은 동네 건축을 만들기 위해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

9대 핵심과제의 골자는 공공건축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한편 제대로 된 건축설계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임기 동안 공공건축에 대한 관련기관의 인식 제고와 각종 제도개선 등을 추진

①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동네 건축을 실현

②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능 강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 확대

③ **중요 건축·도시 사업계획에 대한 국건위 자문 시행**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요한 공공 건축·도시 사업계획에 대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기능을 강화

④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축소**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하고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풍토 조성

⑤ **주요 발주청(조달청, LH 등) 건축설계공모 절차 정상화**
공공기관의 건축설계공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등 절차 개선

⑥ **'설계의도 구현' 업무 의무화**
공공건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⑦ **공공건축 특화 규정 마련**
사업초기의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건축만의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 마련

⑧ **우수업체 등록제도 시행**
소규모 건축물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설계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 마련

⑨ **지역개발사업의 건축 프로세스 정상화**
통상적으로 사업계획 확정 후 설계단계가 생략되거나 건축설계가 하도급이 되면서 사업의 완성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 정상화 추진

추진 경위

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2018.05 ~ 2018.08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부터 대통령 보고회 전까지 네 차례 합동연석회의를 통해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건축정책 아젠다 발굴·추진을 위한 부문별 분과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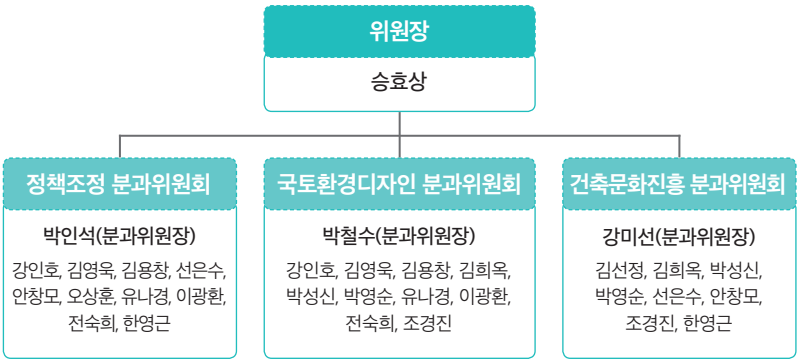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합동 워크숍 2018.07.19.~07.20.

서울 마포 라이즈 호텔에서 1박 2일 간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주요 건축정책 추진과제 발굴 및 대통령 보고대회 안건 준비 등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 진행











5-2.

범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범부처 협력의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

국무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책 발표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바꿔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4.18.),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입혀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총괄·공공건축가가 각 부서와 협업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 부여, 지원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활용 가능한 전문가풀 DB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공공건축물의 90%를 차지하는 소형건축물도 가격입찰 선정 방식을 축소하고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위해 조성계획 수립 - 건축기획 - 설계발주 - 건축허가 - 시공 단계별로 디자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해당 사업별 지침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디자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5개 부처사업 선정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자인 개선 선도사업

부처	사업명	추진사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문 등을 위한 공공건축가 참여 의무화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이행 및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유도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학교공간혁신촉진자를 두어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설계 촉진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위한 총괄기획가를 도입하여 '건축기획'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시·군·구 문화·체육·관광시설 전문공공건축가단 구성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지침에 디자인 개선절차 도입
농림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전 공공건축가 등의 자문 의무화
		커뮤니티 시설 건축물 설계용역 별도 발주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8대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공공건축가 제도 등 디자인 개선 업무기준 적용
		어촌·어항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뉴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적용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9.4.18.),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입혀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내용 재구성

추진 경위

위원장 총리주재 만찬 참석 2018.12.10.

우리 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총리주재 만찬에 참석하여 소규모 공공건축 설계용역 가격입찰 폐지, 학교건축 혁신, 생활 SOC 정책의 졸속추진 방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차(제66회) 2019.01.24.

일시 : '19.01.24.(목), 08:30~09:30

장소 : 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 ↔ 세종청사(1동 3층 영상회의실)

참석 : 국무총리(주재),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조달청·통계청·경찰청·행복도시건설청 청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

<주요내용>

-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등을 통한 공공건축사업 발주기관의 전문성 지원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무 강화, 설계용역 발주 시 가격입찰제도 폐지 및 설계공모 확대 등 좋은 설계자 선정
- 각종 지역개발 및 생활 SOC 사업 시행지침 등에「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반영·적용
- 각 부처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후 조정회의에 상정

합동연석회의를 통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검토 2019.01.28. ~ 2019.04.12

제14차 합동연석회의 2019.01.28.	•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각 부처 추진사업들에 대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등 기존 안건 뿐 아니라 3기 신도시에 관한 사항도 준비하기로 논의
제15차 합동연석회의 2019.02.08.	• 2차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준비를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조직 근거 마련 및 전문가 추천시스템 구축, 공공건축 사업 절차별 선진화 방안,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올해 공모하는 생활 SOC 사업에 디자인 개선 적용 방안 등을 논의
제16차 합동연석회의 2019.02.28.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관련 현장방문 및 부처 국과장급 워크숍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공공건축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등 2차 총리보고 안건 중 중요 사안에 대해 논의
제19차 합동연석회의 2019.04.12.	•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상정될 공공건축디자인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 진행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개선 관련 현장방문 2019.02.12.~02.1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지역개발 및 생활 SOC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국무총리-위원장 면담 2019.03.13.

승효상 위원장은 건축혁신 관련 총리 면담을 요청하여 3월 13일 광화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 조달체계 개편(건축물 설계용역 별도 발주), 건축 허가 시스템 선진화, 3기 신도시 계획체계 개편 등 건축혁신 방안을 건의하고, 각 부처 추진사업에 대해 총리실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차(제75회) 2019.04.18.

일시 : '19.04.18.(목), 08:30~09:30

장소 : 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 ↔ 세종청사(1동 3층 영상회의실)

참석 : 국무총리(주재),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조달청·통계청·소방청 청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주요내용>

- 국정현안점검회의 1차보고(1.24) 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 보완
-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 총괄·공공건축가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확산, 전문성이 낮은 발주기관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검토 등 지원정책 내실화
-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 : 건축기획 강화, 가격입찰 축소 및 설계공모 전면개편, 유사심의 통합 등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심의제도 혁신, 시공 단계에서 설계자 역할 명확화 등
- 부처 지역개발 및 생활 SOC 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 :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 3기 신도시 입체적 마스터플랜 수립 적용, 도시재생 등 5개 부처 시범사업 선정 및 성공사례 확산 추진





출처 : 국무조정실

5-3.

위원회의 정책 총괄·조정 역량 제고
범정부 공공건축협의체 구성·운영

범정부 공공건축 협의체 개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을 위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출범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18)에 상정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건축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주관 하에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12개 중앙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하였습니다.

범정부 협의체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고 부처별 개선방안을 이행·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범정부협의체와 실무지원을 담당하는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는 국건위 위원장과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별 실장급으로 구성하고, 실무분과위원회에는 관계 부처별 과장급 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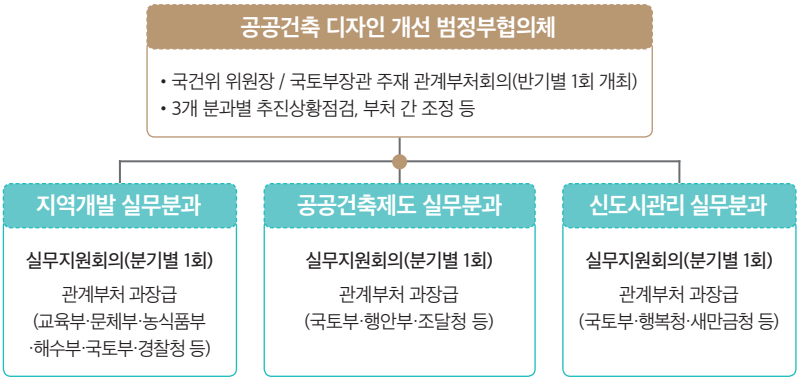



추진 경위

신도시관리 실무분과위원회 회의(1차)
2019.06.24.
3기 신도시 등에 도시건축통합설계 적용 논의

공공건축제도 실무분과위원회 회의(1차)
2019.07.26.
각 부처별 설계공모 지침 검토 및 당선자 수의시담 금지 등 논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2019.05.24.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행 및 향후계획 논의

지역개발 실무분과위원회 회의(1차)
2019.06.26.
부처별 디자인 개선 추진현황 발표 및 향후계획 논의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2차)
2019.11.29.
시범사업 추진성과 공유 및 향후계획 논의

합동 실무분과위원회 회의 (지역개발/공공건축제도)
2019.08.14.
지역개발사업 등 절차 개선 및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안 논의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 (3차)
2020.04.10.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 심의·확정

신도시관리 실무분과위원회 회의(2차)
2019.09.11.
세종시 스마트시티 추진사항 검토 및 토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2019.05.24

- 총괄·공공건축가 확산과 함께 법적의무 외에도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확대 등을 각 부처에 요청하고, 범정부협의체 운영방안 논의와 부처별 추진현황 발표 및 토론 진행





신도시관리 실무분과위원회 회의(1차) 2019.06.24

일시 : '19.06.24.(월), 14:00~16:00

장소 :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11층 회의실

참석 : 박인석·강인호·김영욱·한영근·이광환·박성신 위원, 기획단장 등 / 행복청 도시정책과장, 새만금청 사업총괄과장,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LH 공공주택기획처장·공공택지기획처장 등

• 3기 신도시(LH), 행복도시(행복청),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새만금청) 등에 대한도시건축통합설계 적용방안 논의

지역개발 실무분과위원회 회의(1차) 2019.06.26

일시 : '19.06.26.(수), 14:00~16:00

장소 : 서울 종로구 국건위 회의실

참석 : 박인석·강미선·한영근·김희옥 위원, 기획단장 / (부처 및 기관)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지역정책과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등

•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 SOC 복합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선도사업 등의 추진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공공건축제도 실무분과위원회 회의(1차) 2019.07.26

일시 : '19.07.26.(금), 14:00~16:00

장소 :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11층 회의실

참석 : 박인석·이광환·박영순 위원, 기획단장, 지원팀장 등 / (부처 및 기관)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행안부 회계제도과장, 조달청 건설용역과 사무관, LH 기술심사처 부장 등

• 행정안전부, 조달청, LH공사 등 각 기관별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원칙 통일, 수의시담 폐지 및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수의계약 허용 등에 관한 논의

합동 실무분과위원회 회의(지역개발/공공건축제도) 2019.08.14

일시 : '19.08.14.(수), 15:00~17:00

장소 : 서울 종로구 국건위 회의실

참석 : 박인석·박철수·강미선·박영순 위원, 기획단장 등 / (부처 및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 추진단 정책연구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전문위원, 국토부·기재부·교육부·농식품부·문체부·행안부·경찰청 사무관, 건도연 공공건축센터장

• 지역개발사업 등 절차 개선 및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안,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용기준 논의

신도시관리 실무분과위원회 회의(2차) 2019.09.11

일시 : '19.09.11.(금), 14:00~16:00

장소 : 서울 종로구 국건위 회의실

참석 : 박철수·강인호·박영순·이광환·유나경 위원 / (부처 및 기관) 세종총괄계획단 정재승 MP, 국토부 도시경제과장, 행복청 총괄기획가, LH 등

• 세종 국가시범도시 추진방향 및 마스터플랜 발표(정재승 MP)에 대한 도시건축통합설계 검토 등 위원회 의견 제시 및 토론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2차) 2019.11.29

•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시범사업 추진성과 공유 및 향후계획 논의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3차) 2020.04.10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 심의·확정

추진 성과[16]

지역개발 실무분과위원회 주요 성과

공공건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 공공건축가 확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직접 공공건축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5개 시범사업(교육시설디자인 개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문화체육분야 생활SOC사업)에 도입하도록 요청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9년 4월에 각 사업별로 공공건축가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그 결과 공공건축가 위촉 지역은 2019년 6월 32곳에서 2020년 2월 100곳으로 3배 이상 증가

교육부는 2019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교육시설디자인 전문가를 발굴·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초지자체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 건축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을 2020년 3월 개정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시 공간환경 코디네이터를 위촉하여 활용하도록 '어촌뉴딜사업 디자인 제고 및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2019년 12월에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설계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도록 20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에 반영

제도개선이 완료되면서 2020년부터는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추진되는 공공건축 사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 위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공공건축가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POOL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2020년 5월부터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공공건축 사업도 시작이 반이다 : 건축기획 강화

최근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강화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2018.12.18.)·시행(2019.12.19.) 됨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건축기획 업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 5개 시범사업에 적용할 것을 요청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9.4.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2020.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개정하여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전검토 하도록 의무화함. 생활SOC 생활체육시설 사업은 건축 디자인 향상계획 수립 시 공모 가점을 부여하도록 2019년 7월에 공모지침을 개정.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설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8대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 교육부는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시 사업 규모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기획이 선행되도록 관련 절차 개선을 검토 중

16)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2020.5.15.), "공공건축 범정부협의체 3차 전체회의 성과 및 과제" 발췌 재구성.

공공건축제도 실무분과위원회 주요 성과

가격이 아닌 품질로 설계안을 선정한다 : 설계공모 확대

설계공모 확산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라면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주대·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

아울러, 지역 단위 개발사업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가 기술용역의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지침과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을 2020년 3월 개정하여 지역개발사업 내 건축물 설계는 담당기관이 별도로 직접 발주하도록 개선

또한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 시 일반 실무경력 5년이 아닌, 건축설계 분야 경력 5년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하도록 심사위원 자격을 강화하였으며, 심사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설계의도를 끝까지 유지한다 : 건축허가·심의·시공 절차 개선

건축허가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지자체 조례로 운영 중인 건축심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로 건축심의 운영 시 사전에 적용지역과 심의 기준을 공고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

시공단계에서도 시공 용이성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에 대하여 시공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였고, 도시재생사업 공사 착수 시 설계자를 사업 추진 협의체에 포함시켜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신도시 실무분과위원회 주요 성과

도시와 건축은 하나다 : 도시건축통합계획 확대

그동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와 건축에 대한 계획이 각기 별도로 이루어지면서 슈퍼 블록 단위로 도시가 용도별로 구획되었고, 이에 맞춰 건축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시민들의 발길과 소통이 블록 단위로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도입하게 됨. 범정부협의체에서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새만금수변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적용하도록 요청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모든 신규 지구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특히, 과천과천·수원당수2·안산신길2지구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업하여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먼저 공모한 후 선정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토지이용·지구단위계획 등 통합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
2020년 3월에는 과천 과천지구에 대한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가 완료됐으며 이에 맞춰 통합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를 통해 주거·일·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 공간 중심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5-4.

공공건축사업 실행과정 개선

공공건축 조성시스템 개편

공공건축 제도개선에 따른 실행력 강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먼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설계지침서나 과업지시서 작성 등 공공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건축기획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이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으로 확대되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으로 설계공모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우리 위원회가 강조해 온 총괄·공공건축가 참여, 설계발주방식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개선에 발맞춘 발주기관의 공공건축사업 실행력 강화

위와 같은 일련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갔지만, 개별적인 공공건축 발주기관이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공공건축 발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달청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건축물을 다수 발주하는 공공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각 기관별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 제도개선 사항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경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1차)
2019.03.25.
공공건축 디자인 심사 강화 및 심사의 공정·투명성 제고

국건위 철도건축 혁신방안 자문(1차)
2019.06.21.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
2019.01.24.
국무총리, 조달청의 공공건축 발주 시 가격입찰 축소 주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국토부)
2019.05.01.
설계공모 대상 확대, 심사위원 사전공개 등

LH 건축설계 기술심사평가위원 선정
2020.01.~2020.03.
100명+30명(추가)

국건위 철도건축 혁신방안 자문(2차)
2019.08.09.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공공건축가 선정
2020.03.
190명 중 외부위원 148명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2차)
2019.12.17.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반영

추진 성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2019.3.25. / 2019.12.17.

조달청은 관련 제도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두 차례 개정함

우선 설계공모 의무대상 확대(추정가격 2억 원 → 1억 원)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향에 맞추어 디자인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모 확대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방안 도입 등을 추진하였음.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반영하면서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및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과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개정

- 1차 개정(2019.3.25., 시행 2019.5.15.) 주요내용 : 제출도서의 범위 규정 신설(제8조의2), 감점 기준 및 실격사유 신설(제13조의2, 제13조의3), 심사위원의 자격 강화(제16조), 설계공모 심사(용역비 20억 원 이상 등)에 옴부즈만 참관 신설(제19조의2), 수의계약 체결시 설계비 감액 금지 신설(제25조의2제4항) 등
- 2차 개정(2019.12.17., 시행 2020.1.1.) 주요내용 : 심사위원의 자격에서 공무원 등을 삭제하고 민간전문가 활용(제16조), 심사위원의 제척 기준 강화(제18조), 심사위원 중 수요기관 소속 임·직원 등의 심사위원 비율 제한(제19조) 등

철도건축 혁신방안 마련

철도건축을 주관하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건축 제도개선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각각 철도건축 설계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

- 한국철도공사 철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건축 업무는 유지보수로 설계발주 건수가 적었으나 증가하는 설계공모에 대비해 2020년 상반기 '제1기 한국철도공사 공공건축가' 130명을 선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건축 설계 품질향상 액션플랜 수립 : 총괄건축가 제도·건축기획 업무·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예정), 설계공모 방식·작품심사 개선·설계품질 향상 등을 위한 16개 추진과제 선정 및 시행 중

한국철도공사 철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통한 건축설계 프로세스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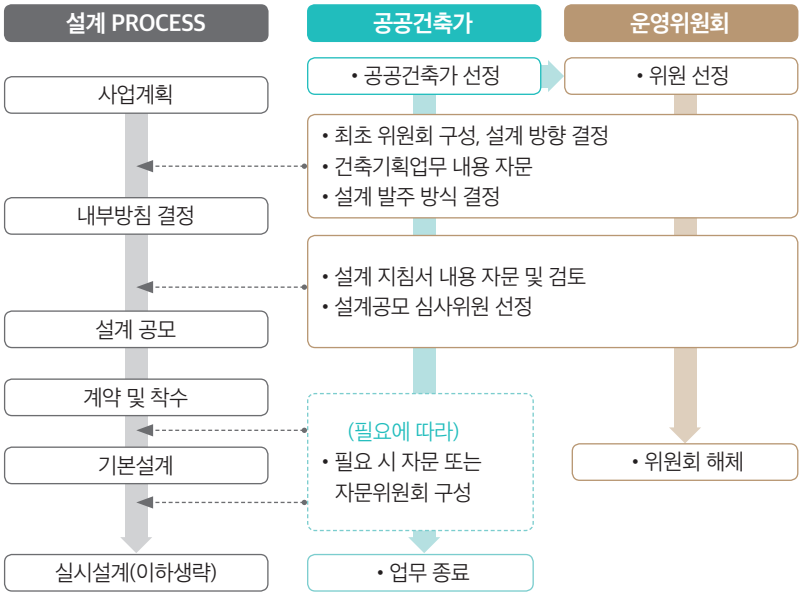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철도공사(2019.8.3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공모 제도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새로 시행하는 설계공모 지침 등에 반영하고, 기술심사평가위원(제12기, 2020년 3월) 선정 시 외부전문가 비율도 확대(건축설계공모 위원 총 190명 중 외부위원 148명)[17]

17) 한국토지주택공사(2020.05.20.), "제12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 명단 변경 공고" 참고.

5-5.

주요 공공건축 사업의 방향 설정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위원회 자문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위원회 자문역할 강화

국가 주요 공공사업의 품격 향상을 위한 국건위 심의·조정 기능 강화

국가의 주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프로젝트의 공공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가진 자문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 역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주요 프로젝트 자문 추진방안

우리 위원회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주요 프로젝트로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사업 중 위원회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원회 합동연석회의에서 자문하도록 해당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문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전문위원 2인이 위원들에게 먼저 사전검토 보고서를 송부하고, 자문대상 기관이 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문내용은 도시건축계획(부지의 적합성, 건축·공공환경 파급효과, 지역사회 연계 등) 및 디자인 관리방안(설계공모지침, 공모방식 등)으로 하고, 관련 절차는 위원회가 해당 자문대상 기관에 자문대상 결정 통보를 하고, 해당 기관이 자문요청 공문 및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자문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의 자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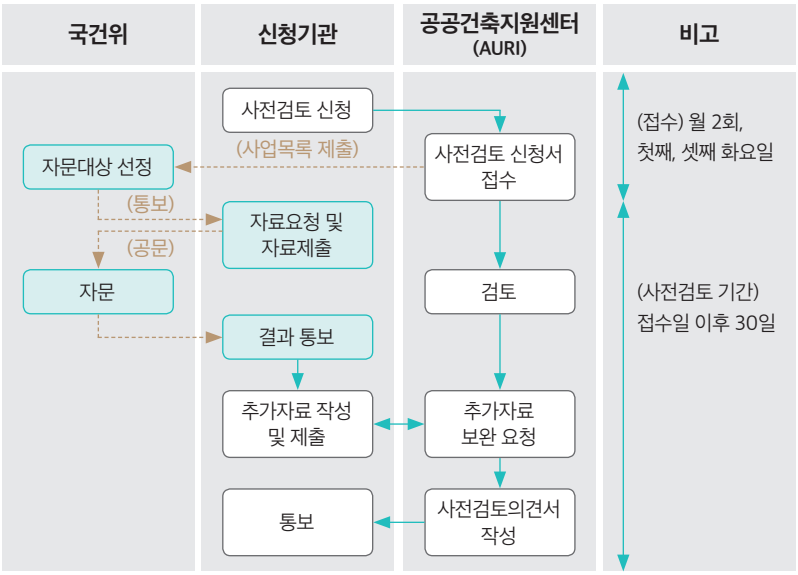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내부자료(2019.8.30) 재구성

추진경위

자문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민간 전문가 채용
2019.02.~2019.04.
기획단 내 전문가 2명 채용

자문 방침 검토 (합동연석회의)
2019.07.~2019.08.
자문 방침(안) 검토 및 논의

정부세종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결과에 대한 권고
2018.11.
(위원회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현안조정회의 안건에 포함
2019.04.18.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등 중요 공공사업 국건위 자문 실시

부산 북항 통합개발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자문
2019.08.~2019.10.
(위원회 → 해양수산부)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국건위 자문방침 수립
2019.08.30.
위원회 내부방침 결정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증축공사 자문
2019.12.~2020.04.
(위원회 → 인천국제공항공사)

캠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 (가칭) 한전공대 캠퍼스 자문
2019.08.~2019.11.
(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원회 자문 결과

위원회 자문대상 사업 개요

자문대상	개요	주요 이슈(자문의견)	조치결과
정부세종 신청사 (행정안전부)	• 연면적 134,488㎡ (지하 3층, 지상 15층) • 사업비 3,881억 원	당선작을 기존 청사의 설계 개념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도록 권고	반영 (민간전문가 7인 자문회의 구성)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해양수산부)	•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 • 7대 특화지구 개발	계획 수립 시 부산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고려와 인접 지역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부산시 총괄건축가를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수정 반영 (도시·건축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구성)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 (한국자산관리공사)	• 연면적 28,694㎡ (지하 2층/지상 9층) •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위치추적관제센터 업무시설과 민간임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사위원 선정 필요	향후 반영
		심사위원회에 문화재 전문가 포함	향후 반영
		건축 설계공모 지침 준수하여 심사체계 개편	수정 반영
(가칭)한전공대 캠퍼스 신축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가 에너지산업 미래인재 양성 교육기관 • 부지면적 384,083㎡/연면적 240,501㎡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사위원 선정 필요	향후 반영
		「건축 설계공모 지침」 준수하여 심사체계 개편	수정 반영
국립인천해양 박물관 건립사업 (해양수산부)	• 연면적 16,938㎡(4층) • 사업비 1,081억 원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지침을 검토하고, 역량 있는 심사위원 선정 필요	수정 반영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증축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2국제업무단지 개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준수하여 심사위원 선정	반영 예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사위원 선정 필요	반영 예정

5-6.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역량 제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독립연구기관 승격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의 독립연구기관 승격 필요성

건축·도시공간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 필요

건축과 도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리적 토대이며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의 원천이자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나은 건축·도시공간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도시공간 연구를 담당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설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 지원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공공건축 정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역할 및 위상 강화 필요

2007년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건축정책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 「건축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고, 우리나라 건축 및 도시설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연구센터와 지원기구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건설의 하위 분야로 쉽게 인식되는 건축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그 역할에 맞는 위상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중요 건축정책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건축·도시공간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독립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연구센터 현황

명칭	근거	목적	설치연도
국가한옥센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한옥문화 진흥의 싱크탱크로서 한옥 지식체계화를 위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산업지원에 앞장서며,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	2011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신 기후체제의 주요 아젠다에 따른 건축·도시분야 정책개발 연구 수행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한 정책지원사업 수행	2013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의 공공적인 가치 향상	2014
도시재생 지원기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지원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역량 기반구축	2014
스마트도시 서비스지원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지원, 건축·도시분야 정책 정보 및 빅데이터 수집 민 분석 수행	2019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부자료

우리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민간건축 시장 활성화, 건축문화 진흥 등 건축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발맞추어 2019년 4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축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심도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독립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의 독립연구기관 승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20년 4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법률 개정안이 재석 인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격

2007년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후 12년이 지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정책 지원 역할, 조직의 규모 및 안정화 정도를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국토연구원과의 연구분야 중복에 따른 갈등과 예산낭비 등을 고려하여 법안심의 과정에서 기관 명칭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수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설> 24. 건축공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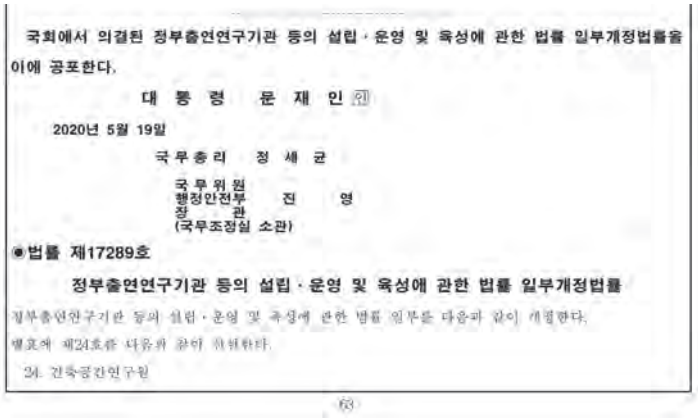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진 영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172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24. 건축공간연구원

<관보 제19753호(2020.5.19.)>

출처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 검색일 2020.7.10)





<제377회 국회(임시회)(2020.4.29.)>
출처 : 대한민국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http://w3.assembly.go.kr/, 검색일 2020.7.10.)

2020년 11월 초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 예정

이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공간연구원'은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재산, 권리, 의무와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 법 공포 후 6개월간 설립위원회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1월 중순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 예정

6

[정책공감]

건축정책 공감 확대

6-1. 국가와 함께하는 건축정책

정부부처 기관장 면담 & 정책포럼

6-2. 지역과 함께하는 건축정책

지자체장 면담 &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6-3.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정책

대국민 건축토론회 & 공공건축 컨퍼런스

6-4.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정책

건축 단체장 간담회 & 총괄건축가 간담회

6-5. 세계와 함께하는 건축정책

세계 총괄건축가 포럼

6-6. 언론과 함께하는 건축정책

토크쇼, 기자단 팸투어, 언론기사 등

6-7. 모두가 함께하는 건축정책

기획단 뉴스레터, SNS 등

6-1.

국가와 함께하는 건축정책

정부부처 기관장 면담 & 정책포럼

LH사장 면담 2018.01.12.

주요 면담내용

① 공공건축 혁신

- 대규모 및 국가 상징 프로젝트 등 중요 건축·도시사업을 대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사업계획에 대해 자문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추진
  ※ 500억 이상 사업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을 건축디자인시범사업으로 지정(건축기본법)하고 주요 단계별 자문 등을 지원
  ※ 공공건축물·가로·광장 등 다양한 시설사업이 지역 특성·여건에 맞게 계획·조율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지정·공공건축가 풀 확보
- 주요 공공건축 발주기관(조달청, LH, 지방공사 등)의 건축설계공모 시행절차 정상화
  ※ 내부 심사위원 참여비율, 심사위원 사전 공개 원칙 등을 준수
- 설계공모를 통한 용역 발주 시 공모 당시 공고한 설계용역비를 낙찰가액으로 규정, 추가 감액 없이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

② 도시건축 통합계획

- 도시공간계획과 건축설계의 통합적 계획-설계 절차 마련
  ※ 도시공간구조 + 건축 massing 개념 구상 → 건축 massing계획이 포함된 도시공간 마스터플랜 계획 → 토지이용계획 + 지구단위계획 → 부지별 건축설계 발주
  ※ 기존 : 도시공간구조 구상 → 토지이용계획 → 지구단위계획 → 부지별 건축설계
  ※ Master Architect가 건축 massing계획이 포함된 도시공간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 지구단위계획' 과정 리뷰 → 블록별 건축설계자들과 협력하여 '마스터플랜 - 개별건축설계 조율' 수행

③ 소규모 건축물 품질 개선

- 민간 신축 매입다가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계기준 마련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2018.08.10.

180810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8.08.10.(금) 19:00~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목적	공공건축 우수사례(서울시 등) 및 총괄·공공 건축가 제도 소개 후 지자체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안건	공공건축 기획기능 강화 및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

① 공공건축 기획단계 총괄 조정 기능 마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5년 단위 '국가 공공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쳐 예산 확정하는 체계 마련 필요
  * 공공건축물의 효율화와 품격향상을 위한 기본방향과 성과목표 설정 등
- (시행 방안)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공공건축물로 확대 시행
  ⇒ 기재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을 반영, 국토부 등 각 부처는 공용재산취득계획(안)을 수립*하여 기재부에 제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과 국유재산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 확정
  * 사업비·사업규모·입지 적정성, 신축·증개축·리모델링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지침' 및 '공용재산 취득계획(안)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 공용재산취득계획(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 개정

② 공공건축 기획단계 자문기능 강화 및 좋은 건축을 지향하는 발주제도 확립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및 조달청의 건축설계용역 발주 시 가격입찰 대상 축소(2.1억 미만→1억 미만)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 필요
  * 설계비 2.1억 이상→1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치원·주민센터·노유자 시설 등 주민과 밀접한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검토 대상에 포함
  ⇒ 기재부는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auri 및 조달청 등) 및 관련 예산 확대 등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사전검토 관련 규정을 개정
- 시공단계 설계자 참여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의무화
- 감리업무를 안전·설계도서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하는 「공사 감리(감독)」와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하는 「디자인감리」로 개편
  ⇒ 기재부는 설계의도 구현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토부는 설계대가 관련 규정을 개정
- 국토부는 우수 설계자 및 소규모 시공업체 DB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기재부는 공공건축 시공입찰 시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위상 제고

- 5기 위원회는 도시·건축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새로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단의 조직 및 예산을 1기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 조직은 출범 당시 1국 4개과에서 현재는 1개팀으로 축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기획단 예산에 대해 각별한 관심 부탁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2018.08.16.

- 공공건축 조달의 전체 과정을 효율화하고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재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 중요
- 국가 공공건축 수급관리 기본계획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립하여 사업 중복방지, 사업간 연계와 복합화 등을 통한 재정절감·효율화, 국민 생활공간 품격향상, 노후 건축물 성능향상 등 도모

- 건축설계용역 발주 시에 가격입찰 대신 설계경쟁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조달청의 행정체계 혁신과 예산·인력 보강 등 필요하고, 전국 세무서(국세청 발주)부터 발주방식 선진화로 공공건축 품격제고 선도
- 향후 기재부(국세청·조달청 포함)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부가 함께 공공건축 혁신 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 중 대국민 발표 희망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카운트파트가 될 기재부의 담당부서와 실·국장급 담당자 지정 요청

교육부 장관 및 지자체 교육감 면담

교육부 장관 면담 : 2019.06.10.

- 학교공간혁신사업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지자체 협의 등 사업절차 선진화,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위원회 의견 전달 및 협력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조조포럼 '메타시티'

2019.07.16.

190716 국토교통부 조조포럼 '메타시티'

구분	내용
일시	2019.07.16.(화) 09:00~10:40 / 삼경교육센터 7층
주제	'메가시티(Megacity)'가 아닌 '메타시티(Metacity)'를 향해
강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
참석	국토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이상, 산하기관* 처장급 이상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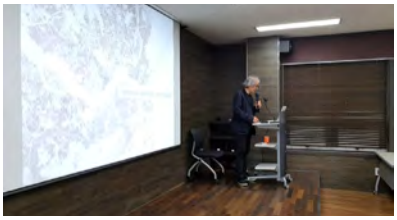





'메가시티(Megacity)'가 아닌 '메타시티(Metacity)'를 향해

"재생을 통한 기억의 보전, 연대를 통한 공유의 가치, 침술을 통한 부분의 자생, 점진적 과정과 생성은 메타시티를 구성하는 네 가지 주요 핵심어이다. 앞으로의 도시는 외적성장에 치중하는 메가시티가 아닌 내적 성찰에 기반한 메타시티가 되어야 한다. 주변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공동체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메타시티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이 '좋은 건축과 행복한 삶, 좋은 도시와 건강한 사회'를 향유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경찰청장 면담 2019.07.30.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우리나라 전국에 배치된 파출소는 지역공헌·시민소통공간으로 활용가능성이 크므로 획일적인 디자인 개선 필요
  ※ (총괄건축가) 경찰청사에 대한 정책·전략 자문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청 총괄건축가 위촉 건의
  ※ (설계관리 개선) 파출소 등 경찰청사 디자인 개선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활성화 강조

- (경찰청) 파출소 디자인 개선 필요성에 동감하고,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총괄건축가 위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금년 예정된 파출소 일부 사업에 설계공모 적용도 검토 지시

- (향후계획) 총괄건축가 위촉, 예산·조달 문제 등 경찰청 실무협의 추진(지속)
  ※ 경찰청에서 총괄건축가 위촉 형식(상임, 비상임), 설계 직접 발주를 위한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의 예정

190730 경찰청장 면담 개요

구분	내용
추진 배경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4.18.)에 상정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파출소를 비롯한 공공건축 혁신 추진
일시	2019.07.30.(화) 16:00~17:00 / 경찰청장 접견실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 박영순·유나경 위원 (기획단) 김상문 기획단장 (경찰청) 민갑룡 경찰청장, 김교태 기획조정관, 조병노 재정담당관
주요 내용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파출소 디자인 개선을 위해 총괄건축가 위촉 등을 제안하였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사진	  

경기도 교육감 면담 – 경기도 교육청 학교 혁신방안 논의 2019.08.05..

전국에 학교(유·초·중등) 수는 약 2.1만개(18년 기준)로 전체 공공건축물(약 21만 동)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한 공공건축물입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는 도시의 주요 구심점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커뮤니티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의 미공유 및 경계부 담장은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는 학교 신설 수요(45개교/년 신설 예정)가 많아 경기도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학교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총괄건축가가 참여하고 좋은 설계를 뽑는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건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총괄기획가 제도 내실화

- 기존의 학교건축 담당자는 과거 사례를 참고하거나 표준설계도서 등에 의존하는 공급자 중심의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교육청 총괄기획가 제도 도입을 통해 학교건축에 대한 정책·전략 수립 자문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국토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및 '민간전문가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 총괄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

  * 교육청 총괄기획가는 학교건축혁신추진단(단장 : 부교육감) 부단장 지위에 그치고 역할과 일하는 방식이 불투명 (서울시·영주시의 경우 총괄건축가에게 부시장급 권한 부여 및 별도 지원조직 마련)

② 설계관리 절차 개선

- **(사업계획 사전검토 활용)** 설계발주 전 사업계획서를 전문가(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auri)가 검토해 주는 사전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

  ※「건축서비스법」에 따라 현재 설계비 2.0억 원 이상시 사전검토 의무('20.1월부터는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 경기도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신청 건수('17~'18년)는 1건

- **(설계공모지침 준수)** 국토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여 좋은 설계(안)을 선정

  * 심사위원 전문가 비율은 70% 이상으로 하고 공고 시 심사위원 명단 사전 공개 등

  ※ '18년 경기도 사례 : 9명의 심사위원 중 건축계획·설계 전문가는 2명

- **(서울시 교육청 개선사례)** 총괄건축가가 설계공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유도할 수 있는 공모지침 마련

  * 설계공모 의무 대상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도 설계공모·간이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통해 품질로 설계를 채택할 것을 권장

• **(설계의도 구현)**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나 자재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설계자에 의한 확인제도 시행

190805 경기도교육감 면담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9.08.05.(월) 14:00 ~ 15:00 / 교육감 접견실
참석	(위원회) 승효상 위원장, 박인석·강미선·전숙희 위원 (기획단) 김상문 단장, 박기범 팀장 등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유대길 행정국장, 윤재철 비서실장, 현상봉 시설과장 등
주요 내용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및 디자인 품격 향상 등 학교건축 혁신방안을 논의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2019.10.0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관심 제고 및 문체부 소관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 노력 요청

(총괄건축가) 건축문화 정책에 대한 전략 자문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문체부 총괄건축가 위촉 건의

(올해의 건축가) 국립현대미술관 주관(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후원)으로 올해의 건축가를 선정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특별전시전 개최 요청
※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95년~)를 선정하여 특별전시 개최

(문화원 활용) 해외 각지의 문화원을 통한 국내 건축문화 홍보 필요

(문체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각종 보조금 사업 관련 지침에 반영했으며, 지자체 집행 시 준수하도록 독려할 계획

191008 문화체육관광부 면담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9.10.08.(화) 15:30~16:20 / 국립극단 제4회의실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 전숙희 위원 / (기획단) 김상문 기획단장 / (문체부) 박양우 장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10명
사진	 

6-2.

지역과 함께하는 건축정책

지자체장 면담 &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지자체장 면담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공건축은 공급자 위주의 부실 기획으로 디자인 품질이 열악하여 국민 및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국가건축 혁신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공공건축 혁신방안을 논의했고 공공건축 혁신방안에 관련한 위원회의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안건]

1. 중요 건축·도시사업에 대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 시행
2. 건축서비스법에 의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능 강화(대상 : 2.1억→1억 이상),
3. 지자체·공공기관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4.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배제,
5. 건축설계공모 시행절차 정상화(사업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부산광역시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2018.08.23.

-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건축사업에 대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및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통한 부산의 공공건축 혁신을 선도할 필요
- 향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 협의체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참여 요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제주도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2018.09.20.

- **(위원장)** 공공건축이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 획일적 디자인으로 인해 국민·지역사회와 유리되고 있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표방하는 제주가 공공건축혁신을 위해 앞장서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인 공공건축혁신협의체 구성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

- **(도지사)** 제주에서는 공공건축설계공모 기준 강화, 민간 건축전문가를 통한 주요건축정책 자문,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등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하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총괄건축가제도 도입 등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의식과 많은 고민을 갖고 예산,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움도 많이 요청하겠음

18092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제주도지사 면담

구분	내용
일시	2018.09.20.(목) 10:00 ~ 11:00 / 제주도청 백록홀
참석	(위원회) 위원장, 강미선 건축문화 분과위원장, 김희옥 위원, 박영순 위원, 선은수 위원 (기획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장 (제주도) 도지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김양훈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승원 건축지적과장
주요 내용	총괄건축가 제도 소개 및 지자체 공공건축 혁신방안 등 논의
사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울산광역시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2018.10.19.

- **(위원장)** 정책 및 자문기능을 하는 울산시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비전을 만들고, 비전에 대한 홍보, 교육이 필요함, 또한, 소신 있게 건축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시장)** 울산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겠으며, 필요시 부산시 등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겠음

181019 국가건축정책위원회-울산광역시장 면담

구분	내용
일시	2018.10.19.(금) 14:00 ~ 15:00 / 울산시청 시장 접견실
참석	(위원회) 위원장, 박인석·박영순 위원 / (기획단) 박승기 기획단장, 박기범 서기관, 홍일영 사무관 (울산시) 송철호 시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윤학순 건축주택과장, 공기석 국토교통협력관, 김대성 건축행정담당
주요 내용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등 공공건축 혁신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단장이 발표하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
사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인천광역시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2018.11.14.

- **(위원장)** 건축기본법의 국가건축위원회와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총괄건축가 도입 과정 및 운영 소개, 공공건축의 일관성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정책위원회와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요구
- **(위원)** 건축기본법에서 위상과 기능을 부여 받고 있는 건축정책위원회와 총괄건축가 우선 도입으로 공공건축을 보석처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일임 강조, 도시 정체성 관련 도시공간과 건축 결합이 가능함으로 인천 개항장시대 역사를 공간속에 투영시키고 근대 역사의 인문학적 지식과 건축을 일체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필요
- **(시장)** 건축정책위원장과 총괄건축가 겸임하는 인천에 있는 전문가 추천, 서울시 운영사례와 관련 공무원 및 인적자원 어려움에 따른 전문가 추천 요구

181114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인천광역시장 면담

구분	내용
일시	2018.11.14.(수) 10:00 ~ 11:00 / 인천시청 시장 접견실
참석	(위원회) 승효상 위원장, 박인석 정책조성 분과위원장, 안창모 위원 / (기획단) 박승기 단장, 박기범 서기관, 심일수 사무관 (인천시) : 박남춘 시장, 박찬훈 정책기획관,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 김정호 건축계획과장, 박원호 주거복지담당, 실무자
주요 내용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등 공공건축 혁신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단장이 발표하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
사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경상남도지사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2018.12.05.

- **(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과정 및 운영 소개를 통해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요구. 총괄·공공건축가의 자질이 중요하며, 부적격자 선정 시 많은 애로발생할 수 있음. 학교건축의 경우, 교육부 내부에서만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와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임. 경남도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음
- **(위원)** 공공건축가 풀 구성을 위한 적임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초기 기획단계에서 운영자 사용자 등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하여 많은 투입이 필요
- **(도지사)**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위하여 검토해 보니 전문인력 부족, 시스템 부재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음. 도시재생사업 실시해보니 지역에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경남에 공공건축가 선발 등 지원 요청할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자문과 지원 바람
- **(사회혁신보좌관)** 학교건축에 관심 많음. 학교건립계획 초기에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기획이 필요함. 지차체 차원에서 지사와 교육감 협의 필요

181205 국가건축정책위원회-경상남도지사 면담

구분	내용
일시	2018.12.05.(수) 11:00 ~ 12:10 / 경남도지사 집무실
참석	(위원회) 승효상(위원장), 강미선(건축문화진흥 분과위원장), 전숙희(위원) (기획단) 박승기(단장), 박기범 서기관, 박재복 사무관 (경남도) 김경수(도지사), 김명섭(정책특별보좌관), 윤난실(사회혁신보좌관),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신정민(건축과장), 이병곤 경관디자인담당, 공유아 주무관
주요 내용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등 공공건축 혁신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단장이 발표하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
사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전광역시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2018.12.07.

- **(위원장)** 공공건축물들은 행정의 기획력, 전문성, 일관성 부족으로 사업 발주시 용역에 치중, 선진국은 행정에서의 기획 능력이 탁월한데 우리나라도 전문인력과 기획능력을 키워야 함. 서울시는 도시공간개선단이 구성되어 내부 조직에서 기획단계부터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음. 대전시도 조례에 의한 법적기구를 두어 추진함이 필요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조례제정 필요
- **(시장)** 도시의 기능적인 업무 이외에 도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설계 디자이너가 필요. 현재 건설된 도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인력도 구상하면서 도시 재생측면에서 디자인 능력과 관련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갖는 관련 기구 필요성 인식. 고민이 많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길이 보이는 것 같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겠음

181207 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전광역시 면담

구분	내용
일시	2018.12.07.(금) 15:00 ~ 16:00 / 대전광역시장 접견실
참석	(위원회) 승효상(위원장), 박인석(위원), 박철수(위원), 강인호(위원) (기획단) 박승기(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장) (대전광역시) 허태정(시장),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김준열(주택정책과장)
주요 내용	총괄건축가 제도 소개 및 지자체 공공건축 혁신방안 등 논의
사진	 

총괄건축가 체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19.01.29.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지자체, 관계기관이 모여 총괄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
- 위원회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소개하고 그간의 제도운영 성과 및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총괄건축가 확산을 위한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논의

190129 총괄건축가 간담회

구분	내용
개요	총괄건축가 제도 소개, 지자체별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추진현황 점검 등 건축정책 관련 현안 사항 논의
일시	2019.01.29.(화)
참석	특·광역시·경남도·제주도·기초지자체·경찰청·행복청 국장 참여
주요 내용	총괄건축가 제도 소개 및 지자체별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추진현황 점검 등 건축정책 관련 현안 논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광주광역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등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2019.04.22.

- **(위원장)**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위촉을 하여 운영을 한다면 지원조직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른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 아울러 시장님과 총괄건축가 간의 정기적 만남도 필요
- **(시장)** 광주 충효마을을 재생(생태마을 등)하는 계획에 총괄건축가의 참여 필요

190422 국가건축정책위원회-광주광역시 면담

구분	내용
일시	2019.04.22.(월) 17:40~18:10 / 광주시장 접견실
참석	(위원회) 위원장, 김선정 위원, 박영순 위원 (기획단) 기획단장 및 혁신기획팀장, 최태훈 (광주시) 시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계획과장
주요 내용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사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구광역시 공공건축 혁신방안 논의 2020.01.15.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대구의 미래비전을 시민과 함께 모색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통합적인 도시건축정책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 공공건축의 혁신방안을 제안

총괄건축가제도 권역별 설명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제주권의 권역별로 개최했습니다. 공공건축 혁신의 주체인 지역 공무원과 건축사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소개하고 총괄건축가제도 확산을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 민간전문가 제도운영 가이드라인 및 총괄건축가 지원 사업안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해당 권역의 광역총괄건축가 발표를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 충청권 설명회 2019.11.01.





총괄건축가 제도 영남권 설명회 2019.11.15.





총괄건축가 제도 수도권 설명회 2019.11.29.





총괄건축가 제도 호남권 설명회 2019.12.06.





총괄건축가 제도 제주권 설명회 2019.12.20.





6-3.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정책

대국민 건축토론회 & 공공건축 컨퍼런스

「2018 대국민 건축토론회」

공공건축의 미래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동네건축의 혁신"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네 건축 혁신, 소규모 공공건축과 소규모 민간건축"을 주제로 한 박인석 교수의 발제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네건축"을 "좋은 동네건축"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개괄하는 한편 공공건축과 민간 소규모 건축(동네건축)의 개선에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81127 대국민 건축토론회

구분	내용
일시	2018.11.27. (화) / 국회의원회관
공동 주최	국토교통위원장(박순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주관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건축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주제	"동네 건축 혁신, 소규모 공공건축 + 소규모 민간건축"
토론	(발제자)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장 (토론자) 기노채 하우징쿱 협동조합 대표, 노영자 건축사사무소 엘아이엠 대표 건축사, 박성기 ㈜세이브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임정택 ㈜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장경순 조달청 차장 (좌장) 강미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사진	   

"2019 공공건축 컨퍼런스 – 공공건축이 말하다"

공공건축 혁신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성과와 향후 국가건축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9 공공건축 컨퍼런스 - 공공건축이 말하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세션1] 범정부협의체 그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공공건축 시범사업 우수사례의 지속·활성화 방안 논의

참석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주관), 범정부협의체 참여부처, AURI, LH 등

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별 추진성과

-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 (추진성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19.10월 제정)」에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법적근거 마련,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교육부) 총괄기획가, (교육청) 총괄기획가, (학교) 학교공간혁신 촉진자

- 국제설계공모 추진(공주대 특성화고·부산대 문화예술체육학교), 사용자 참여형 설계 워크숍 운영(용인고) 등 디자인 개선 우수사례 제시

- (향후계획) 총괄기획가 및 촉진자의 세부활동, 사용자 참여설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시설유지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0.6월)

- 문체부 문화체육분야 생활SOC사업

- (추진성과)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시 가점 부여 등을 위해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19.6월)', '국민체육센터 공모지침('19.7월)' 개정

• 특히,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충남도 총괄건축가가 참여하여 디자인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설계의도 구현을 의무화

• (향후계획) 디자인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관리 철저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 (추진성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내 공공건축가 의무화, 사업계획 사전검토 명시('19.4월)

• 공공건축가 참여형, 건축자산 및 경관특화형, 생활SOC 디자인 개선형, 주민참여프로그램 활용형 등 유형별 우수사례 제시

• (향후계획) 지역거점시설과 혁신지구에 대해 디자인 특화를 추진하고, 자율주택정비 등 민간부문에도 건축 디자인 개선 확산 노력

- 해수부 어촌뉴딜300선도사업

• (추진성과) 8개 선도사업을 선정,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총괄/공공건축가 의무화, 설계공모 확대, 설계의도 구현 현실화, 지역개발사업 내 공공건축사업 분리발주 의무화 등

• (향후계획)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19.12월), 광역별 건축디자인 선도사업 1개소씩 선정하여 성공사례 확대('20년)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추진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중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19년 4개소, '20년 16개소)

• (향후계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의도 구현, 공공건축사업 분리발주 등 적용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지침' 개정('19.12월)

② 토론 주요내용

• (행안부) 「지방계약법」상 설계공모 당선자 수의시담 금지 규정을 마련토록 노력하고, 접경지역개발사업에도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 검토

• (분과위원장) 3기 신도시 시범지구 외에도 도시건축통합설계가 적용되도록 하고, 3기 신도시 내 학교 신축사업과도 연계 필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원장)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과정에서 각 부처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정책 변화 필요

[세션2] 공공건축특별법 토론회 : 공공건축을 논하다

참석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광환·강인호 위원, 국토부 김태경 건축문화경관과장,
중앙대 전영훈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유준호 법제위원장,
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 AURI 염철호 박사 등 100여명

① 공공건축특별법안 주요내용 소개

제정배경

- 공공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공재로 국가 재정 및 전체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
- 공공건축 조성체계가 부처별·유형별로 분산됨에 따라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을 통한 절차 일원화 필요

주요내용

-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특별법 내 사업절차를 준수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기본계획 시행
- 공공건축 정책 자문을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에 대한 세부절차 및 특례 규정

② 토론회 주요내용

중앙대학교 전영훈 교수

- 「건축서비스법」 제정 이후 설계공모 등 초기단계는 건축에 맞게 개선됐으나, 이후 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운영
- 공공건축 사업절차 전반이 건축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위해 건축계가 현명하게 대응 필요

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

- 공공건축 사업의 경직성 회피, 조직간 갈등 조정, 기존 규제 특례 부여 등을 위해서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추진 필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강제규정 실효성 여부,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 특례 과잉 여부 등 세부조항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 필요

대한건축사협회 유준호 법제위원장

- 총괄·공공건축가는 해당지역 이해도가 높은 건축사를 활용하고, 특별법 사업절차는 「건축사법」절차에도 부합할 필요

• 새로이 도입되는 공공건축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신진건축가 제한 설계공모 대신 근본적인 육성방안 검토 필요

김태경 건축문화경관과장

• 동법이 건축사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외부 시선이 많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건축계 협조 필요

• 발의에 앞서 건축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회 법안심사 및 하위법령 제정 시에도 지속 의견수렴 예정

③ 질의응답

•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공건축 자산관리계획의 실효성 여부

⇒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향후 시행과정에서 보완 검토

• 총괄·공공건축가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책임 강화 필요

⇒ 총괄·공공건축가는 건축설계가 아닌 설계공모지침 작성 등 사업 초기 행정절차를 담당하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

2019 공공건축 컨퍼런스

구분	내용
일시	• 전시회 : 2019.11.29.(금, 개막식)~2019.12.06.(금)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 • 세미나 : 2019.11.29.(금)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아카이브
주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범정부협의체 참여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경찰청
후원	•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션1 공공건축 범정부협의체 : 성과와 과제	• 범정부협의체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공공건축 시범사업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논의 * 국토부(도시재생뉴딜), 교육부(학교공간혁신사업), 농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분야 생활 SOC사업), 해수부(어촌뉴딜300) 사례발표 •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국조실·기재부·행안부·국토부·교육부·농식품부·해수부·문체부·행복청·새만금청·조달청·경찰청 실·국장, LH 등
세션2 공공건축특별법 토론회 : 공공건축을 논하다	•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세부내용 논의 •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AURI 염철호 박사, 법제연 김종천 박사, 중앙대 전영훈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 등(이상 패널), 학회·지자체 공무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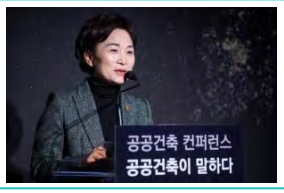





6-4.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정책

건축단체장 간담회 & 총괄건축가 간담회

제1차 건축단체장 간담회 2018.05.11.

-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건축 관련 7단체장*

  * 대한건축학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한국건축가협회장,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새건축사협의회장, 대형설계사협의회장, 서울포럼 상임이사

- **(주요내용)**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들과 건축단체장들이 협회 교육제도 및 건축사 시험 제도 개선, 건축 관련 행사 통합운영, 건축 단체별 역할 분담, 건축 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의 사항 제안



총괄건축가 간담회 2019.05.29.

-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전현직 지자체 총괄건축가*

  *서울, 부산, 광주, 경북, 인천서구, 영주, 진주, 부여, 당진, 행복청

- **(주요내용)** 총괄건축가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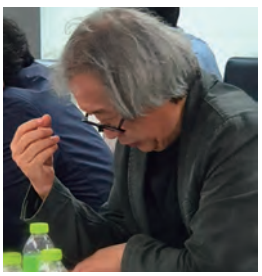





광역지자체 총괄건축가 간담회 2019.09.27.



6-5.

세계와 함께하는 건축정책
세계 총괄건축가 포럼

'2019 세계 총괄건축가포럼'은 2017년 제1회 세계총괄건축가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세계 도시의 총괄건축가들이 모여 도시와 건축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도시간의 지속적 정책교류를 위한 총괄건축가 협의체의 구성을 논의하였고 포럼에서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벨기에 브뤼셀, 콜롬비아 메데인, 호주 시드니, 태국 방콕 등 세계 전역의 총괄건축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도시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승효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시 1대), 김영준(서울시 2대), 김승회(현 서울시), 신춘규(세종행복도시), 최삼영(진주), 신승수(영주시), 제해성(충청남도), 하태석(인천서구), 차주영(당진), 박기범(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과장),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 단장), Chrisotopher Hawthorne(로스앤젤레스), Kristiaan Borrett(브뤼셀), Banasopit Mekvichai(방콕), Sebastiá Mejía(메데인)의 총괄건축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구분	내용
일시	2019.09.06.(금) ~ 09.07.(토)
장소	서울 도시건축전시관(B2 서울 아카이브)
목적	• 오늘날 도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건축적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총괄건축가 제도의 역할을 조명하고 실제 다양한 해외 도시 선례들을 공유하고자 함 • 2017년 개최된 총괄건축가 포럼에 이어 2회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국내외 총괄건축가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구축하고자 함



세션1 : '도시의 건축적 전략'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총괄건축가가 현재 각 도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건축적 전략들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각 도시정부와의 협력방법과 총괄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세계총괄건축가포럼 세션1 '도시의 건축적 전략'

구분	내용	발표자	소속
1	"서울, 성좌의 도시"	김승회	서울시 총괄건축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림보 : 교외 이후의 로스엔젤레스를 향하여"	크리스토퍼 호손	로스엔젤레스 총괄건축가, 옥시덴탈 칼리지 교수
3	"더 좋은 브뤼셀 만들기"	크리스티안 보렛	브뤼셀 총괄건축가, 겐트 대학 도시 디자인 교수
4	"메데인 : 환경어바니즘, 사회, 교육과 문화"	알레한드로 레스트레포 몬토야	메데인 총괄건축가, 폰티샤대학 건축과 교수
5	"3개 도시들의 메트로폴리스"	피터 풀렛	시드니 총괄건축가, 웨스턴 시드니 대학 교수
6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도전"	바나소핏 메크비차이	방콕 총괄건축가, 철랄롱코른대학교 도시설계학과 책임자

세션2 : '도시혁신을 위한 건축의 역할'

두 번째 세션은 '도시혁신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주제로 총괄건축과들과 국내 연구자, 건축사들의 토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총괄건축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할과 대표성을 정의하고 한정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의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례에 대한 문제공유, 즉, 각 도시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른 도시의 성공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하였으며, 이에 세계 각 도시 총괄건축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의 정례화 등 지속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에는 Vicent Guallart(전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 박기범(국가건축정책위원회 팀장), 신승수(영주시 총괄건축가), 심경미(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석연(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6-6.

언론과 함께하는 건축정책

토크쇼, 기자단 팸투어, 언론기사

토크쇼 "승효상에게 한국 건축을 묻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과 위원들은 1월 28일 오후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승효상에게 한국 건축을 묻다'를 주제로 각종 건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승효상 위원장은 건축 현안에 대한 모두 발언 후 진행자인 전진삼 와이드 AR 발행인과 최근 건축계 이슈 등에 대해 일대일 토크쇼 방식으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토크쇼 "승효상에게 한국 건축을 묻다"

구분	내용
일시	2019.01.28.(월) 14:00~15:30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D동 1층
주관	(사)서울건축포럼
주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사)서울건축포럼
진행	전진삼 와이드 AR 발행인
참석	국토부 및 서울시 출입기자(건축, 문화, 경제분야 등), 건축 5단체 임원 및 회원, 중견 및 젊은 건축가 등, 관련 공무원, 일반인 등
사진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기자단 팸투어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요 정책방향 및 추진성과에 대한 언론 홍보 강화 목적으로 기자단 팸투어를 개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총괄건축가제도, 공공건축특별법, 스마트 시티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하였으며, 이슈가 되고있는 광화문광장, 재개발, 선분양 폐지, 집값 상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부는 함께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내부를 투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기자단 팸투어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배경</td><td>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요 정책방향 및 추진성과에 대한 언론 홍보 강화 필요</td></tr>
<tr><td>일시</td><td>2019.07.30.(화) 11:00~13:30 / 서울도시건축전시관</td></tr>
<tr><td>주관</td><td>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td></tr>
<tr><td>참석</td><td>(언론) 국토부 출입기자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 박철수 분과위원장, 김영욱 위원, 김상문 기획단장 등 (국토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진현환 대변인, 홍보실 담당자 등</td></tr>
<tr><td>세부 일정</td><td>
<table>
<tr><th>구분</th><th>소요</th><th>주요 일정</th><th>비 고</th></tr>
<tr><td>~11:00</td><td>-</td><td>집결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아카이브(지하 2층)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세종→서울 버스 운행(09:00~11:00)</td><td></td></tr>
<tr><td>11:00~11:10</td><td>10’</td><td>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 인사말씀(위원회 주요 정책방향 등 소개)</td><td>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td></tr>
<tr><td>11:10~11:40</td><td>30’</td><td>국가 건축정책 관련 질의응답</td><td>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td></tr>
<tr><td>11:40~11:50</td><td>10’</td><td>서울도시건축전시관 소개</td><td>조경찬 건축가</td></tr>
<tr><td>11:50~12:00</td><td>10’</td><td>서울도시건축전시관 내부 투어(서울도시건축의 과거·현재·미래)</td><td>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td></tr>
<tr><td>12:00~12:05</td><td>5’</td><td>이동 및 착석(전시관→오찬장, 도보 1분)</td><td></td></tr>
<tr><td>12:05~13:30</td><td>75’</td><td>오찬(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전시관에서 100m)</td><td></td></tr>
<tr><td>13:30~</td><td>-</td><td>해산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서울→세종 버스 운행(13:30~15:30)</td><td></td></tr>
</table>
</td></tr>
<tr><td>사진</td><td>

</td></tr>
</table>

보도자료

그동안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련 분야 관계자들에게만 인지되어 왔다면, 제5기 위원회는 다양한 언론의 관심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건의 보도자료 배포(국토교통부) 및 200여 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기수 위원회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순환하며 개최했던 지방자치단체장 면담 및 총괄건축가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지역 언론에서도 활발히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해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현황

일시	제목	비고
2018.06.11.	기후변화에 대응할 우수 녹색건축을 찾습니다.	보도자료
2018.10.04.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동네건축부터 확 바꾼다	
2018.10.16.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열쇠…녹색건축을 아시나요?	
2018.11.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2019.01.03.	새해부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수의시담이 금지됩니다	
2019.04.18.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입혀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2019.04.28.	주민센터 등 생활SOC 디자인이 개선됩니다.	
2019.05.23.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았다!	
2019.06.09.	100여명의 전문가들과 신규택지 개발구상 수립	
2019.07.02.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옥을 찾아주세요	
2019.07.03.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2019.07.14.	도시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에 3D 계획 적용	
2019.09.25.	미래 건축을 향한 비전은 “국민과 함께 가는 건축”	
2019.10.28.	좋은 삶 만드는 우리 동네 건축물, 함께 만들어요	
2019.11.28.	公共건축이 말하다! - 29일부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 “2019 공공건축 컨퍼런스”	
2020.04.09.	새로운 공간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2020.04.20.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임기 종료	

위원장 인터뷰 및 언론보도

위원회와 건축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애썼던 기획단 직원들의 노고와 더불어,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다양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소견을 밝힘과 동시에 인허가제도 혁신, 3기 신도시계획, 총괄·공공건축가제도 확산 등 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 편에서는 위원회 합동연석회의의 장관 출석률을 놓고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이슈를 보도한 언론사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족 이후 11년간 정부위원 출석률이 '0'임을 강조하며, 정책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불참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왔습니다. 정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 협력하는 주요과제에 민간 위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범정부 협의체 발족, 타 정부부처 공공건축사업 자문 등 소속부서를 넘나드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 만큼 각 부처의 정부위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6-7.

모두가 함께하는 건축정책

기획단 뉴스레터, SNS 등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9년 8월을 시작으로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건축·도시공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 관계자 및 일반국민에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활동 및 건축정책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사내용을 면밀히 다루는 '현장기사', 특집 인터뷰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기획기사',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법률과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기사', '위원회 소식', '건축정책동향' 등이며, 뉴스레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페이스북 카드뉴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블로그



블로그 이벤트 《어려운 건축용어 따라잡기》



7

[위원회 사람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한 사람들

7-1.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7-2.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7-3.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7-4.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7-1.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도시·조경·문화 등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학교수가 10명,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9명으로 학계와 업계 인사가 균형 있게 위촉되어 2년 간 대한민국의 건축정책 진흥을 위해 힘썼습니다.





[위원회 사람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한 사람들

위원장

구분	성명	사진	소속	주요경력
위원장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석좌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객원교수 • 서울시 총괄건축가(초대)

위원

구분	성명	사진	소속	주요경력
위원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 • 이대서울병원 건축본부장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위원 • 한국도시재생학회 이사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선정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2018 광주비엔날레 총괄큐레이터 • 2018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예술감독 • 前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교수 • 前 아트선재센터 관장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도시정책자문단 • 런던대 Space Syntax연구소 선임연구원 • 前 문화재청 전문위원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 • 대한지리학회 편집위원

구분	성명	사진	소속	주요경력
위원	김희옥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겸임교수
	박성신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부회장 • 전북 도시계획위원회 • 프랑스 건축사 D.P.L.G
	박영순		ANU디자인그룹 건축사 사무소 사장	•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 • 前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 국토교통부 일괄대안설계 심의위원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박철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연구위원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
	선은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표이사	• 제주자치도 경관위원회 위원 •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前 제주대학교 건축대학 겸임교수 • 前 제주도 건축위원회 위원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도코모모 코리아 회장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분	성명	사진	소속	주요경력
위원	오상훈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한국 면진제진협회 회장 • 대한건축학회 이사 • 한국강구조학회 부회장
	유나경		㈜PMA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마장동 도시재생사업 책임자 • 행촌·부암권성곽마을 재생계획 책임자 • 북촌 지구단위계획 MP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 •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 • 2020 서울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건축 MP
	전숙희		와이즈건축사사무소 소장	• 새건축사협의회 홍보위원장 • 젊은건축가포럼 운영위원 • 2011년 젊은건축가상 수상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 용산공원조성협력단 자문위원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서울시 서울식물원 총괄계획가 •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 • 용산공원 시민포럼 공동대표
	한영근		㈜아키폴리 건축사사무소 & 아키폴리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 前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겸임교수 • UIA 세계건축가연맹 아시아지역 대리 이사 (2014-2017)

강미선 위원 정책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실무적 자세를 가지고 임한 2년간 위원회 활동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못다 한 숙제를 가득 두고 떠남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2년간은 주로 왜곡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다면 이후 위원회에서는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의 도시, 건축이 미래 사회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큰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호 위원 2년간 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실천을 통해 배우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건축물이 갖는 공공적 역할이 보다 확장되고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용창 위원 본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도시나 생활공간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 도시공간구조 또는 localities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건축의 적용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반 재산 불평등 심화의 시대에서 urban commons 원칙을 도시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싶었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위원회의 성취가 있었음에도 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깊이 참여하지 못해 이러한 생각들을 펼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희옥 위원 건축계 혁신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 설레며 시작한 2년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도 많고 아쉬움도 크지만 한국건축정책 역사에 한 획이 되었길 기대해 봅니다. 기획단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지속적인 국건위가 되길 바라며, 진정한 건축이 살아가길 염원합니다.

박성신 위원 공공건축을 추구했던 활동에 절반의 기대와 절반의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통과는 큰 성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시스템과 이중으로 작용하는 과도기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고, 지방에 대한 편견과 지역의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는 한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건축을 실현할 건축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원점에 그쳤습니다.

박영순 위원 그 어느 때보다 건축계의 관심 속에 5기 국건위가 출범되었고, 2년 동안 많은 연석회의와 다양한 소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어느새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특히 총괄건축가 제도와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지자체장을 방문해서 정책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했던 기억은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쓰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모쪼록 수고한 모든 정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후임 위원회에서 활동 방향이 연계되길 희망합니다.

박철수 위원 '기억'과 '기대'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전 기억이 진저리 칠 일이라면 지금의 형편과 상황에 안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빙그레 웃음 짓게 한다면 그로 인해 짧은 시간이나마 행복할 수 있었으니 참 다행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길 바라며,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로 희망을 부풀려 봅니다.

선은수 위원 이번 국건위 위원님들처럼 열정적으로 일했던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작 정책을 만들고 바꾸는 게 이렇게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 열정의 결과는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상훈 위원 건축문화 수준은 국가의 문화와 삶의 수준을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의 건축문화를 이루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의 끈끈한 팀워크와 노력이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탄생되길 기대합니다.

유나경 위원 건축 관련 정책과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현장 속 이슈를 키우고, 관련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좋은 의미의 로비와 밀고 당기기도 서슴지 않던 제5기 위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도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길 기원합니다.

전숙희 위원 5기 국건위는 공공건축의 가치를 만들고, 공공건축의 가치를 넓히고, 공공건축의 문턱을 낮추어 공공에 돌려주는, 일련의 공공건축 가치를 세워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는 좋은 건축, 좋은 도시, 그 속에서 행복한 삶에 좀 더 가까워졌기를 바랍니다.

한영근 위원 조심스러운 의무감으로 시작하여 확신하게 된 책임감으로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즈음 어깨에 지어진 짐을 차기에 넘기지만 양 어깨가 가볍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못해 그 막중함을 모르고, 그 위치에서 행하는 방법 또한 익숙지 않음을 기획단이 효율적으로 잘 받쳐주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 새로운 시작점을 세운 것 같습니다.

7-2.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구분	성명	직급	원소속	근무기간
단장	박승기	고위공무원	국토교통부	'17. 11. ~ '19. 03.
	김상문	고위공무원	국토교통부	'19. 03. ~
과장 (팀장)	남영우	서기관	국토교통부	'17. 05. ~ '19. 08.
	조기재	서기관	국토교통부	'17. 05. ~ '18. 12.
	박기범	서기관	국토교통부	'18. 04. ~
	이지혜	서기관	국토교통부	'19. 01. ~ '20. 05.
	김경은	서기관	국토교통부	'20. 06. ~
직원	강석하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18. 04. ~ '19. 04.
	김내환	사무관	서울특별시	'18. 01. ~ '19. 01.
	김상은	전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8. 01. ~ '19. 01.
	김양희	사무관	경상남도	'18. 12. ~
	김여용	전문위원		'19. 04. ~ '20. 03.
	김정남	주무관	국토교통부	'15. 03. ~
	김지만	전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9. 01. ~
	김현우	사무직		'11. 02. ~
	문경아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 04. ~
	박선정	사무관	행정안전부	'19. 04. ~
	박은혜	비서		'20. 06. ~
	박재복	사무관	경상남도	'17. 12. ~ '18. 12.
	성세희	비서		'18. 07. ~ '20. 04.
	심일수	사무관	인천광역시	'18. 08. ~ '19. 08.
	안유환	사무관	충청남도	'18. 01. ~ '19. 01.
	여혜진	전문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9. 01. ~ '19. 12.
	오세원	전문위원		'19. 02. ~ '19. 12.
	유호걸	운전원		'11. 12. ~
	윤정상	사무관	충청남도	'20. 01. ~
	이규철	전문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 01. ~
	이미영	사무관	경기도	'19. 01. ~ '20. 01.
	이은진	사무관	인천광역시	'19. 08. ~
	이정호	사무관	충청남도	'19. 01. ~ '20. 01.
	이창수	사무관	국토교통부	'20. 01. ~
	정이섭	사무관	인천광역시	'17. 09. ~ '18. 08.
	조관우	사무관	국토교통부	'19. 02. ~
	조성국	사무관	서울특별시	'20. 01. ~
	조영선	사무관	경기도	'20. 01. ~
	조영진	전문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8. 01. ~ '18. 12.
	조욱연	사무관	대전광역시	'17. 07. ~ '18. 07.
	최금정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19. 04. ~ '20. 04.
	최태훈	사무관	서울특별시	'19. 01. ~ '20. 01.
	홍일영	사무관	경기도	'18. 01. ~ '19. 01.
	황금태	사무관	부산광역시	'20. 01. ~
	황대연	사무관	전라북도	'18. 07. ~ '19. 07.

7-3.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성명	소속	직급
이현수	(사)대한건축학회	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강철희	(사)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장현숙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윤승현	(사)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안우성		회장
윤홍노	대형설계사협의회	회장
조원준		회장
함인선	(사)서울건축포럼	상임이사
김영환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7-4.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참여자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정부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전충원
		주무관	서강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조재호
		지역개발과장	김 철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강석
		지역개발과 사무관	박혜민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김상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정경훈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건축문화경관과장	김태경
		건축문화경관과장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방대혁
		지역정책과장	신광호
		주거재생과장	안진애
		주거재생과장	이소영
		주거재생과 팀장	이창구
		주거재생과 사무관	김테응
		도시경제과장	배성호
		도시경제과 사무관	박정현
		도시경제과 전문위원	심진섭
		지역개발과 사무관	엄수연
		세종총괄계획단 MP	정재승
		세종총괄계획단 실무총괄	조성행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	김창균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	권준영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서기관	김태경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사무관	이정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	이현호
		건설용역과장	김태련
		건설용역과 사무관	이상석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	공공건축추진단장	권상대
		공공건축추진단장	안석환
		사무관	임채욱
		도시정책과장	최형욱
		주무관	홍유석
		총괄기획가	김기호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김상석
			이용욱
		사업총괄과 과장	한성수
		사업총괄과 사무관	박태일
	경찰청	재정담당관 총경	조병노
		재정담당관 정경	신형국
		재정담당관 사무관	장정수

구분	소속	직급	성명
기타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박소현
		공공건축지원센터장	염철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기획처장	강동렬
		공공주택기획처 부장	강성민
		공공택지기획처장	임 춘
		기술심사처 부장	이충신
		시범사업추진부장	김 영
		시범사업추진부 팀장	이원훈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담당	김영섭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사무관	김귀애

부록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난 2년간의 발자취

국가건축정책위원회(1~5기)가 추진한 주요 건축정책

건축정책연표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난 2년간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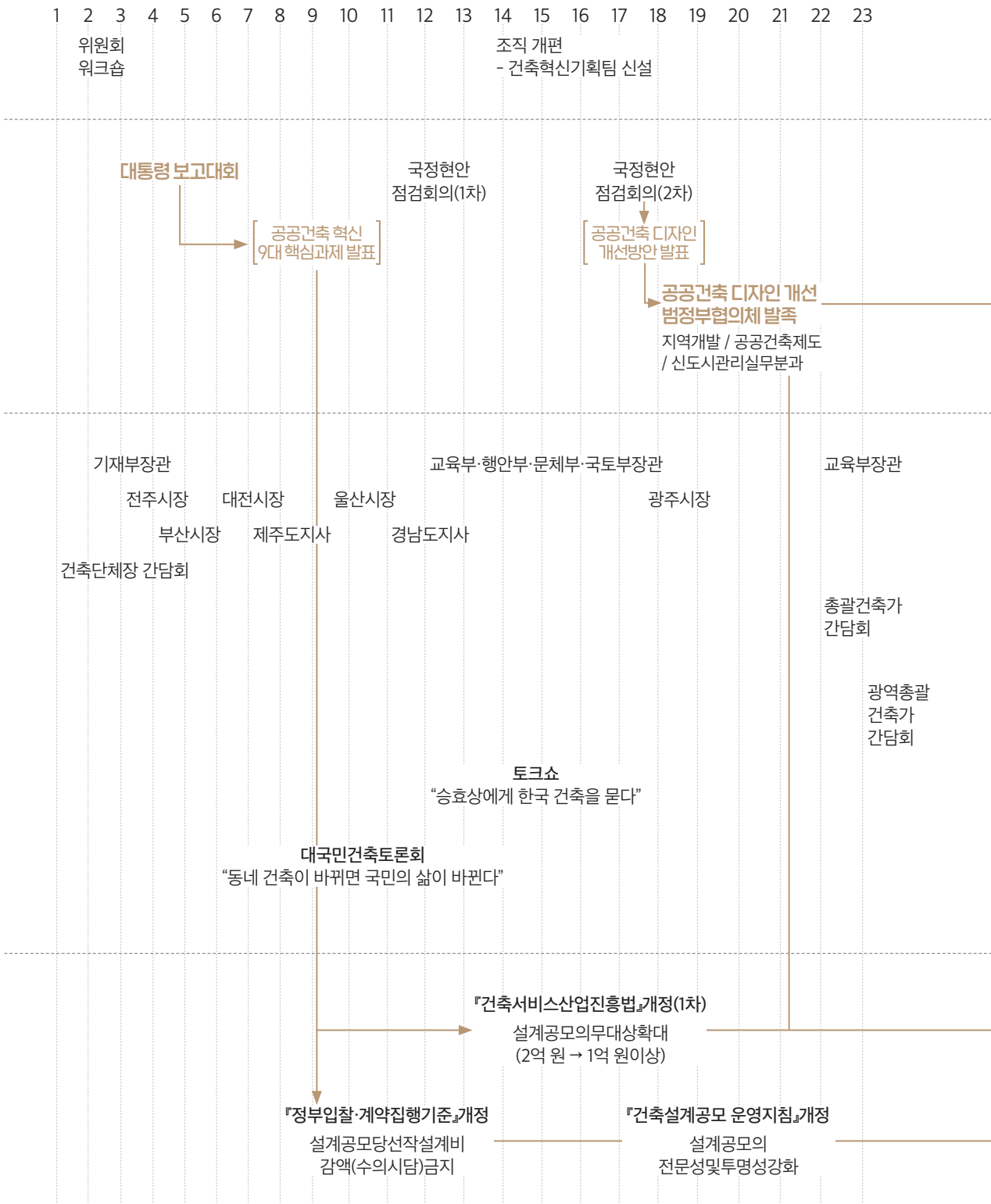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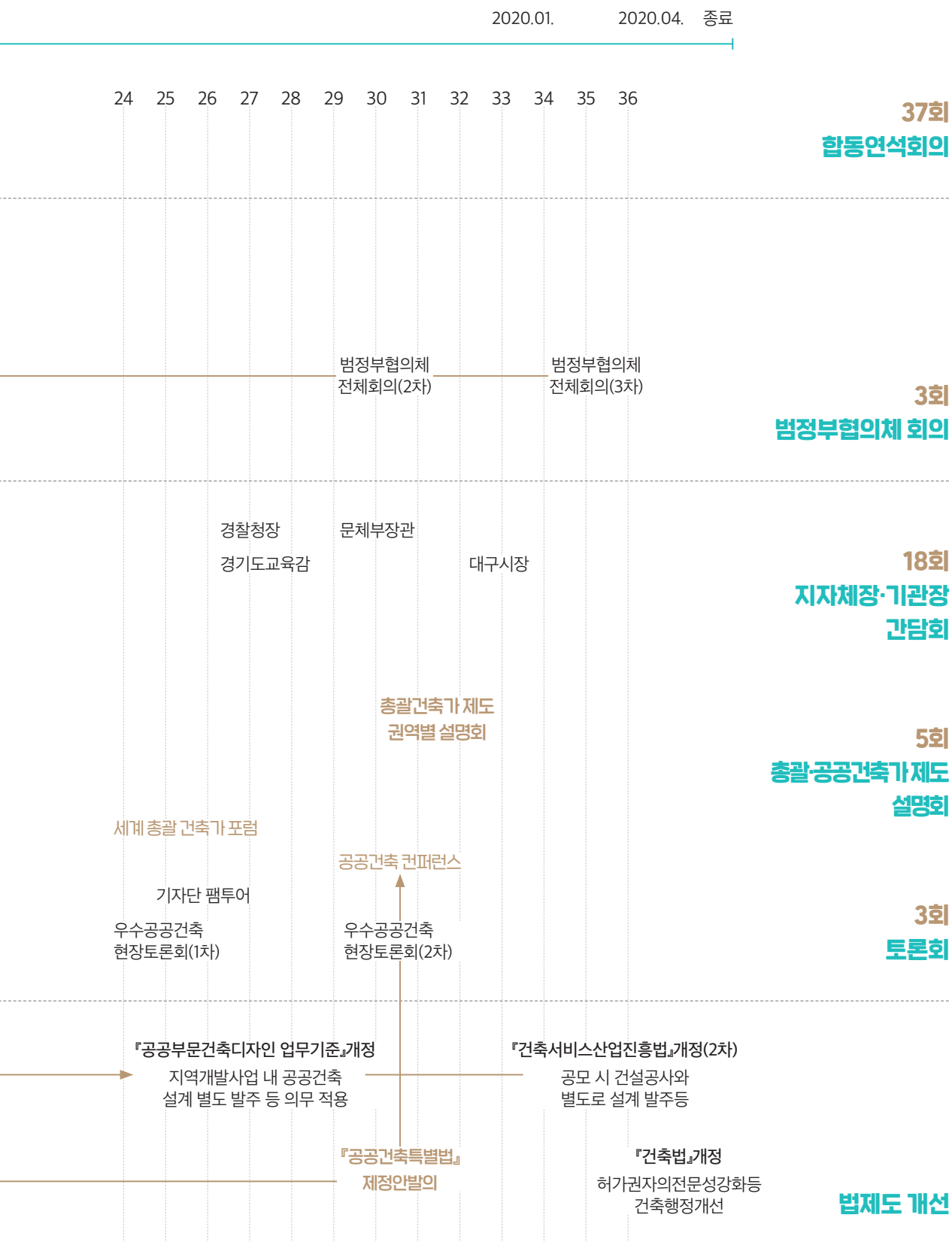
2020.01.
2020.04.
종료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회
합동연석회의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2차)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3차)
3회
범정부협의체 회의
경찰청장
경기도교육감
문체부장관
대구시장
18회
지자체장·기관장
간담회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5회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설명회
세계 총괄 건축가 포럼
공공건축 컨퍼런스
기자단 팸투어
우수공공건축
현장토론회(1차)
우수공공건축
현장토론회(2차)
3회
토론회
『공공부문건축디자인 업무기준』개정
지역개발사업 내 공공건축
설계 별도 발주 등 의무 적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개정(2차)
공모 시 건설공사와
별도로 설계 발주등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발의
『건축법』개정
허가권자의전문성강화등
건축행정개선
법제도 개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5기)가 추진한 주요 건축정책

	1기	2기
	정명원 위원장 2010.12. ~ 2011.03.	이상정 위원장 2011.04. ~ 2013.02.
비전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목표	•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건축정책 수립 및 조정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 마련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2013.6.4 제정)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0-2015) 자문 및 심의	
국토환경디자인 향상 및 주요 사업 지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마련 (2009.12)	
	건축디자인(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심의)	
	국가 상징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시범사업 추진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기본구상 및 전략 제시	
	해피하우스(단독주택지 관리) 시범사업 추진	해피차일드(보육시설) 사업 추진
건축문화진흥	건축교육 선진화 방안 연구	• 한국전통정원 조성 및 활성화 연구 • 어린이 한옥 체험교실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 건축산업대전 •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유치 지원

3기	4기	5기
김석철 위원장 2013.12. ~ 2015.12.	제해성 위원장 2016.02. ~ 2018.01.	승효상 위원장 2018.05. ~ 2020.04.
건축문화 기반의 창조경제, 국민행복	**국민이 행복한 건축**	**좋은 건축 행복한 삶, 좋은 도시 건강한 사회**
•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 주거수요 다변화 대응 • 도시수출로 경제성장 견인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환경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집 • 효율적인 공공건축 • 통일 한국의 국토미래상 제시	• 건축의 공공성 증진 • 설계방식 개선 •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건축진흥원 설립 추진단 운영	군 주거정책 발전방안 수립 지원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도 도입 추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출범 및 회의 주재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6-2020) 자문 및 심의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추진 방안 심의·조정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추진 (추진 중)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2016-2020) 자문 및 심의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9-2023) 자문 및 심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2014.6)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2019.7.4) - 총괄·공공건축가 확대 - 지역개발사업 건축디자인 적용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및 자문
	학교 내진보강사업 개선	3기 신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 시범사업 추진(LH)
	아파트 Farm 조성 시범사업 추진(LH)	철도건축 혁신방안 자문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 자문
• 2014 국가건축정책 콘퍼런스 • 2015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 미래건축포럼 • 전국순회포럼 •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 2016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 •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전시	•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 2018 대국민 건축토론회 • 2019 공공건축 컨퍼런스 • 세계 총괄건축가 포럼 • 우수공공건축 현장 토론회 • 토크쇼, 기자단 팸투어

건축정책 연표

건축기본법에서 공공건축특별법까지

2007

건축기본법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주요내용)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민간전문가의 참여 등

1.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적 공공성 확보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문화적 공공성 실현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국가의 포용적 건축·도시공간 정책 선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공간 현장을 지원"

(aur i)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리적 토대로서,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경쟁력 향상의 요소로서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국토연구원 부설연구소로 출범

200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족

"좋은 건축 행복한 삶, 좋은 도시 건강한 사회"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 시스템 구축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범 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주요내용)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등

1.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건축·도시환경 개선

2.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녹색건축·도시구현
건축·도시산업의 고도화

3.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20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제1장 총칙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표준화 기반조성 등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설계공모 활성화	사업계획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건축진흥원 설립,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등

2014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정('14.6.)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제고"

법정업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정업무

기본구상 및 기획 지원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지원
설계공모 운영 지원

법정업무

공공건축 관련 기준 및 사례 연구
공공건축 관련 제도개선 연구
공공건축 관련 매뉴얼 개발



2016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1. 행복한 건축실현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생활밀착형 복지공간체계 구축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2.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공공건축 효율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녹색건축 실현

1)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① 사전기획업무 강화
② 성과관리체계 구축
③ 총괄조정체계 구축

2)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①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②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③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3) 공공건축물 리뉴얼 체계적 추진
① 리뉴얼 진단
②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3.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지역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국토경관 향상
통일한국 건축비전 제시

건축정책 연표

건축기본법에서 공공건축특별법까지

20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좋은 공공건축 실현을 위한 건축기획 강화"

건축기획 개념 명문화

사업 효율성 제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 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건축기획 업무절차 규정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건축기획의 적절성 및 사전검토 반영여부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입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외에 지자체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설계공모(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이 설계비 2.0억 원 이상 사업에서 설계비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

* 사업계획 사전검토

2019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도약"

1.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정상화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구축

건축 중심의 법령체계 정비
기술력 제고를 위한 발주 및 계약방식 선진화
건축산업 및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건축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한 R&D추진

3. 新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건축시장 수요 창출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해외 건축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을 입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 총괄·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발주기관 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사업 단계별 디자인 절차 혁신

○ 좋은 설계자 선정으로 설계의도 변질없이 높은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신축 및 기존 노후건축물, 소형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 정책 확대

부처 지역개발·생활SOC 사업의 현장실행력 제고

○ 공공건축 협업·지원체계 마련
○ 5개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성공사례화 추진
○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범정부협의체 구성

2020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20.7.)

"범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과 공공건축 사업의 체계적 관리 실현"

건축공간연구원 설립('20.11.)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21.2.)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범부처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시행
- 전문성 확보와 건축시장의 정상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제2장 공공건축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제7조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제4장 공공건축 사업의 절차

제16조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발주, 설계의도 구현, 성과평가 등
-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 규정

제5장 공공건축의 품격향상 및 복합화

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
- 혁신적이거나 품질· 품격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축 선도사업 지정

제27조 - 제29조 공공건축 복합화
-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대상 선정 시 복합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복합화 사업에 대한 도시 및 건축 등과 관련한 법령 기준을 완화 적용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성과

발행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행일 2020. 10.
디자인 하나(02-2273-7294)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좋은 건축 행복한 삶
좋은 도시 건강한 사회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